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30-10

ISSN 2635-4705

#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1. 본문의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업무실적에 관한 통계이다.
2. 본문의 통계는 2017. 12. 31.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누계는 위원회 설립(2001. 11. 25.) 이후부터 2017. 12. 31.까지의 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누계 산정기간을 명기하였다.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 '-'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0)을 의미한다.
  - 관계기관 또는 침해된 기본권 등이 복수인 경우 대푯값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본문에서 적시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말한다.
3. 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는 위원회 누리집([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정책정보/인권통계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문의처\_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Tel. 02-2125-9793, Fax. 02-2125-0913)



# 목 차



개 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13
<b>제1장 인권정책</b>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15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6
1. 연도별 현황 .....	16
2. 의견표명 .....	17
3. 의견제출 .....	17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	18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22
1. 이주인권 .....	22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23
3. 아동 인권 .....	24
4. 장애인 인권 .....	26
5. 북한인권 .....	28
6. 인권교육 .....	29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30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30
2. 정책연구용역 .....	31
<b>제2장 인권상담</b>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32

<b>제2절 인권상담</b> .....	<b>33</b>
1. 인권상담 현황 .....	33
2. 상담신청인 현황 .....	35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37
1) 유형별 상담 현황 .....	37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9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5) 기타 상담 현황 .....	44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5. 면전진정 .....	46
<b>제3절 민원 및 안내</b> .....	<b>50</b>
1. 민원 .....	50
2. 안내 .....	51

## **제3장 조사 및 구제**

<b>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b> .....	<b>52</b>
<b>제2절 진정 접수</b> .....	<b>53</b>
1. 진정접수 현황 .....	53
2. 진정인 현황 .....	55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56
□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58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62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67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70

<b>제3절 진정 처리결과</b> .....	<b>71</b>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1) 검찰 .....	78
2) 경찰 .....	80
3) 군 .....	82
4) 구급시설 .....	84
5) 기타국가기관 .....	86
6) 지방자치단체 .....	88
7) 공직유관단체 .....	90
8) 다수인보호시설 .....	92
9) 출입국관리기관 .....	94
10) 각급학교 .....	96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8
1) 성별 .....	103
2) 임신 또는 출산 .....	105
3) 혼인여부 .....	107
4) 나이 .....	109
5) 인종 등 .....	111
6) 용모·신체조건 .....	113
7) 학력 .....	115
8) 병력 .....	117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19
10) 사회적 신분 .....	121
11) 기타사유 .....	123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5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7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9

<b>제4절 조사·구제</b> .....	<b>131</b>
1. 권리구제율 .....	131
2. 권고수용현황 .....	132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4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5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36
3. 긴급구제 .....	137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38
<b>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b> .....	<b>139</b>
1. 직권조사 .....	139
1) 인권침해 직권조사 .....	141
2) 차별행위 직권조사 .....	142
2. 방문조사 .....	143

##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b>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b> .....	<b>146</b>
<b>제2절 인권교육</b> .....	<b>147</b>
1. 인권교육 현황 .....	147
2. 인권교육과정 .....	148
3. 인권특강 .....	148
4. 방문프로그램 .....	149
5. 사이버인권교육 .....	150
<b>제3절 국내외 협력</b> .....	<b>151</b>
1. 인권현장방문 .....	151
2. 보조금 .....	151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51

## 제5장 일반행정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53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54
1. 심의·의결기구 .....	154
1) 전원위원회 .....	154
2) 상임위원회 .....	154
3) 소위원회 .....	155
4) 조정위원회 .....	157
2. 자문기구 .....	159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59
2) 정책자문위원회 .....	159
3) 전문위원회 .....	160
제3절 일반현황 .....	165
1. 사무처 조직 .....	165
2. 정보공개 .....	169
3. 청문회 .....	171
4. 업무협약 .....	172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73
6. 과태료 및 보상금 .....	174

## 표 목차

[표 1-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16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17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17
[표 1-2-1]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수용현황	18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8
[표 1-2-3]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9
[표 1-2-4]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0
[표 1-2-5] 2017년 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0
[표 1-2-6] 2017년 시·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1
[표 1-2-7]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21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2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2
[표 1-3-3]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2
[표 1-3-4]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3
[표 1-3-5]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3
[표 1-3-6] 아동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4
[표 1-3-7]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4
[표 1-3-8] 2017년 피권고기관별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5
[표 1-3-9]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6
[표 1-3-10]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6
[표 1-3-11] 2017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7
[표 1-3-12] 북한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8
[표 1-3-13]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8
[표 1-3-14] 인권교육 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29
[표 1-3-15]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29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30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30

[표 1-4-3] 연구용역 현황 .....	31
[표 2-1-1] 인권상담·민원/안내 현황 .....	32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	33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	33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	34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	34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	35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	35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	36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	37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8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39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0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1
[표 2-1-14] 구급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1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2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2
[표 2-1-17] 각급학교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	42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표 2-1-19]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	43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	44
[표 2-1-21] 기타 내용별 상담 현황 .....	44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	45
[표 2-1-24]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46
[표 2-1-25] 부서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	47
[표 2-1-26] 구급·보호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48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	49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50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50
[표 2-2-3] 안내 내용별 처리 현황	51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51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53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54
[표 3-1-3] 지역별 진정인 현황	55
[표 3-1-4] 성별 진정인 현황	55
[표 3-1-5] 연령별 진정인 현황	55
[표 3-1-6]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6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7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8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9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60
[표 3-1-11] 구급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60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14] 각급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2
[표 3-1-1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3
[표 3-1-17]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4
[표 3-1-18] 2017 사유 및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5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7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7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68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68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9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69

[표 3-1-25] 영역별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69
[표 3-1-26] 기타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70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71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72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72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	73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4
[표 3-2-2-2] 2016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5
[표 3-2-2-3] 2016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6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77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77
[표 3-2-2-6]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78
[표 3-2-2-7]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78
[표 3-2-2-8] 2017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79
[표 3-2-2-9]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0
[표 3-2-2-10]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80
[표 3-2-2-11] 2017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1
[표 3-2-2-12]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2
[표 3-2-2-13]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	82
[표 3-2-2-14] 2017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3
[표 3-2-2-15]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4
[표 3-2-2-16]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84
[표 3-2-2-17] 2017년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5
[표 3-2-2-18]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6
[표 3-2-2-19]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86
[표 3-2-2-20] 2017년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7
[표 3-2-2-21]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88
[표 3-2-2-22]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88

[표 3-2-2-2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89
[표 3-2-2-24]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90
[표 3-2-2-25]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90
[표 3-2-2-26] 2017년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91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92
[표 3-2-2-28]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92
[표 3-2-2-29] 2017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93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94
[표 3-2-2-31]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94
[표 3-2-2-32] 2017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95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96
[표 3-2-2-34]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96
[표 3-2-2-35] 2017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	97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8
[표 3-2-3-2] 2017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99
[표 3-2-3-3] 2017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0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101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	101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	102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3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03
[표 3-2-3-9] 2017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4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5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05
[표 3-2-3-12] 2017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6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7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07
[표 3-2-3-15] 2017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08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09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09
[표 3-2-3-18] 2017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0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1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11
[표 3-2-3-21] 2017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2
[표 3-2-3-22]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3
[표 3-2-3-23]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13
[표 3-2-3-24] 2017년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4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5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15
[표 3-2-3-27] 2017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6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7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17
[표 3-2-3-30] 2017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18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19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19
[표 3-2-3-33] 2017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20
[표 3-2-3-34]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21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21
[표 3-2-3-36] 2017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22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123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23
[표 3-2-3-39] 2017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24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25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25
[표 3-2-3-42] 2017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26
[표 3-2-3-43]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27

[표 3-2-3-44]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	127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	127
[표 3-2-3-46] 2017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	128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29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	130
[표 3-3-1]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현황 .....	131
[표 3-3-2] 연도별 누적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2
[표 3-3-3]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2
[표 3-3-4] 2017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3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4
[표 3-3-6]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4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5
[표 3-3-8] 2017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5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	136
[표 3-3-10] 긴급구제 결정 및 결정 내용 .....	137
[표 3-3-11]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	138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39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0
[표 3-4-3] 2017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0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41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1
[표 3-4-6]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1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42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2
[표 3-4-9] 2017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	142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	143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	143
[표 3-4-12] 2017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	144

[표 3-4-13] 구금·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144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145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47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148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48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48
[표 4-1-5] 대상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149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149
[표 4-1-7] 인권특강 현황	150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150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151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151
[표 4-2-3] 국제회의 개최 현황	151
[표 4-2-4]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152
[표 4-2-5]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152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154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154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현황	155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155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55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56
[표 5-1-7] 아동권리위원회 운영 현황	156
[표 5-1-8]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56
[표 5-1-9]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157
[표 5-1-10]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7
[표 5-1-11]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7
[표 5-1-12]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8
[표 5-1-13]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8

[표 5-1-14]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8
[표 5-1-15]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159
[표 5-1-16]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159
[표 5-1-17]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0
[표 5-1-18]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1
[표 5-1-19]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1
[표 5-1-20]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2
[표 5-1-21]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2
[표 5-1-22]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3
[표 5-1-23]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3
[표 5-1-24]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4
[표 5-1-25]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64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165
[표 5-2-2] 2017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165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166
[표 5-2-4] 2017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166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167
[표 5-2-6] 인권도서관 지역분관 장서 현황	168
[표 5-2-7]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168
[표 5-2-8] 정보공개 현황	169
[표 5-2-9] 사유별 비공개(부분공개) 현황	169
[표 5-2-10]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170
[표 5-2-11] 청문회 개최 현황	171
[표 5-2-12] 업무협약 체결 현황	172
[표 5-2-13]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173
[표 5-2-14] 과태료 부과 현황	174
[표 5-2-15] 과태료 부과 내역	174
[표 5-2-16] 보상금 지급 현황	174

## 그래프

[그래프 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추이 .....	3
[그래프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 수용률 추이 .....	4
[그래프 1-3] 연도별 인권상담, 민원·안내 추이 .....	5
[그래프 1-4] 2017년 유형별 상담 현황 .....	5
[그래프 1-5] 2017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6
[그래프 1-6] 2017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	7
[그래프 1-7]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	7
[그래프 1-8] 2017년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8
[그래프 1-9] 전년대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접수 현황 .....	9
[그래프 1-10] 전년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현황 .....	9
[그래프 1-11] 전년대비 진정사건 인용건수 현황 .....	10
[그래프 1-12] 연도별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	11
[그래프 1-13] 연도별 인권교육 인원 추이 .....	11
[그래프 1-14] 전년대비 유형별 인권교육 인원 현황 .....	12







위원회가 발간하는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인권정책,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협력, 일반행정으로 구분하고, 2017년도 통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간순서대로 배치하여 발간하였다.

우선 발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핵심업무인 인권정책 권고, 인권상담, 진정 접수 및 처리, 권고수용률 및 인권교육 통계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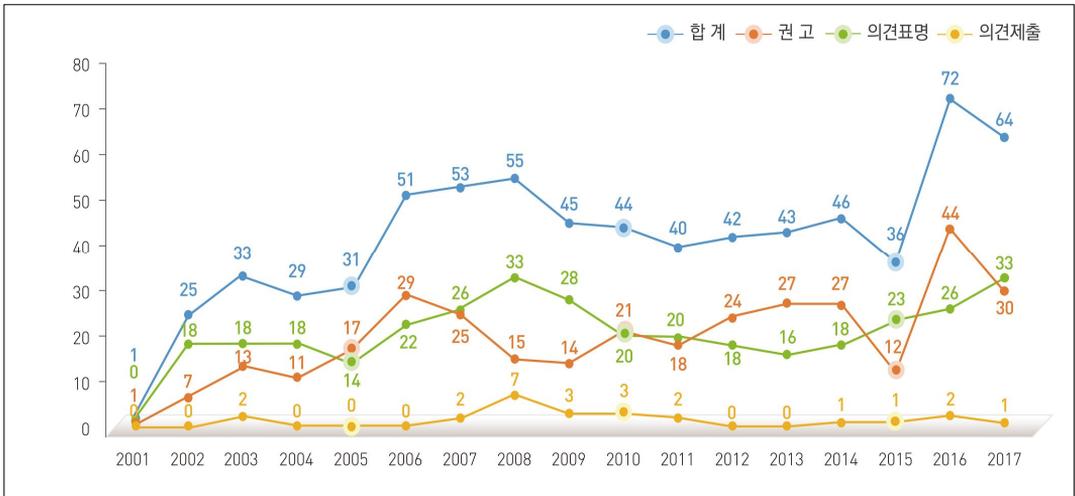
## 인권정책 권고

2017년 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의 개선과 시정을 위하여 권고 30건, 의견표명 33건, 의견제출 1건 등 총 64건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하였다.<sup>1)</sup>

2016년에 비해 정책권고 등의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 2016년 정책권고 44건, 의견표명 26건, 의견제출 2건 등 총 7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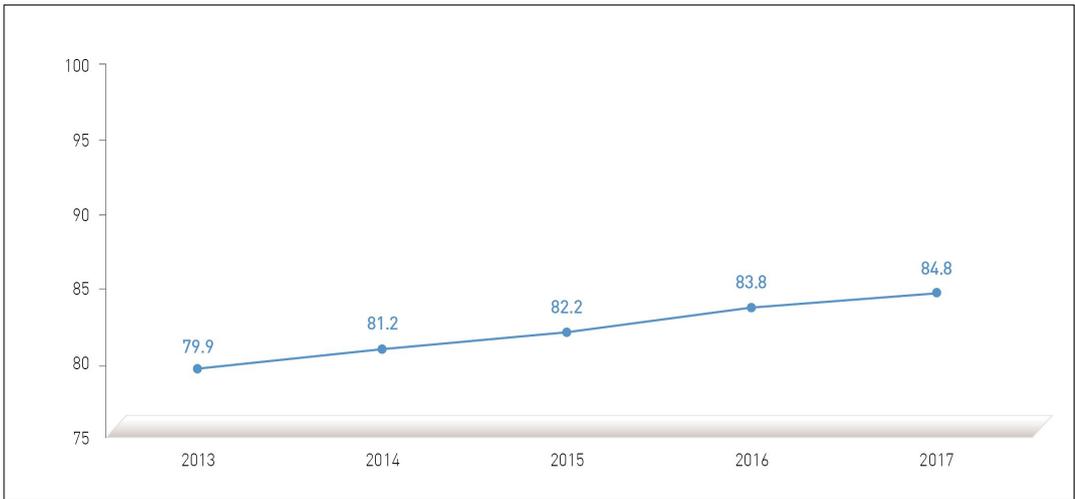
[그래프 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추이



1) [표 1-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참조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 누적 수용률은 2017년 기준 84.8%로 2014년 이후 80%가 넘는 권고 수용률을 매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권고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sup>2)</sup>

[그래프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 수용률 추이



## 인권상담

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상담 3만 6,369건, 민원·안내(조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안내 등) 4만 2,938건을 처리하여, 2016년보다 상담은 4,753건(15.0%), 민원·안내는 4,918건(12.9%)이 대폭 증가하였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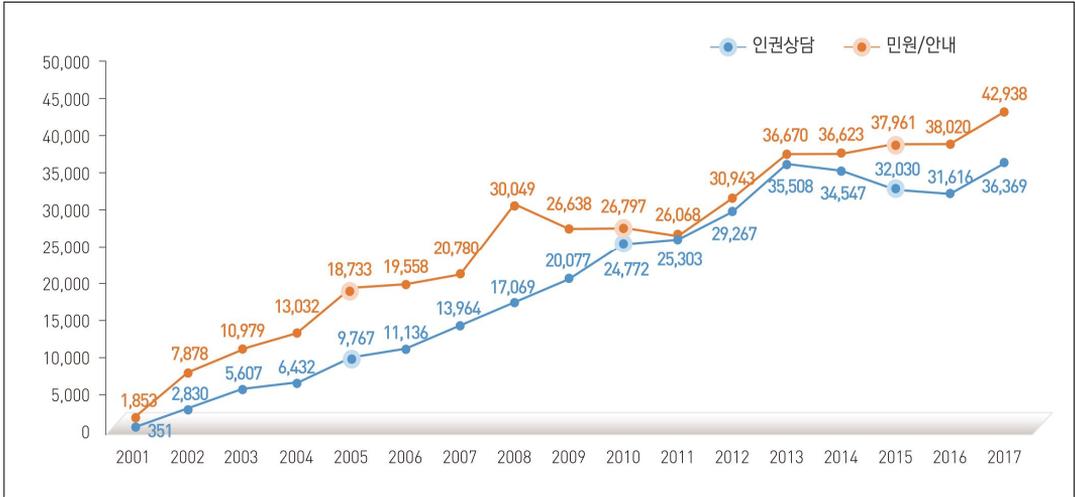
이는 대통령이 2017년 5월 25일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하고, 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정부 부처의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등 새 정부의 위원회 위상 제고 의지가 언론에 발표된 이후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16년 상담 31,616건 실시, 민원·안내 38,020건 처리

2) [표 1-2-1]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수용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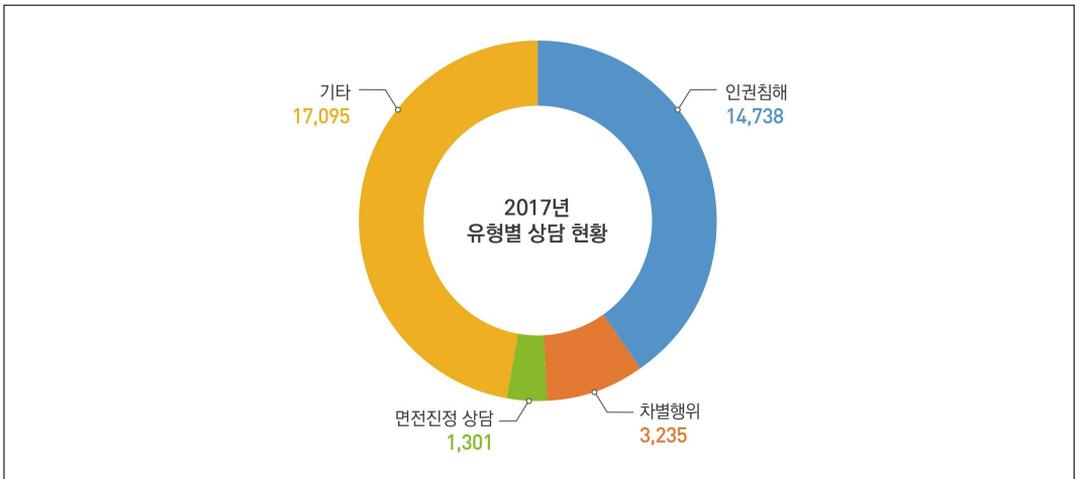
3) [표 2-1-1] 인권상담·민원/안내 현황 참조

[그래프 1-3] 연도별 인권상담, 민원·안내 추이



2017년 유형별 상담 현황<sup>4)</sup>은 인권침해 14,738건(40.5%), 차별행위 3,235건(8.9%), 면전진정<sup>5)</sup> 상담 1,301건(3.6%), 기타 17,095건(47.0%)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 관련 사항 등이었다.

[그래프 1-4] 2017년 유형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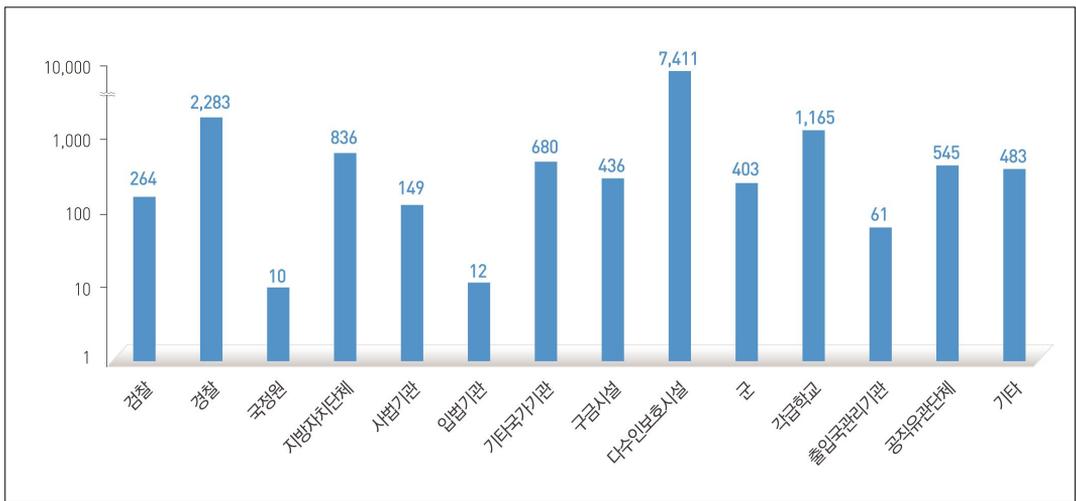
4)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참조

5) 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7,411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은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였으나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675건(8.3%)이 감소하였다.

2017년 경찰 관련 상담은 2,283건(15.5%)으로 다수인보호시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각급학교 1,165건(7.9%), 지방자치단체 836건(5.7%), 기타국가기관 680건(4.6%), 공직유관단체 545건(3.7%), 군 403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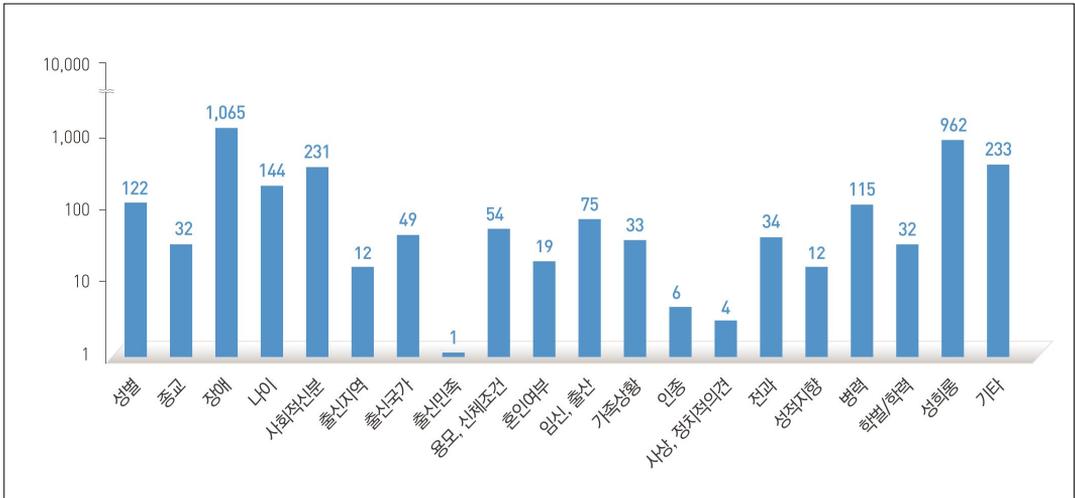
[그래프 1-5] 2017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차별행위 상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1,065건(3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상담이 962건(29.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231건(7.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144건(4.5%) 순으로 나타났다.<sup>6)</sup>

6) [표 2-1-19]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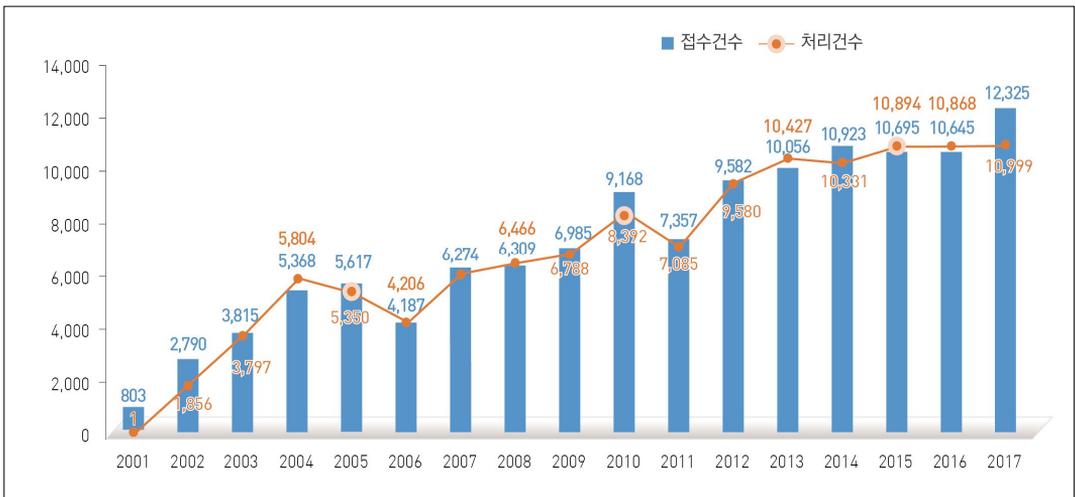
[그래프 1-6] 2017년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 진정접수 및 처리

위원회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부터 접수 및 처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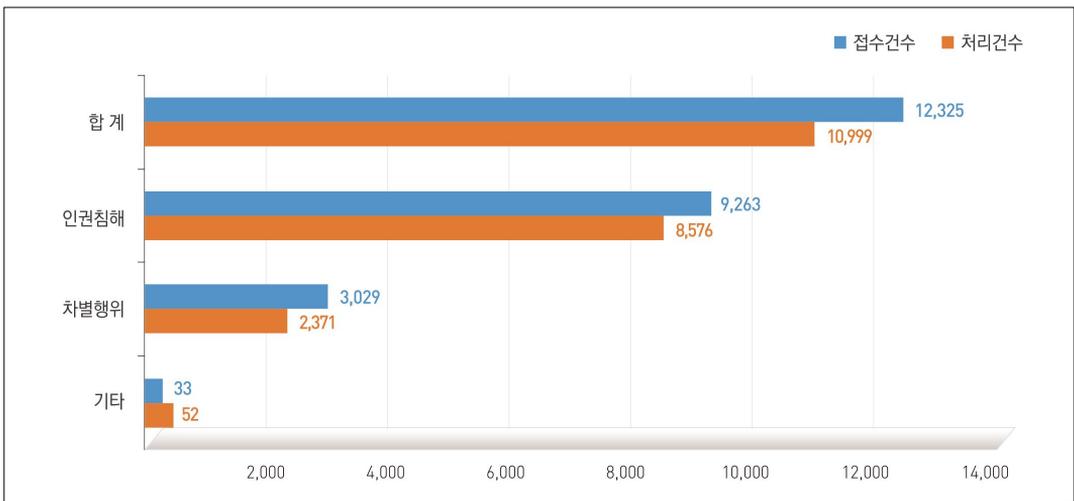
[그래프 1-7]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017년 접수된 진정사건<sup>7)</sup>은 1만 2,325건으로 인권침해 9,263건(75.2%), 차별행위 3,029건(24.6%), 기타 33건(0.3%)이다. 또한 처리된 진정사건은 1만 999건으로 인권침해 8,576건(78.0%), 차별행위 2,371건(21.6%), 기타 52건(0.5%)을 처리하여 접수건수는 2016년 대비 1,680건(15.8%)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처리 건수는 131건(1.2%)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2016년 진정사건 1만 645건 접수, 1만 868건 처리

[그래프 1-8] 2017년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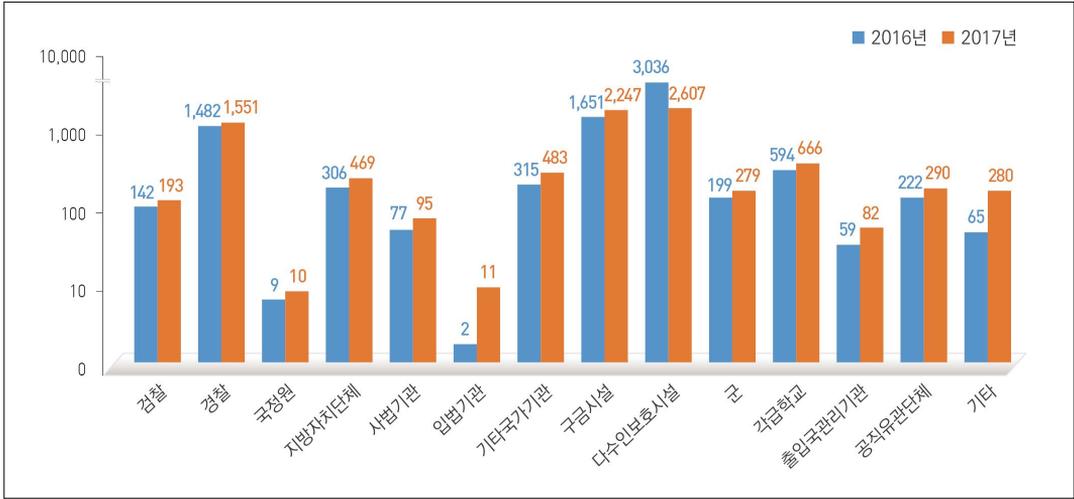


2017년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9,263건으로 다수인보호시설 2,607건(28.1%), 구금시설 2,247건(24.3%), 경찰 1,551건(16.7%) 순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1,103건(13.5%)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진정사건 접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구금시설,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관련 진정이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경찰 관련 진정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검찰 관련 진정도 2016년 대비 51건(35.9%)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급학교 관련 진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sup>8)</sup>

7) [표 3-1-1] 유형별 진정접수 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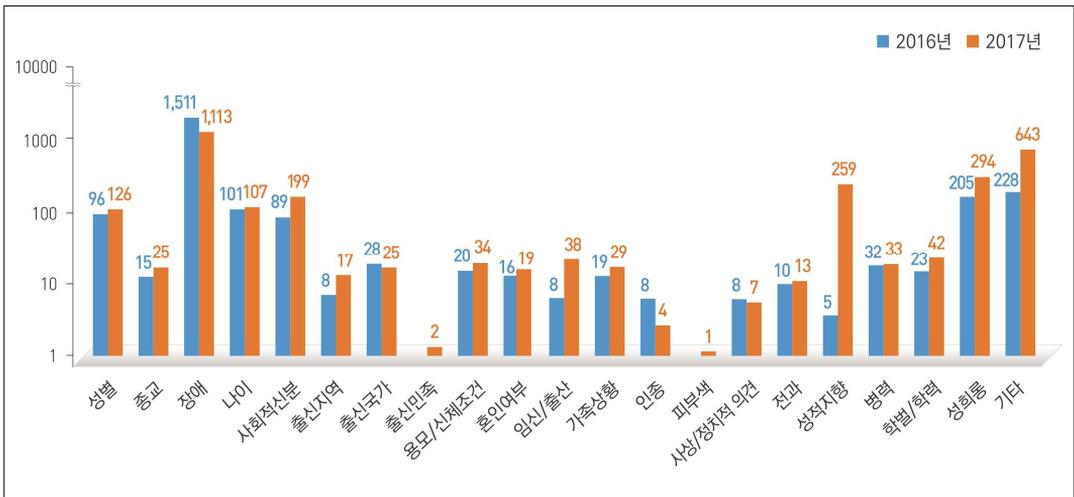
8)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참조

[그래프 1-9] 전년대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접수 현황



2017년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총 3,029건으로 장애 1,113건(36.7%), 성희롱 294건(9.7%), 성적지향 259건(8.6%) 순으로 접수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여 598건(24.6%)이 증가하였는데, 성적지향이 254건(5.080%), 성희롱이 89건(43.4%), 성별이 30건(31.3%), 사회적 신분이 110건(123.6%) 증가하였으며, 장애는 398건(26.3%)이 감소하였다.<sup>9)</sup>

[그래프 1-10] 전년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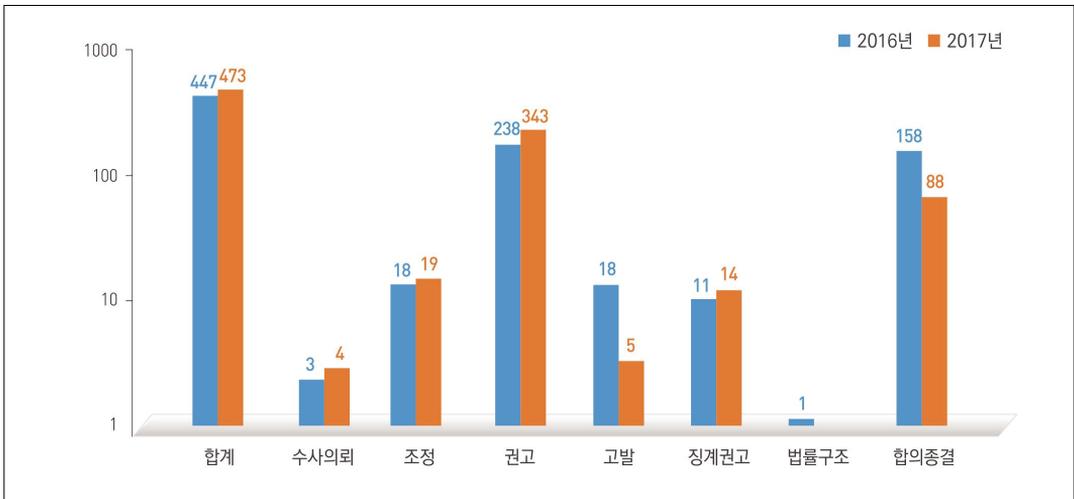


9) [표 3-1-1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참조

한편, 2017년 인용건수는 473건(권고 343건, 징계권고 14건,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조정 19건, 합의종결 88건)으로 2016년에 비하여 26건(5.8%)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권고 건수가 105건 증가하였다. 한편, 합의종결 건수는 70건(44.3%)이 감소하였다.

※ 2016년 인용 447건(권고 238, 징계권고 11건, 고발 18건, 수사의뢰 3건, 법률구조 1건 조정 18건, 합의종결 158건)

[그래프 1-11] 전년대비 진정사건 인용건수 현황



## 권고수용률 등

2017년 위원회는 진정사건 권고 357건(징계권고 포함) 중 201건(수용 150건, 일부수용 46건, 불수용 5건)의 이행계획을 회신 받았으며, 권고수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권고수용률 95.6%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다.<sup>10)</sup>

10) [표 3-3-3]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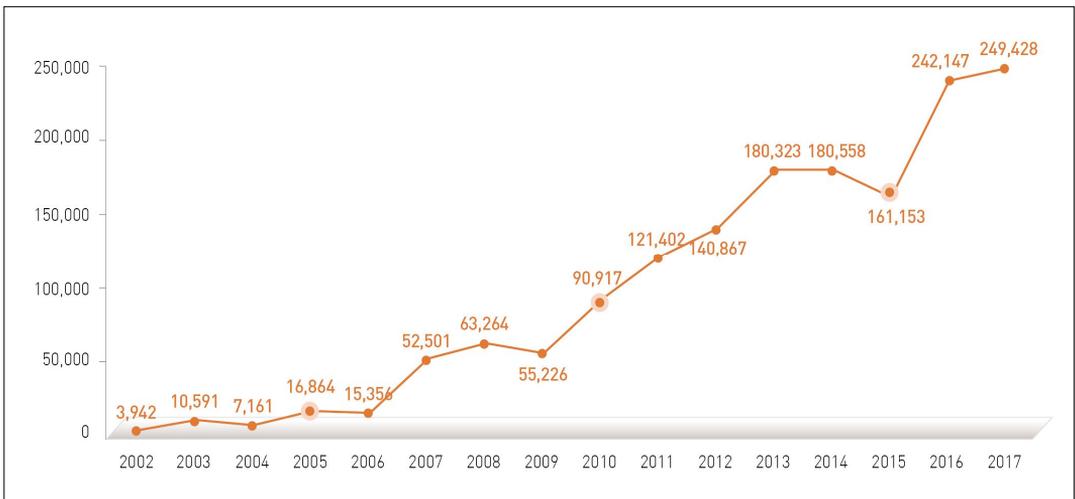
[그래프 1-12] 연도별 권고건수 및 수용률 추이



## 인권교육

위원회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인권교육 횟수와 인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1년부터 인권교육 인원이 연 10만 명을 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연 24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프 1-13] 연도별 인권교육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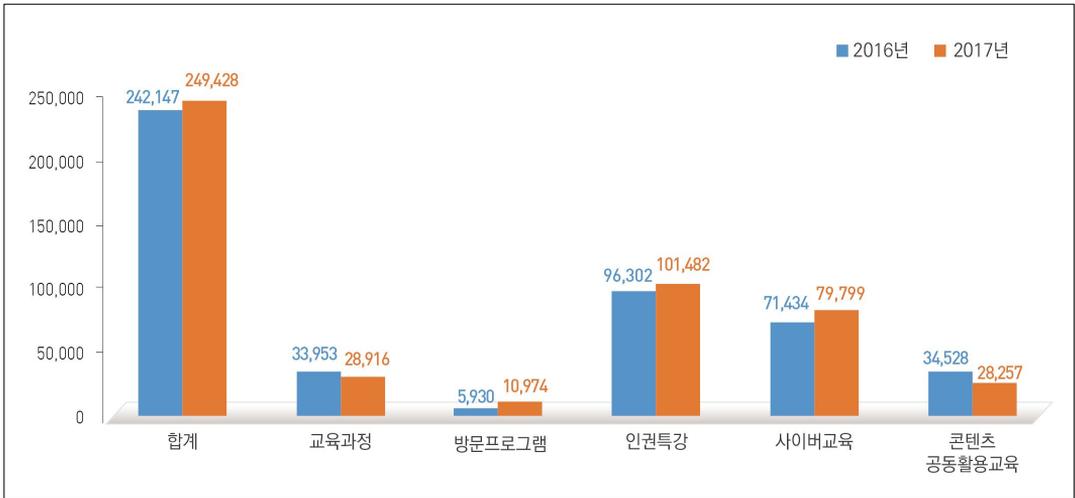


2017년 위원회는 총 24만 9,428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교육과정 2만 8,916명(494회), 방문프로그램 10,974명(533회), 인권특강 10만 1,482명(1,968회), 사이버 인권교육 7만 9,799명(915회), 콘텐츠 공동활용 교육이 2만 8,257명(537회)이다. 2016년과 비교하여 인권교육 횟수는 4.7%, 인원은 3.0% 증가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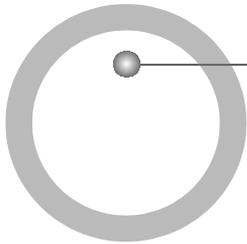
2017년 교육 운영은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를 견지하면서 질적 확대를 담보하고자 관리와 모니터링에 정책 목표를 등에 따라 2016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 2016년 인권교육 인원 총 242,147명으로 인권교육과정 33,953명(734회), 방문프로그램 5,930명(380회), 인권특강 96,302명(1,760회), 사이버 인권교육 71,434명(828회), 콘텐츠 공동활용 교육 34,528명(545회) 실시

[그래프 1-14] 전년대비 유형별 인권교육 인원 현황



11) [표 4-1-1] 인권교육 실시현황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제1장 인권정책

제2장 인권상담

제3장 조사 및 구제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제5장 일반행정



###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제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조회, 청문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sup>12)</sup>

### 1. 연도별 현황

[표 1-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계	710	334	352	24
2017	64	30	33	1
2016	72	44	26	2
2015	36	12	23	1
2014	46	27	18	1
2013	43	27	16	-
2012	42	24	18	-
2011	40	18	20	2
2010	44	21	20	3
2009	45	14	28	3
2008	55	15	33	7
2007	53	25	26	2
2006	51	29	22	-
2005	31	17	14	-
2004	29	11	18	-
2003	33	13	18	2
2002	25	7	18	-
2001	1	-	1	-

1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권고는 i)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 ii)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있으며, 위원회는 전자는 인권정책 분야에서, 후자는 조사구제 분야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의견표명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권 이사회	자유권 규약 <sup>13)</sup>	사회권 규약 <sup>14)</sup>	인종차별 철폐협약 <sup>15)</sup>	고문방지 협약 <sup>16)</sup>	여성차별 철폐협약 <sup>17)</sup>	아동권리 협약 <sup>18)</sup>	강제실종 금지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sup>19)</sup>
누계	26	2	3	4	4	4	5	3	-	1
2017	6	1	-	2	-	1	1	1	-	-
2016	2	-	1	-	1	-	-	-	-	-
2015	2	-	-	1	-	-	1	-	-	-
2014	-	-	-	-	-	-	-	-	-	-
2013	-	-	-	-	-	-	-	-	-	-
2012	2	1	-	-	-	1	-	-	-	-
2011	2	-	1	-	1	-	-	-	-	-
2010	1	-	-	-	-	-	-	-	-	1
2009	1	-	-	-	-	-	1	-	-	-
2008	1	-	-	-	-	-	-	1	-	-
2007	-	-	-	-	-	-	-	-	-	-
2006	3	-	-	1	1	-	-	1	-	-
2005	1	-	-	-	-	-	1	-	-	-
2004	1	-	1	-	-	-	-	-	-	-
2003	2	-	-	-	-	1	1	-	-	-
2002	2	-	-	-	1	1	-	-	-	-

## 3. 의견제출<sup>20)</sup>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4	-	2	-	-	-	2	7	3	3	2	-	-	1	1	2	1
법원	9	-	-	-	-	-	-	5	-	1	1	-	-	1	-	-	1
헌법재판소	15	-	2	-	-	-	2	2	3	2	1	-	-	-	1	2	-

-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1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1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 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절 인권정책 권고수용 현황

[표 1-2-1]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sup>21)</sup>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7	334	297	153	99	45	37	84.8
2016	304	265	130	92	43	39	83.8
2015	260	242	114	85	43	18	82.2
2014	248	218	98	79	41	30	81.2
2013	221	194	89	66	39	27	79.9

※ 연도별 권고 수용현황은 2002년부터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b>누 계</b>	<b>334</b>	<b>297</b>	<b>153</b>	<b>99</b>	<b>45</b>	<b>37</b>	<b>84.8</b>
2017	30	8	8	-	-	22	100.0
2016	44	30	18	10	2	14	93.3
2015	12	12	8	3	1	-	91.7
2014	27	27	17	9	1	-	96.3
2013	27	26	11	13	2	1	92.3
2012	24	24	10	12	2	-	91.7
2011	18	18	9	8	1	-	94.4
2010	21	21	4	9	8	-	61.9
2009	14	14	6	5	3	-	78.6
2008	15	15	4	6	5	-	66.7
2007	25	25	9	10	6	-	76.0
2006	29	29	24	3	2	-	93.1
2005	17	17	7	4	6	-	64.7
2004	11	11	4	3	4	-	63.6
2003	13	13	10	2	1	-	92.3
2002	7	7	4	2	1	-	85.7

21)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수용률 =  $\frac{(\text{수용} + \text{일부수용}) \text{ 건수}}{(\text{수용} + \text{일부수용} + \text{불수용}) \text{ 건수}} * 100$

[표 1-2-3] 2017년 피권고기관별<sup>22)</sup>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소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계	357	238	238	-	-	119	100.0
국무총리	1	-	-	-	-	1	-
경찰청	1	-	-	-	-	1	-
고용노동부	6	4	4	-	-	2	100.0
교육부	3	-	-	-	-	3	-
국방부	3	1	1	-	-	2	100.0
국토교통부	1	-	-	-	-	1	-
금융감독원	1	-	-	-	-	1	-
기획재정부	2	-	-	-	-	2	-
법무부	6	-	-	-	-	6	-
법원	1	-	-	-	-	1	-
보건복지부	10	2	2	-	-	8	100.0
산업통상자원부	1	-	-	-	-	1	-
외교부	1	-	-	-	-	1	-
인사혁신처	1	1	1	-	-	-	100.0
통일부	1	1	1	-	-	-	100.0
행정안전부	3	-	-	-	-	3	-
지방자치단체	274	229	229	-	-	45	100.0
시·도교육청	34	-	-	-	-	34	-
기타(민간기관)	7	-	-	-	-	7	-

22) 진정사건 1건별 권고 수용 현황이 아닌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이다. 진정사건 권고 1건에 피권고기관이 1개 이상인 경우를 감안하여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을 파악한 통계이다.

[표 1-2-4]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b>합 계</b>	<b>34</b>	-	-	-	-	<b>34</b>	-
서울특별시	2	-	-	-	-	2	-
부산광역시	2	-	-	-	-	2	-
대구광역시	2	-	-	-	-	2	-
인천광역시	2	-	-	-	-	2	-
광주광역시	2	-	-	-	-	2	-
대전광역시	2	-	-	-	-	2	-
울산광역시	2	-	-	-	-	2	-
경기도	2	-	-	-	-	2	-
강원도	2	-	-	-	-	2	-
충청북도	2	-	-	-	-	2	-
충청남도	2	-	-	-	-	2	-
경상북도	2	-	-	-	-	2	-
경상남도	2	-	-	-	-	2	-
전라북도	2	-	-	-	-	2	-
전라남도	2	-	-	-	-	2	-
제주특별자치도	2	-	-	-	-	2	-
세종특별자치시	2	-	-	-	-	2	-

[표 1-2-5] 2017년 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b>합 계</b>	<b>240</b>	<b>229</b>	<b>229</b>	-	-	<b>11</b>	<b>100.0</b>
서울특별시 동작구	2	1	1	-	-	1	1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2	1	1	-	-	1	1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2	1	1	-	-	1	100.0
인천광역시 서구	2	1	1	-	-	1	100.0
광주광역시 서구	2	1	1	-	-	1	100.0
강원도 홍천군	2	1	1	-	-	1	100.0
충청북도 증평군	2	1	1	-	-	1	100.0
충청남도 보령시	2	1	1	-	-	1	100.0
경상북도 영주시	2	1	1	-	-	1	100.0
경상남도 진주시	2	1	1	-	-	1	100.0
전라북도 익산시	2	1	1	-	-	1	100.0
기타 기초자치단체 <sup>23)</sup>	218	218	218	-	-	-	100.0

23) 기타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인권정책 권고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피권고기관인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표에 명시된 11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218개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표 1-2-6] 2017년 시·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b>합 계</b>	<b>34</b>	-	-	-	-	<b>34</b>	-
서울특별시교육청	2	-	-	-	-	2	-
부산광역시교육청	2	-	-	-	-	2	-
대구광역시교육청	2	-	-	-	-	2	-
인천광역시교육청	2	-	-	-	-	2	-
광주광역시교육청	2	-	-	-	-	2	-
대전광역시교육청	2	-	-	-	-	2	-
울산광역시교육청	2	-	-	-	-	2	-
경기도교육청	2	-	-	-	-	2	-
강원도교육청	2	-	-	-	-	2	-
경상북도교육청	2	-	-	-	-	2	-
경상남도교육청	2	-	-	-	-	2	-
충청북도교육청	2	-	-	-	-	2	-
충청남도교육청	2	-	-	-	-	2	-
전라북도교육청	2	-	-	-	-	2	-
전라남도교육청	2	-	-	-	-	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	-	-	-	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	-	-	-	-	2	-

[표 1-2-7]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sup>24)</sup>
			90일 이내(C)	90일 초과		
2017	357	105	40	161	51	15.9 <sup>25)</sup>
2016	321	246	37	27	11	49.3
2015	70	8	33	22	7	53.2
2014	218	206	9	3	-	75.0
2013	265	182	36	45	2	43.4

24) 90일 이내 회신율 =  $\left( \frac{\text{90일내 회신건수}}{\text{피권고기관수} - \text{검토중(90일내)건수}} \right) * 100$

25) 2017년의 90일 이내 회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017년 인권정책 권고인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피권고기관인 기초자치단체 229개 중 90일 내 회신한 기관이 26개 기관에 불과한 것에 기인한다.

##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1. 이주인권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45	33	12	-
2017	4	3	1	-
2016	4	3	1	-
2015	1	1	-	-
2014	1	1	-	-
2013	5	4	1	-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33	31	11	17	3	2	90.3
2017	3	2	2	-	-	1	100.0
2016	3	2	-	2	-	1	100.0
2015	1	1	-	1	-	-	100.0
2014	1	1	-	1	-	-	100.0
2013	4	4	2	1	1	-	75.0

[표 1-3-3]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4	2	2	-	-	1	100.0
고용노동부	1	1	1	-	-	-	100.0
법무부	1	-	-	-	-	1	-
보건복지부	2	1	1	-	-	1	100.0

## 2. 여성·성소수자 인권

[표 1-3-4]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6	6	10	-
2017	3	-	3	-
2016	5	3	2	-
2015	1	-	1	-
2014	3	1	2	-
2013	2	1	1	-

[표 1-3-5] 여성·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6	4	2	2	-	2	100.0
2017	-	-	-	-	-	-	-
2016	3	1	-	1	-	2	100.0
2015	-	-	-	-	-	-	-
2014	1	1	-	1	-	-	-
2013	1	1	1	-	-	-	-

### 3. 아동 인권

[표 1-3-6] 아동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75	21	53	1
2017	10	2	8	-
2016	9	5	4	-
2015	6	1	5	-
2014	4	1	3	-
2013	5	1	4	-

[표 1-3-7]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21	18	6	9	3	3	83.3
2017	2	-	-	-	-	2	-
2016	5	4	2	2	-	1	100.0
2015	1	1	1	-	-	-	100.0
2014	1	1	1	-	-	-	100.0
2013	1	1	-	1	-	-	100.0

[표 1-3-8] 2017년 피권고기관별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 계	19	-	-	-	-	19	-
교육부	1	-	-	-	-	1	-
법무부	1	-	-	-	-	1	-
서울특별시교육청	1	-	-	-	-	1	-
부산광역시교육청	1	-	-	-	-	1	-
대구광역시교육청	1	-	-	-	-	1	-
인천광역시교육청	1	-	-	-	-	1	-
광주광역시교육청	1	-	-	-	-	1	-
대전광역시교육청	1	-	-	-	-	1	-
울산광역시교육청	1	-	-	-	-	1	-
경기도교육청	1	-	-	-	-	1	-
강원도교육청	1	-	-	-	-	1	-
충청북도교육청	1	-	-	-	-	1	-
충청남도교육청	1	-	-	-	-	1	-
경상북도교육청	1	-	-	-	-	1	-
경상남도교육청	1	-	-	-	-	1	-
전라북도교육청	1	-	-	-	-	1	-
전라남도교육청	1	-	-	-	-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	-	-	-	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	-	-	-	-	1	-

#### 4. 장애인 인권

[표 1-3-9]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75	44	29	2
2017	12	7	5	-
2016	15	10	5	-
2015	9	3	5	1
2014	7	3	3	1
2013	7	6	1	-

[표 1-3-10]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44	33	19	14	-	11	100.0
2017	7	-	-	-	-	7	-
2016	10	7	6	1	-	3	100.0
2015	3	3	1	2	-	-	100.0
2014	3	3	2	1	-	-	100.0
2013	6	5	3	2	-	1	100.0

[표 1-3-11] 2017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소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b>합 계</b>	<b>66</b>	-	-	-	-	<b>66</b>	-
국무총리	1	-	-	-	-	1	-
고용노동부	1	-	-	-	-	1	-
교육부	1	-	-	-	-	1	-
국도교통부	1	-	-	-	-	1	-
기획재정부	1	-	-	-	-	1	-
보건복지부	6	-	-	-	-	6	-
행정안전부	3	-	-	-	-	3	-
서울특별시	2	-	-	-	-	2	-
부산광역시	2	-	-	-	-	2	-
대구광역시	2	-	-	-	-	2	-
인천광역시	2	-	-	-	-	2	-
광주광역시	2	-	-	-	-	2	-
대전광역시	2	-	-	-	-	2	-
울산광역시	2	-	-	-	-	2	-
경기도	2	-	-	-	-	2	-
강원도	2	-	-	-	-	2	-
충청북도	2	-	-	-	-	2	-
충청남도	2	-	-	-	-	2	-
경상북도	2	-	-	-	-	2	-
경상남도	2	-	-	-	-	2	-
전라북도	2	-	-	-	-	2	-
전라남도	2	-	-	-	-	2	-
제주특별자치도	2	-	-	-	-	2	-
세종특별자치시	2	-	-	-	-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1	-	-	-	-	1	-
부산광역시 강서구	1	-	-	-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1	-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1	-	-	-	-	1	-
광주광역시 서구	1	-	-	-	-	1	-
강원도 홍천군	1	-	-	-	-	1	-
충청북도 증평군	1	-	-	-	-	1	-
충청남도 보령시	1	-	-	-	-	1	-
경상북도 영주시	1	-	-	-	-	1	-
경상남도 진주시	1	-	-	-	-	1	-
전라북도 익산시	1	-	-	-	-	1	-
기타(민간기관)	7	-	-	-	-	7	-

## 5. 북한인권

[표 1-3-12] 북한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26	12	14	-
2017	2	1	1	-
2016	2	1	1	-
2015	1	-	1	-
2014	2	1	1	-
2013	3	1	2	-

[표 1-3-13]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12	12	8	3	1	-	91.7
2017	1	1	1	-	-	-	100.0
2016	1	1	1	-	-	-	100.0
2015	-	-	-	-	-	-	-
2014	1	1	-	1	-	-	100.0
2013	1	1	-	1	-	-	100.0

## 6. 인권교육

[표 1-3-14] 인권교육 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17	8	9	-
2017	-	-	-	-
2016	2	2	-	-
2015	3	-	3	-
2014	2	-	2	-
2013	1	1	-	-

[표 1-3-15]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수용		
누 계	8	8	3	5	-	-	100.0
2017	-	-	-	-	-	-	-
2016	2	2	2	-	-	-	100.0
2015	-	-	-	-	-	-	-
2014	-	-	-	-	-	-	-
2013	1	1	-	1	-	-	100.0

##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sup>26)</sup>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211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6	8	6	8
예산액	6,894	750	750	700	700	550	350	300	330	280	300	300	300	300	300	300	384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11	29	23	26	17	24	14	11	8	7	8	8	8	6	8	6	8
인권기준·정책일반 (NAP포함)	48	4	8	23	1	-	4	1	-	1	3	-	2	-	-	1	-
구금·보호시설	10	3	3	-	-	2	-	-	-	1	-	-	-	-	-	1	-
군·경찰	12	3	3	-	2	3	-	-	-	-	-	1	-	-	-	-	-
여성	5	-	-	-	-	1	1	1	1	-	-	1	-	-	-	-	-
장애·병력	22	7	-	2	4	3	1	1	1	-	-	-	-	1	1	1	-
아동	18	5	-	-	1	4	3	1	1	2	-	-	-	-	1	-	-
노인	11	3	-	-	-	1	1	-	1	-	-	1	1	1	1	-	1
이주·난민	11	1	3	-	1	-	-	1	-	2	-	1	1	-	-	-	1
차별일반·전과 등 차별	12	1	1	1	2	2	-	-	1	-	1	1	-	-	-	1	1
비정규직·노동권	18	-	2	-	1	2	1	1	-	-	1	2	1	1	3	1	2
건강·주거·환경· 사회보장권	12	-	2	-	3	2	-	1	1	-	-	-	-	1	1	-	1
인권교육	8	1	-	-	-	2	1	2	-	-	1	-	-	1	-	-	-
정보인권	9	1	1	-	1	1	-	-	1	1	1	1	-	-	-	-	1
기업인권	4	-	-	-	-	-	-	2	1	-	1	-	-	-	-	-	-
북한인권	4	-	-	-	1	-	1	-	-	-	-	-	1	-	-	-	1
국제인권	7	-	-	-	-	1	1	-	-	-	-	-	2	1	1	1	-

26) 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 2. 정책연구용역

[표 1-4-3] 연구용역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41	2	4	10	8	18	17	21	18	10	14	13	12	20	24	26	24
인권정책(일반)	26	-	-	-	-	1	-	-	-	-	2	1	2	3	5	5	7
정보인권	5	-	-	-	-	-	-	-	1	1	-	-	1	-	-	1	1
기업인권	7	-	-	-	-	-	-	-	-	-	-	1	1	2	1	1	1
북한인권	12	-	-	1	-	-	-	1	2	1	-	1	-	1	2	2	1
국제인권	5	-	-	-	-	-	1	-	-	-	-	-	-	-	-	2	2
인권교육	114	2	4	9	8	17	16	14	14	5	3	2	1	6	8	5	-
이주	10	-	-	-	-	-	-	-	-	-	2	1	2	1	1	1	2
차별	9	-	-	-	-	-	-	-	-	-	1	1	-	1	1	2	3
여성	8	-	-	-	-	-	-	-	-	-	1	1	2	1	2	1	-
장애	39	-	-	-	-	-	-	6	1	3	5	5	3	5	3	4	4
아동	6	-	-	-	-	-	-	-	-	-	-	-	-	-	1	2	3

## 제2장 인권상담

###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 등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리면, 즉 먼진정신청을 신청하면 위원회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을 받는다.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매년 구금·보호시설에 설치된 진정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인권 취약계층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인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권순회상담을 하기도 한다.

[표 2-1-1] 인권상담·민원 / 안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상담		민원/안내	
	건수	100.0	건수	100.0	건수	100.0
누 계	762,165	100.0	336,645	44.2	425,520	55.8
2017	79,307	100.0	36,369	45.9	42,938	54.1
2016	69,636	100.0	31,616	45.4	38,020	54.6
2015	69,991	100.0	32,030	45.8	37,961	54.2
2014	71,170	100.0	34,547	48.5	36,623	51.5
2013	72,178	100.0	35,508	49.2	36,670	50.8
2012	60,210	100.0	29,267	48.6	30,943	51.4
2011	51,371	100.0	25,303	49.3	26,068	50.7
2010	51,569	100.0	24,772	48.0	26,797	52.0
2009	46,715	100.0	20,077	43.0	26,638	57.0
2008	47,118	100.0	17,069	36.2	30,049	63.8
2007	34,744	100.0	13,964	40.2	20,780	59.8
2006	30,694	100.0	11,136	36.3	19,558	63.7
2005	28,500	100.0	9,767	34.3	18,733	65.7
2004	19,464	100.0	6,432	33.0	13,032	67.0
2003	16,586	100.0	5,607	33.8	10,979	66.2
2002	10,708	100.0	2,830	26.4	7,878	73.6
2001	2,204	100.0	351	15.9	1,853	84.1

## 제2절 인권상담

### 1. 인권상담 현황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인권상담센터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강 원	
누 계	<b>336,645</b>	100.0	<b>258,801</b>	<b>76.9</b>	<b>26,787</b>	<b>8.0</b>	<b>23,795</b>	<b>7.1</b>	<b>21,667</b>	<b>6.4</b>	<b>5,500</b>	<b>1.6</b>	<b>95</b>	-
2017	36,369	100.0	26,792	73.7	2,425	6.7	2,786	7.7	2,125	5.8	2,146	5.9	95	-
2016	31,616	100.0	23,202	73.4	2,173	6.9	2,129	6.7	2,146	6.8	1,966	6.2		
2015	32,030	100.0	24,516	76.5	1,793	5.6	2,326	7.3	2,258	7.1	1,137	3.5		
2014	34,547	100.0	27,394	79.3	1,948	5.6	2,411	7.0	2,543	7.4	251	0.7		
2013	35,508	100.0	27,947	78.7	2,656	7.5	2,245	6.3	2,660	7.5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b>336,645</b>	35,508	34,547	32,030	31,616	36,369	
인권상담센터	소 계	<b>258,801</b>	27,947	27,394	24,516	23,202	26,792
	전화	<b>223,850</b>	25,860	25,345	22,673	21,551	25,051
	대면	<b>22,718</b>	1,637	1,594	1,274	1,270	1,367
	인터넷	<b>463</b>	-	27	108	73	73
	면접상담	<b>11,770</b>	450	428	461	308	301
부산인권사무소	소 계	<b>26,787</b>	2,656	1,948	1,793	2,173	2,425
	전화	<b>18,754</b>	1,991	1,505	1,481	1,797	1,842
	대면	<b>2,703</b>	304	166	104	163	258
	면접상담	<b>5,330</b>	361	277	208	213	325
광주인권사무소	소 계	<b>23,795</b>	2,245	2,411	2,326	2,129	2,786
	전화	<b>17,169</b>	1,794	2,019	1,982	1,800	2,358
	대면	<b>2,966</b>	258	238	236	225	241
	인터넷	<b>1</b>	-	-	-	-	-
	면접상담	<b>3,659</b>	193	154	108	104	187
대구인권사무소	소 계	<b>21,667</b>	2,660	2,543	2,258	2,146	2,125
	전화	<b>15,528</b>	2,203	2,102	1,843	1,642	1,556
	대면	<b>1,696</b>	139	149	186	254	221
	면접상담	<b>4,443</b>	318	292	229	250	348
대전인권사무소	소 계	<b>5,500</b>	-	251	1,137	1,966	2,146
	전화	<b>4,561</b>	-	196	830	1,659	1,866
	대면	<b>508</b>	-	23	156	178	151
	면접상담	<b>441</b>	-	32	151	129	129
강원인권사무소	소 계	<b>95</b>	-	-	-	-	95
	전화	<b>36</b>	-	-	-	-	36
	대면	<b>48</b>	-	-	-	-	48
	면접상담	<b>11</b>	-	-	-	-	11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실시횟수	처리결과		
		합 계	진정접수	상 담
<b>누 계</b>	<b>289</b>	<b>7,645</b>	<b>737</b>	<b>6,908</b>
2017	29	609	22	587
2016	30	774	17	757
2015	29	614	18	596
2014	31	693	2	691
2013	31	323	12	311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처리결과	소 계	7,645	323	693	614	774	609
		진정접수	737	12	2	18	17	22
		상담	6,908	311	691	596	757	587
	순회상담 횟수		289	31	31	29	30	29
인권상담 센터	처리결과	소 계	4,101	72	77	181	293	202
		진정접수	652	8	2	14	8	13
		상담	3,449	64	75	167	285	189
	순회상담 횟수		116	12	9	10	10	9
부산인권 사무소	처리결과	소 계	885	88	298	45	156	52
		진정접수	24	1	-	-	5	-
		상담	861	87	298	45	151	52
	순회상담 횟수		51	8	11	3	6	4
광주인권 사무소	처리결과	소 계	1,239	116	141	138	96	101
		진정접수	40	3	-	3	3	-
		상담	1,199	113	141	135	93	101
	순회상담 횟수		48	3	3	4	4	3
대구인권 사무소	처리결과	소 계	1,092	47	177	159	134	112
		진정접수	14	-	-	-	1	3
		상담	1,078	47	177	159	133	109
	순회상담 횟수		60	8	8	6	7	8
대전인권 사무소	처리결과	소 계	252	-	-	91	95	66
		진정접수	1	-	-	1	-	-
		상담	251	-	-	90	95	66
	순회상담 횟수		11	-	-	6	3	2
강원인권 사무소	처리결과	소 계	76	-	-	-	-	76
		진정접수	6	-	-	-	-	6
		상담	70	-	-	-	-	70
	순회상담 횟수		3	-	-	-	-	3

## 2. 상담신청인 현황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b>합 계</b>	<b>336,645</b>	<b>35,508</b>	<b>34,547</b>	<b>32,030</b>	<b>31,616</b>	<b>36,369</b>
서울	11,841	372	336	269	228	237
부산	3,989	164	130	112	125	160
인천	2,049	76	63	39	40	56
광주	4,829	384	385	346	431	472
대구	2,343	180	107	66	409	326
대전	1,043	23	43	60	30	69
울산	802	72	68	24	30	23
경기	7,754	229	221	168	191	167
강원	1,332	46	36	40	35	47
충북	1,060	21	18	45	17	41
충남	994	29	45	46	34	53
세종	55	1	3	3	2	8
전북	3,551	285	337	319	308	339
전남	6,250	525	570	619	641	864
경북	2,309	239	84	74	326	310
경남	2,687	272	211	159	103	136
제주	926	78	71	60	100	109
미등록 <sup>27)</sup>	282,832	32,512	31,819	29,581	28,566	32,952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미등록
<b>누 계</b>	<b>336,645</b>	<b>232,390</b>	<b>89,596</b>	<b>14,659</b>
2017	36,369	21,759	11,522	3,088
2016	31,616	19,763	10,036	1,817
2015	32,030	21,668	9,813	549
2014	34,547	23,651	10,642	254
2013	35,508	23,944	10,121	1,443

27) 상담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담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 미등록 통계가 높게 나온 것이며(이하 같다), 면진진정 상담의 경우 지역별 통계가 상담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닌 구급·보호시설로 처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상담신청인의 지역별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등록으로 일괄 처리한다.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336,645	758	5,842	13,359	18,178	13,820	9,011	275,677
2017	36,369	37	402	1,241	1,434	1,667	1,246	30,352
2016	31,616	96	447	1,068	1,599	1,724	1,231	25,451
2015	32,030	37	368	923	1,321	1,296	824	27,261
2014	34,547	52	375	937	1,477	1,455	924	29,327
2013	35,508	39	331	866	1,420	1,347	806	30,699

###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1) 유형별 상담 현황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sup>28)</sup>		면전진정 상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336,645	100.0	130,334	38.7	29,254	8.7	151,403	45	25,654	7.6
2017	36,369	100.0	14,738	40.5	3,235	8.9	17,095	47	1,301	3.6
2016	31,616	100.0	14,421	45.6	2,530	8.0	13,661	43.2	1,004	3.2
2015	32,030	100.0	14,083	44.0	2,660	8.3	14,130	44.1	1,157	3.6
2014	34,547	100.0	13,859	40.1	2,974	8.6	16,531	47.9	1,183	3.4
2013	35,508	100.0	13,787	38.8	2,978	8.4	17,421	49.1	1,322	3.7
2012	29,267	100.0	11,823	40.4	2,529	8.6	13,549	46.3	1,366	4.7
2011	25,303	100.0	8,957	35.4	2,293	9.1	12,692	50.1	1,361	5.4
2010	24,772	100.0	8,806	35.6	2,141	8.6	11,825	47.7	2,000	8.1
2009	20,077	100.0	6,738	33.6	1,974	9.8	8,721	43.4	2,644	13.2
2008	17,069	100.0	5,391	31.6	1,607	9.4	6,812	39.9	3,259	19.1
2007	13,964	100.0	4,843	34.7	1,170	8.4	5,247	37.6	2,704	19.3
2006	11,136	100.0	3,687	33.1	978	8.8	4,045	36.3	2,426	21.8
2005	9,767	100.0	3,610	37.0	995	10.2	3,764	38.5	1,398	14.3
2004	6,432	100.0	2,426	37.7	518	8.1	2,142	33.3	1,346	20.9
2003	5,607	100.0	2,015	35.9	446	8.0	2,268	40.4	878	15.7
2002	2,830	100.0	1,032	36.5	202	7.1	1,294	45.7	302	10.7
2001	351	100.0	118	33.6	24	6.8	206	58.7	3	0.9

28) [표 2-1-21] 기타 내용별 상담 현황 참조

## 2)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30,334	13,787	13,859	14,083	14,421	14,738
검찰	4,515	323	282	271	179	264
경찰	26,548	2,236	2,236	2,113	2,020	2,283
국정원	233	26	6	13	4	10
특사경	108	-	-	-	-	-
지방자치단체	8,211	573	673	602	660	836
사법기관	1,876	180	154	128	131	149
입법기관	91	4	5	11	7	12
기타국가기관	8,744	583	630	584	582	680
구금시설	3,662	325	266	335	356	436
다수인보호시설	59,083	7,591	7,463	7,863	8,086	7,411
군	4,158	337	502	350	311	403
각급학교	6,384	815	931	821	997	1,165
출입국관리기관	423	48	38	70	88	61
보호시설	164	-	-	-	-	-
공직유관단체	2,352	350	378	376	403	545
기타	3,782	396	295	546	597	483

### 3)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515	323	282	271	179	264
도·감청 등	13	2	2	2	-	-
압수수색(신체)	56	-	5	1	2	3
집회, 시위	8	1	-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29	-	3	4	1	2
임의동행	13	-	-	-	1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1	-	-	-	-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165	6	5	2	5	3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754	58	53	49	33	48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74	2	4	4	2	9
체포, 구속, 감금	137	13	6	9	5	8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617	96	63	62	30	68
공소권 남용	342	31	20	11	19	13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244	23	31	21	12	30
알권리/정보공개	109	13	4	12	3	6
생명권 침해	11	2	1	3	1	3
압수수색(주거) 등	9	2	3	1	-	-
종교의 자유	1	-	-	-	-	-
기타	922	73	82	90	65	71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6,548	2,236	2,236	2,113	2,020	2,283
불심검문/ 임의동행	632	28	33	36	39	20
도·감청 등	99	16	4	6	6	16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635	39	22	29	29	18
집회, 시위	297	13	12	11	12	3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610	44	70	51	56	5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49	3	1	2	5	4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5,863	555	556	465	431	444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4,481	390	411	410	358	419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791	60	62	50	67	57
체포, 구속, 감금	1,192	67	85	164	131	155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048	450	431	345	349	409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1,367	146	170	130	139	125
알권리/정보공개	284	24	24	27	24	25
생명권 침해	53	11	8	9	6	4
압수수색(주거) 등	92	16	9	17	15	12
종교의 자유	2	-	-	1	-	-
인터넷	6	3	-	1	-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42	5	8	8	3	7
기타	4,005	366	330	351	350	506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158	337	502	350	311	403
부당한 사건분류	5	-	-	-	-	-
법정질환관리 부실	1	-	-	-	-	-
면담불허	1	-	-	-	-	-
외부통신 제한	3	-	-	-	-	-
불심검문/임의동행	3	-	-	-	-	-
도·감청 등	6	-	1	1	1	-
압수수색(신체)	11	-	-	2	-	1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5	-	2	1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134	14	17	6	16	16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748	36	98	39	23	2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	-	1	1	-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614	55	106	63	58	99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729	70	82	62	58	55
체포, 구속, 감금	20	2	1	1	1	2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24	20	18	20	25	15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	54	5	12	9	7	7
생명권 침해	240	21	32	13	7	8
부당한 제도 및 처분	680	59	48	62	48	88
압수수색(주거)	7	-	3	1	2	-
종교의 자유	7	3	-	1	1	1
인터넷	2	2	-	-	-	-
영창관련 인권침해	38	4	7	7	3	8
기타	724	46	74	61	61	78

[표 2-1-14] 구급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62	325	266	335	356	436
건강/의료	1,239	102	96	113	124	156
외부교통 권리제한	214	10	6	15	17	19
조사/징벌/계구	313	32	21	22	32	27
폭행/가혹행위	632	75	46	53	47	64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528	43	34	60	53	76
시설/환경	183	8	11	16	21	23
직원근무형태	1	-	-	-	1	-
기타	552	55	52	56	61	71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9,083	7,591	7,463	7,863	8,086	7,411
불법/강제 수용	18,782	2,421	2,378	2,357	2,398	1,782
폭행/가혹행위	4,258	525	440	466	366	359
외부교통권 제한	3,466	478	378	404	368	409
의료조치 미흡	2,381	283	342	302	358	293
강제노동	583	78	62	58	66	56
인권격 침해	5,220	432	497	922	1,209	928
시설/환경	1,923	249	227	210	202	241
퇴원요청	13,356	2,004	1,798	1,825	1,734	1,884
기타	9,114	1,121	1,341	1,319	1,385	1,459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sup>29)</sup>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23	48	38	70	88	61
욕설/반말	20	2	2	3	6	3
폭행/가혹행위	25	-	2	8	10	-
출입국 제한	124	18	18	18	12	26
사생활 비밀 침해	16	4	1	2	4	2
알권리 침해	12	2	-	2	4	1
적법절차 준수 위반	23	2	4	10	5	-
위법/부당한 처분	55	8	5	8	10	8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59	3	1	9	14	6
기타	89	9	5	10	23	15

[표 2-1-17] 각급학교<sup>30)</sup>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384	815	931	821	997	1,165
인격권 침해	3,208	342	432	454	480	579
체벌	400	75	47	51	54	41
징계부당	479	74	85	44	64	76
기타	2,297	324	367	272	399	469

29) 2011년부터 출입국관리기관으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하였다.

30) 2010년부터 각급학교로 기관유형을 추가하여 분리하였다.

#### 4) 차별행위 상담 현황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9,254	2,978	2,974	2,660	2,530	3,235
검찰	514	7	6	7	2	3
경찰	254	42	31	38	34	33
구급시설	59	4	6	4	4	5
군대	232	19	18	22	27	34
기타국가기관	2,065	167	159	141	143	164
지방자치단체	1,793	157	131	107	149	180
보호시설	427	45	61	53	64	56
교육기관	2,746	292	299	254	235	281
공공기관	2,023	215	176	186	148	224
사법인	7,563	554	652	619	508	901
개인회사	5,955	777	773	758	715	790
단체	713	67	68	60	61	105
사인(개인)	3,627	476	473	316	316	321
요양시설	115	18	22	17	12	16
기타	1,168	138	99	78	112	122

[표 2-1-19]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9,254	2,978	2,974	2,660	2,530	3,235
성별	894	78	72	64	76	122
종교	226	11	17	24	22	32
장애	9,717	1,112	1,072	994	906	1,065
나이	1,863	197	155	126	116	144
사회적신분	2,431	231	213	192	155	231
출신지역	190	10	18	10	14	12
출신국가	694	64	69	54	44	49
출신민족	38	5	3	4	2	1
용모, 신체조건	433	39	55	33	37	54
혼인여부	172	11	12	15	19	19
임신, 출산	483	45	47	54	39	75
가족상황	226	17	23	25	14	33
인종	53	8	5	6	8	6
피부색	17	4	2	2	1	-
사상, 정치적의견	92	3	6	1	9	4
전과	388	44	39	29	20	34
성적지향	68	5	12	8	12	12
병력	868	75	83	61	62	115
학벌/학력	362	38	24	24	18	32
성희롱	7,457	764	819	726	739	962
기타	2,582	217	228	208	217	233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9,254	2,978	2,974	2,660	2,530	3,135
고용에서의 차별	10,996	1,083	1,078	924	896	1,209
소계	10,996	1,083	1,078	924	896	1,209
모집	993	89	85	66	55	73
채용	1,922	184	172	131	103	194
배치	937	94	84	62	60	138
교육	103	13	10	9	9	7
승진	392	42	28	25	22	46
임금지급	1,152	128	150	130	123	36
임금외 금품지급	365	41	35	21	33	47
자금융자	8	1	1	-	1	1
정년	218	35	15	19	5	6
퇴직	387	49	37	28	27	31
해고	1,408	116	143	93	104	119
기타	3,111	291	318	340	354	511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6,661	716	665	693	605	761
소계	6,661	716	665	693	605	761
용역의 공급이용	2,014	209	224	206	176	200
재화의 공급이용	2,736	329	274	307	258	340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692	47	51	77	61	63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859	82	78	80	85	114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327	49	35	19	22	41
토지의 공급이용	33	-	3	4	3	3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1,259	112	129	101	94	125
소계	1,259	112	129	101	94	125
교육시설의 이용	1,131	93	113	87	89	111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128	19	16	14	5	14
기타	10,338	1,067	1,102	942	935	1,040

5) 기타 상담 현황

[표 2-1-21] 기타 내용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51,403	17,421	16,531	14,130	13,661	17,095
사인간침해	28,639	3,126	2,482	2,018	1,983	2,634
회사	18,418	1,789	1,804	1,726	1,686	2,456
기타단체	3,474	255	300	247	287	270
재산권	5,137	615	390	382	298	439
법령제도개선	2,614	252	211	193	129	213
입법/재판	4,432	451	316	263	235	246
국가기관	7,183	913	439	366	395	543
인권위업무 문의	26,689	3,061	3,525	3,179	3,667	4,928
위원회업무불만	4,761	473	424	345	356	527
법률문의	7,880	898	859	770	687	213
인권위관련 제안	1,120	93	69	39	35	25
차별영역외	631	107	39	53	32	16
사립학교 <sup>31)</sup>	141	-	-	-	-	-
기타	45,991	5,388	5,673	4,549	3,871	3,931

31) 법 제30조제1항1호가 개정(각급학교 추가, 2012.3.21.)되어 사립학교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기 타
<b>누 계</b>	<b>336,645</b>	<b>30,572</b>	<b>276,389</b>	<b>20,897</b>	<b>8,787</b>
2017	36,369	3,215	29,168	2,877	1,109
2016	31,616	3,591	24,747	2,486	792
2015	32,030	4,018	25,146	2,153	713
2014	34,547	4,049	27,224	2,283	991
2013	35,508	3,410	28,418	2,294	1,386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b>336,645</b>	35,508	34,547	32,030	31,616	36,369	
인권상담 센터	소 계	<b>258,801</b>	27,947	27,394	24,516	23,202	26,792
	진정접수	<b>21,184</b>	2,264	2,883	2,601	2,199	2,121
	상담종결	<b>216,278</b>	23,152	22,047	19,648	18,341	21,922
	타기관안내	<b>15,835</b>	1,734	1,835	1,740	2,124	2,167
	기타	<b>5,504</b>	797	629	527	538	582
부산인권 사무소	소 계	<b>26,787</b>	2,656	1,948	1,793	2,173	2,425
	진정접수	<b>3,313</b>	428	352	356	367	263
	상담종결	<b>20,855</b>	1,862	1,296	1,329	1,564	1,867
	타기관안내	<b>1,970</b>	258	230	95	157	248
	기타	<b>649</b>	108	70	13	85	47
광주인권 사무소	소 계	<b>23,795</b>	2,245	2,411	2,326	2,129	2,786
	진정접수	<b>3,586</b>	388	508	561	461	417
	상담종결	<b>16,345</b>	1,216	1,495	1,499	1,475	2,013
	타기관안내	<b>2,136</b>	251	178	176	124	236
	기타	<b>1,728</b>	390	230	90	69	120
대구인권 사무소	소 계	<b>21,667</b>	2,660	2,543	2,258	2,146	2,125
	진정접수	<b>1,689</b>	330	278	311	236	158
	상담종결	<b>18,495</b>	2,188	2,175	1,754	1,754	1,690
	타기관안내	<b>765</b>	51	36	130	75	57
	기타	<b>719</b>	91	54	63	81	220
대전인권 사무소	소 계	<b>5,500</b>	-	251	1,137	1,966	2,146
	진정접수	<b>775</b>	-	28	189	328	230
	상담종결	<b>4,361</b>	-	211	916	1,613	1,611
	타기관안내	<b>187</b>	-	4	12	6	165
	기타	<b>187</b>	-	8	20	19	140
강원인권 사무소	소 계	<b>95</b>	-	-	-	-	35
	진정접수	<b>26</b>	-	-	-	-	26
	상담종결	<b>65</b>	-	-	-	-	65
	타기관안내	<b>4</b>	-	-	-	-	4
	기타	<b>-</b>	-	-	-	-	-

## 5. 면전진정<sup>32)</sup>

[표 2-1-24]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54,163	53,949	100.0	14,214	26.3	14,081	26.1	25,654	47.6
2017	2,765	2,835	100.0	861	30.4	673	23.7	1,301	45.9
2016	2,619	2,479	100.0	980	39.5	495	20.0	1,004	40.5
2015	2,658	2,727	100.0	916	33.6	654	24.0	1,157	42.4
2014	2,874	2,836	100.0	966	34.1	687	24.2	1,183	41.7
2013	3,068	3,095	100.0	992	32.1	781	25.2	1,322	42.7

32) 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표 2-1-25] 부서별 면진진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 청	처리결과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b>누 계</b>	<b>54,163</b>	<b>53,949</b>	<b>100.0</b>	<b>14,214</b>	<b>26.3</b>	<b>14,081</b>	<b>26.1</b>	<b>25,654</b>	<b>47.6</b>	
2017	소 계	2,765	2,835	100.0	861	30.4	673	23.7	1,301	45.9
	인권상담센터	784	812	100.0	287	35.3	224	27.6	301	37.1
	부산인권사무소	676	669	100.0	198	29.6	146	21.8	325	48.6
	광주인권사무소	427	446	100.0	147	33	112	25.1	187	41.9
	대구인권사무소	571	595	100.0	145	24.4	102	17.1	348	59.5
	대전인권사무소	270	277	100.0	74	26.7	74	26.7	129	46.6
	강원인권사무소	37	36	100.0	10	27.8	15	41.7	11	30.6
2016	소 계	2,619	2,479	100.0	980	39.7	495	20.0	1,004	40.3
	인권상담센터	775	735	100.0	275	37.6	152	20.8	308	41.6
	부산인권사무소	566	541	100.0	213	39.7	115	21.4	213	38.9
	광주인권사무소	374	357	100.0	170	47.6	83	23.2	104	29.1
	대구인권사무소	589	550	100.0	203	36.9	97	17.6	250	45.5
	대전인권사무소	315	296	100.0	119	40.2	48	16.2	129	43.6
2015	소 계	2,658	2,727	100.0	916	33.6	654	24.0	1,157	42.4
	인권상담센터	878	923	100.0	275	29.8	187	20.3	461	49.9
	부산인권사무소	557	565	100.0	213	37.7	144	25.5	208	36.8
	광주인권사무소	372	367	100.0	141	38.4	118	32.2	108	29.4
	대구인권사무소	548	551	100.0	196	35.6	126	22.9	229	41.5
	대전인권사무소	303	321	100.0	91	28.4	79	24.6	151	47.0
2014	소 계	2,874	2,836	100.0	966	34.1	687	24.2	1,183	41.7
	인권상담센터	1,039	1,012	100.0	355	35.1	229	22.6	428	42.3
	부산인권사무소	645	647	100.0	180	27.8	190	29.4	277	42.8
	광주인권사무소	497	498	100.0	175	35.1	169	34.0	154	30.9
	대구인권사무소	603	614	100.0	244	39.7	78	12.7	292	47.6
	대전인권사무소	90	65	100.0	12	18.5	21	32.3	32	49.2
2013	소 계	3,068	3,095	100.0	992	32.1	781	25.2	1,322	42.7
	인권상담센터	978	1,045	100.0	354	33.8	241	23.1	450	43.1
	부산인권사무소	867	852	100.0	251	29.4	240	28.2	361	42.4
	광주인권사무소	527	518	100.0	157	30.3	168	32.4	193	37.3
	대구인권사무소	696	680	100.0	230	33.8	132	19.4	318	46.8

※ 대전인권사무소는 2014. 10. 15., 강원인권사무소는 2017. 6. 1. 개소하였다.

[표 2-1-26] 구금·보호시설<sup>33)</sup>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종결처리				
		소 계	철 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합 계	54,163	53,949	14,214	14,081	25,654
	교정시설	47,425	47,251	12,206	13,117	21,928
	경찰서 유치장 등	57	56	27	13	16
	군 구금시설	59	58	31	6	21
	다수인 보호시설	6,622	6,584	1,950	945	3,699
2017	소 계	2,765	2,835	861	673	1,301
	교정시설	2,352	2,426	709	633	1,084
	경찰서 유치장 등	4	3	2	-	1
	군 구금시설	5	4	2	1	1
	다수인 보호시설	404	402	148	39	215
2016	소 계	2,619	2,479	980	495	1,004
	교정시설	2,093	1,951	753	441	757
	경찰서 유치장 등	1	1	1	-	-
	군 구금시설	3	3	1	-	2
	다수인 보호시설	522	516	225	54	237
2015	소 계	2,658	2,727	916	654	1,157
	교정시설	2,000	2,076	647	565	864
	경찰서 유치장 등	1	1	1	-	-
	군 구금시설	3	3	-	2	1
	다수인 보호시설	654	647	268	87	292
2014	소 계	2,874	2,836	966	687	1,183
	교정시설	2,249	2,199	749	594	856
	경찰서 유치장 등	1	1	1	-	-
	군 구금시설	8	8	6	1	1
	다수인 보호시설	616	628	210	92	326
2013	소 계	3,068	3,095	992	781	1,322
	교정시설	2,303	2,349	748	663	938
	경찰서 유치장 등	3	3	2	1	-
	군 구금시설	7	9	2	-	7
	다수인 보호시설	755	734	240	117	377

33) 법 제2조(정의) 제2호 “구금·보호시설”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종결건수	3,095	2,836	2,727	2,471	2,835
평균 소요일수	22.3일	20.9일	22.4일	25.3일	25.7일

### 제3절 민원 및 안내

#### 1. 민원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진정 접수 절차 안내	조사 대상 안내	진정 내용 보완 요구	진정 사건 처리 안내	법령 등 자료 송부	질의 회신	면전 진정 안내	타기관 이송	타기관 안내	진정 접수 안내	민원인 취하	공람 종결	처리 종결 (회신무)	민원 회신	기타
누 계	173,830	18,698	49,394	2,257	1,203	677	785	444	9,212	925	40,649	841	1,517	21,524	18,871	6,833
2017	25,639	1,622	3,949	489	51	2	-	7	8,423	74	6,959	72	52	1,236	2,633	70
2016	19,416	942	3,699	374	46	5	-	4	505	148	5,151	53	97	5,594	2,747	51
2015	14,677	969	3,395	113	78	-	-	11	26	4	5,106	49	42	2,055	2,778	51
2014	14,293	1,501	3,915	41	110	-	-	9	18	17	5,128	84	19	1,377	2,048	26
2013	13,222	1,147	4,360	210	72	4	-	5	13	52	2,801	31	16	1,628	2,870	13
2012	12,213	1,411	3,289	6	15	-	-	2	7	3	2,688	66	46	1,495	3,146	39
2011	10,974	1,723	4,120	73	50	3	-	9	26	75	2,137	65	167	904	1,579	43
2010	11,372	1,513	4,561	68	50	14	1	4	61	79	2,271	117	293	957	1,070	313
2009	9,619	1,825	3,543	105	84	29	-	20	13	13	1,862	40	176	993	-	916
2008	8,937	1,321	3,273	76	79	92	-	15	21	21	1,749	20	131	1,271	-	868
2007	8,843	1,069	2,781	123	75	124	-	5	22	34	1,894	126	60	1,842	-	688
2006	8,151	1,574	3,216	30	88	85	24	36	3	107	855	115	15	818	-	1,185
2005	8,627	1,140	3,147	175	96	148	433	132	4	106	1,214	3	221	748	-	1,060
2004	4,546	659	1,265	245	71	89	206	131	3	140	422	-	81	462	-	772
2003	2,455	214	697	97	199	59	76	53	54	52	225	-	101	108	-	520
2002	835	68	184	32	39	23	45	1	13	-	187	-	-	36	-	207
2001	11	-	-	-	-	-	-	-	-	-	-	-	-	-	-	11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본 부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강 원
누 계	173,830 100.0	169,552 97.4	1,628 0.9	954 0.6	1,215 0.8	477 0.3	4 -
2017	25,639 100.0	24,835 95.3	193 1.2	145 0.9	219 1.2	243 1.4	4 -
2016	19,416 100.0	18,802 96.8	157 0.8	91 0.5	213 1.1	153 0.8	
2015	14,677 100.0	14,289 97.4	105 0.7	122 0.8	92 0.6	69 0.5	
2014	14,293 100.0	13,852 96.9	247 1.7	86 0.6	96 0.7	12 0.1	
2013	13,222 100.0	13,019 98.5	80 0.6	69 0.5	54 0.4		

## 2. 안내

[표 2-2-3] 안내 내용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위원회 업무안내	전화번호/ 주소안내	잘못 걸린 전화	직원안내	진정접수 여부 확인	타기관/ 단체 안내	타부서 안내	진정예정	기타
누 계	251,690	44,445	15,751	45,686	58,670	7,740	23,510	7,843	495	47,550
2017	17,299	4,264	524	1,740	4,251	440	1,375	423	70	4,215
2016	18,604	3,825	696	1,702	5,153	789	2,064	522	30	3,823
2015	23,284	4,862	935	4,303	5,379	793	2,148	557	56	4,251
2014	22,330	4,126	918	3,674	5,717	618	2,089	703	84	4,401
2013	23,448	3,688	1,065	5,134	5,771	691	1,926	874	153	4,146
2012	18,730	2,563	719	5,007	4,150	435	1,171	540	47	4,098
2011	15,094	2,353	1,152	4,003	3,707	305	1,209	427	13	1,925
2010	15,425	3,231	1,406	2,659	4,381	448	1,661	488	42	1,109
2009	17,019	2,357	1,383	4,768	3,799	486	2,325	490	-	1,411
2008	21,112	2,276	1,394	8,947	3,736	525	1,599	736	-	1,899
2007	11,937	2,936	1,239	922	2,808	555	1,613	431	-	1,433
2006	11,407	2,695	1,341	1,214	2,327	487	1,482	453	-	1,408
2005	10,106	2,466	1,054	463	2,771	371	1,119	302	-	1,560
2004	8,486	1,563	885	542	2,230	346	971	310	-	1,639
2003	8,524	1,240	1,043	608	2,490	451	758	587	-	1,347
2002	7,043	-	-	-	-	-	-	-	-	7,043
2001	1,842	-	-	-	-	-	-	-	-	1,842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	
누 계	251,690	100.0	189,336	75.2	15,417	6.1	31,112	12.4	12,272	4.8	3,550	1.5	3	-
2017	17,299	100.0	11,865	68.6	1,150	6.6	1,879	11	1,148	6.6	1,254	7.2	3	-
2016	18,604	100.0	11,800	63.4	1,246	6.7	2,380	12.8	1,456	7.8	1,722	9.3		
2015	23,284	100.0	15,176	65.2	1,998	8.6	3,770	16.2	1,818	7.8	522	2.2		
2014	22,330	100.0	16,373	73.3	598	2.7	3,320	14.9	1,987	8.9	52	0.2		
2013	23,448	100.0	18,674	79.6	607	2.6	3,343	14.3	824	3.5				

## 제3장 조사 및 구제

###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업무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의 차별행위이다.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性的)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연령차별을 조사한다.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2절 진정 접수

### 1. 진정접수 현황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 <sup>34)</sup>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122,899	100.0	94,194	76.6	26,439	21.5	2,266	1.8
2017	12,325	100.0	9,263	75.2	3,029	24.6	33	0.3
2016	10,645	100.0	8,160	76.7	2,431	22.8	54	0.5
2015	10,695	100.0	8,499	79.5	2,188	20.4	8	0.1
2014	10,923	100.0	8,708	79.7	2,197	20.1	18	0.2
2013	10,056	100.0	7,457	74.2	2,496	24.8	103	1.0
2012	9,582	100.0	6,946	72.5	2,549	26.6	87	0.9
2011	7,357	100.0	5,425	73.7	1,803	24.5	129	1.8
2010	9,168	100.0	6,460	70.5	2,681	29.2	27	0.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7
2006	4,187	100.0	3,335	79.7	824	19.7	28	0.6
2005	5,617	100.0	4,199	74.8	1,081	19.2	337	6.0
2004	5,368	100.0	4,627	86.2	389	7.2	352	6.6
2003	3,815	100.0	3,041	79.7	358	9.4	416	10.9
2002	2,790	100.0	2,214	79.3	136	4.9	440	15.8
2001	803	100.0	619	77.1	53	6.6	131	16.3

34) 기타 진정의 주요 내용은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참조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전화	대면	면전	홈페이지	인터넷	우편	FAX	이첩
누 계	122,899	25,079	16,354	14,297	21,812	5,682	30,826	2,246	6,603
2017	12,325	2,890	967	629	2,962	488	2,599	143	1,647
2016	10,645	3,364	1,264	488	2,405	72	2,078	103	871
2015	10,695	3,718	699	684	2,596	82	2,108	114	694
2014	10,923	3,689	908	718	2,458	128	2,129	147	746
2013	10,056	2,921	1,295	832	2,053	115	1,970	133	737
2012	9,582	2,492	1,381	751	2,016	44	2,142	146	610
2011	7,357	1,759	989	701	1,358	374	1,597	128	451
2010	9,168	1,889	1,719	819	1,743	29	2,248	184	537
2009	6,985	960	813	1,319	1,553	43	1,840	223	234
2008	6,309	369	1,084	1,179	1,524	153	1,802	122	76
2007	6,274	186	913	1,251	1,144	754	1,875	151	-
2006	4,187	107	673	797	-	1,039	1,439	132	-
2005	5,617	157	732	1,168	-	1,397	2,010	153	-
2004	5,368	122	1,670	1,274	-	458	1,728	116	-
2003	3,815	76	555	1,129	-	295	1,605	155	-
2002	2,790	177	445	553	-	173	1,368	74	-
2001	803	203	247	5	-	38	288	22	-

## 2. 진정한 현황

[표 3-1-3] 지역별 진정한 현황

(단위 : 건)

구분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22,899	10,056	10,923	10,695	10,645	12,325
서울	20,321	1,347	1,359	1,317	1,721	1,605
부산	5,548	375	427	373	343	354
인천	3,685	257	403	342	302	313
광주	3,776	321	310	255	213	294
대구	4,762	353	379	311	362	380
대전	2,715	200	214	257	132	190
울산	1,207	89	106	160	69	102
경기	16,255	1,187	1,287	1,284	1,272	1,429
강원	2,519	184	184	200	166	205
충북	1,963	139	132	190	133	172
충남	3,056	197	291	395	279	292
세종	158	10	10	23	22	41
전북	3,477	267	282	271	212	232
전남	4,305	416	411	357	268	288
경북	4,979	350	261	342	272	286
경남	3,882	292	303	303	234	303
제주	864	66	97	79	78	121
미등록	39,427	4,006	4,467	4,236	4,567	5,718

[표 3-1-4] 성별 진정한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남	여	미등록
누계	122,899	68,438	18,004	36,457
2017	12,325	5,682	2,275	4,368
2016	10,645	6,410	2,389	1,846
2015	10,695	6,810	2,144	1,741
2014	10,923	6,861	2,145	1,917
2013	10,056	6,062	1,709	2,285

[표 3-1-5] 연령별 진정한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계	122,899	1,391	9,199	17,514	19,519	12,455	5,254	57,567
2017	12,325	202	814	1,529	1,863	1,698	812	5,407
2016	10,645	49	371	815	1,140	1,136	587	6,547
2015	10,695	100	615	1,116	1,356	1,148	442	5,918
2014	10,923	147	635	1,237	1,621	1,274	410	5,599
2013	10,056	143	669	1,124	1,634	1,177	382	4,927

###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표 3-1-6] 헌법상 기본권<sup>35)</sup>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인간의 존엄성 (10조)		평등권 (11조)		신체의 자유 (12조)		형벌불소급 (13조)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직업선택의 자유 (15조)		주거의 자유 (16조)	
누 계	94,194	100.0	46,266	49.1	1,945	2.1	30,318	32.2	40	0.0	357	0.4	309	0.3	144	0.2
2017	9,263	100.0	4,095	44.2	262	2.8	2,853	30.8	4	0.0	41	0.4	30	0.3	16	0.2
2016	8,160	100.0	3,128	38.3	166	2.0	3,253	39.9	1	0.0	21	0.3	22	0.3	17	0.2
2015	8,499	100.0	3,066	36.1	147	1.7	3,671	43.2	4	0.0	28	0.3	32	0.4	8	0.1
2014	8,708	100.0	3,300	37.9	184	2.1	3,674	42.2	9	0.1	23	0.3	32	0.4	14	0.2
2013	7,457	100.0	2,989	40.1	205	2.8	2,863	38.4	1	0.0	22	0.3	24	0.3	18	0.2
2012	6,946	100.0	3,084	44.4	307	4.4	2,251	32.4	9	0.1	42	0.6	22	0.3	12	0.2
2011	5,425	100.0	2,638	48.6	188	3.5	1,835	33.8	1	0.0	12	0.2	8	0.2	6	0.1
2010	6,460	100.0	3,905	60.4	33	0.5	1,746	27.0	1	0.0	8	0.1	8	0.1	5	0.1
2009	5,282	100.0	3,340	63.2	49	0.9	1,271	24.1	2	0.0	16	0.3	18	0.3	6	0.1
2008	4,892	100.0	3,212	65.7	43	0.9	1,060	21.7	2	0.0	14	0.3	15	0.3	3	0.1
2007	5,067	100.0	2,960	58.4	96	1.9	1,279	25.2	1	0.0	13	0.3	30	0.6	16	0.3
2006	3,335	100.0	2,030	60.9	39	1.2	731	21.9	-	0.0	10	0.3	21	0.6	8	0.2
2005	4,199	100.0	2,343	55.8	19	0.5	1,145	27.3	-	0.0	36	0.9	18	0.4	4	0.1
2004	4,627	100.0	3,411	73.7	6	0.1	977	21.1	1	0.0	33	0.7	7	0.2	1	0.0
2003	3,041	100.0	1,685	55.4	57	1.9	867	28.5	2	0.1	22	0.7	12	0.4	3	0.1
2002	2,214	100.0	863	39.0	85	3.8	701	31.7	2	0.1	13	0.6	2	0.1	5	0.2
2001	619	100.0	217	35.1	60	9.7	140	22.6	-	0.0	3	0.5	8	1.3	2	0.3

구 분	사생활의 비밀과자유(17조)		통신의 자유 (18조)		양심의 자유 (19조)		종교의 자유 (20조)		언론의 자유 (21조)		학문예술의 자유 (22조)		기타	
누 계	3,596	3.8	2,820	3.0	189	0.2	251	0.3	631	0.7	116	0.1	1,218	13.1
2017	341	3.7	304	3.3	22	0.2	20	0.2	42	0.5	15	0.2	720	8.8
2016	406	5.0	280	3.4	30	0.4	44	0.5	66	0.8	6	0.1	761	9.0
2015	392	4.6	278	3.3	23	0.3	23	0.3	58	0.7	8	0.1	761	9.0
2014	429	4.9	270	3.1	16	0.2	30	0.3	66	0.8	8	0.1	653	7.5
2013	352	4.7	320	4.3	18	0.2	13	0.2	46	0.6	5	0.1	581	7.8
2012	349	5.0	256	3.7	8	0.1	29	0.4	35	0.5	9	0.1	533	7.7
2011	244	4.5	188	3.5	8	0.2	13	0.2	20	0.4	2	0.0	262	4.8
2010	219	3.4	209	3.2	5	0.1	13	0.2	39	0.6	6	0.1	263	4.1
2009	172	3.3	141	2.7	2	0.0	7	0.1	33	0.6	2	0.0	223	4.2
2008	127	2.6	93	1.9	11	0.2	15	0.3	43	0.9	7	0.1	247	5.0
2007	160	3.2	74	1.5	8	0.2	19	0.4	26	0.5	8	0.2	377	7.4
2006	115	3.4	60	1.8	8	0.2	11	0.3	16	0.5	9	0.3	277	8.3
2005	126	3.0	108	2.6	7	0.2	7	0.2	42	1.0	18	0.4	326	7.8
2004	58	1.3	92	2.0	-	0.0	-	0.0	33	0.7	4	0.1	4	0.1
2003	44	1.4	94	3.1	4	0.1	4	0.1	41	1.3	6	0.2	200	6.6
2002	55	2.5	46	2.1	19	0.9	3	0.1	25	1.1	3	0.1	392	17.7
2001	7	1.1	7	1.1	-	0.0	-	0.0	-	0.0	-	0.0	175	28.3

35)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 찰		경 찰		국정원		특사경		지방 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 기관	
누 계	94,194	100.0	2,873	3.1	18,584	19.7	247	0.3	169	0.2	4,443	4.7	1,149	1.2	75	0.1
2017	9,263	100.0	193	2.1	1,551	16.7	10	0.1	-	-	469	5.1	95	1.0	11	0.1
2016	8,160	100.0	142	1.7	1,482	18.2	9	0.1	-	-	307	3.8	77	0.9	2	0.0
2015	8,499	100.0	144	1.7	1,363	16.0	3	-	-	-	445	5.2	61	0.7	6	0.1
2014	8,708	100.0	190	2.2	1,539	17.7	11	0.1	-	-	387	4.4	83	1.0	3	-
2013	7,457	100.0	157	2.1	1,330	17.9	16	0.2	-	-	343	4.6	74	1.0	6	0.1
2012	6,946	100.0	147	2.1	1,221	17.6	16	0.2	-	-	335	4.8	85	1.2	-	-
2011	5,425	100.0	139	2.6	1,107	20.4	15	0.3	-	-	247	4.6	71	1.3	3	0.1
2010	6,460	100.0	234	3.6	1,582	24.5	17	0.3	8	0.1	294	4.6	156	2.4	14	0.2
2009	5,282	100.0	142	2.7	1,210	22.9	17	0.3	8	0.2	214	4.1	50	0.9	5	0.1
2008	4,892	100.0	172	3.5	1,106	22.6	25	0.5	17	0.3	323	6.6	70	1.4	2	-
2007	5,067	100.0	226	4.5	1,131	22.3	36	0.7	12	0.2	449	8.9	62	1.2	8	0.2
2006	3,335	100.0	136	4.1	797	23.9	12	0.4	4	0.1	177	5.3	56	1.7	2	0.1
2005	4,199	100.0	214	5.1	937	22.3	11	0.3	37	0.9	194	4.6	63	1.5	2	-
2004	4,627	100.0	164	3.5	688	14.9	11	0.2	26	0.6	115	2.5	41	0.9	8	0.2
2003	3,041	100.0	174	5.7	701	23.1	5	0.2	26	0.9	81	2.7	35	1.2	2	0.1
2002	2,214	100.0	194	8.8	705	31.8	15	0.7	31	1.4	26	1.2	16	0.7	-	-
2001	619	100.0	105	17.0	134	21.6	18	2.9	-	-	40	6.5	54	8.7	1	0.2

구 분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군		각급학교		출입국 관리기관		공직유관 단체		기 타	
누 계	7,198	7.6	27,865	29.6	22,819	24.2	2,024	2.2	3,623	3.9	340	0.4	1,244	1.3	1,541	1.6
2017	483	5.2	2,247	24.3	2,607	28.1	279	3.0	666	7.2	82	0.9	290	3.1	280	3.0
2016	315	3.9	1,651	20.2	3,036	37.2	199	2.4	594	7.3	59	0.7	222	2.7	65	0.8
2015	259	3.0	1,715	20.2	3,473	40.9	153	1.8	551	6.5	81	1.0	190	2.2	55	0.6
2014	392	4.5	1,631	18.7	3,464	39.8	182	2.1	497	5.7	18	0.2	230	2.6	81	0.9
2013	315	4.2	1,688	22.6	2,728	36.6	141	1.9	412	5.5	23	0.3	179	2.4	45	0.6
2012	424	6.1	1,731	24.9	2,115	30.5	184	2.7	480	6.9	27	0.4	133	1.9	48	0.7
2011	530	9.8	1,360	25.1	1,555	28.7	132	2.4	199	3.7	40	0.7			27	0.5
2010	485	7.5	1,885	29.2	1,372	21.2	116	1.8	220	3.4	10	0.2			67	1.0
2009	452	8.6	2,027	38.4	490	9.3	96	1.8	4	0.1					567	10.7
2008	307	6.3	1,946	39.8	685	14.0	89	1.8							150	3.1
2007	327	6.5	2,004	39.6	585	11.6	81	1.6							146	2.9
2006	394	11.8	1,427	42.8	255	7.6	65	1.9							10	0.3
2005	525	12.5	1,918	45.7	234	5.6	64	1.5								
2004	1,553	33.6	1,835	39.7	126	2.7	60	1.3								
2003	201	6.6	1,686	55.4	57	1.9	73	2.4								
2002	124	5.6	1,026	46.3	25	1.1	52	2.3								
2001	112	18.1	88	14.2	9	1.5	58	9.4								

## □ 주요 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873	157	190	144	142	193
도·감청 등	6	2	-	1	-	-
압수수색(신체)	57	1	2	1	2	1
집회, 시위	3	-	1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측미통지	41	2	1	2	1	2
임의동행	6	-	-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8	3	2	-	2	3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143	1	5	-	11	9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525	32	44	37	45	45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59	4	2	3	5	2
체포, 구속, 감금	175	13	14	12	7	12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998	54	61	60	44	63
공소권 남용	202	3	7	2	3	4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95	8	11	7	3	6
알권리/정보공개	50	7	3	-	2	5
생명권 침해	9	3	2	2	-	1
압수수색(주거) 등	6	1	4	-	-	-
인터넷	1	-	-	-	-	-
기타	469	23	31	17	17	40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8,584	1,330	1,539	1,363	1,482	1,551
불심검문/임의동행	468	19	23	17	33	23
도·감청 등	35	1	1	2	2	5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471	27	19	19	17	21
집회, 시위	397	20	23	15	47	10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미통지	623	34	53	31	57	5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9	3	12	5	8	7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4,815	348	347	336	335	273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369	246	298	294	308	275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832	61	64	48	64	62
체포, 구속, 감금	1,465	140	182	158	157	178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3,191	196	262	236	244	323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697	82	110	65	80	60
알권리/정보공개	81	4	5	17	8	6
생명권 침해	29	3	4	8	6	6
압수수색(주거) 등	83	14	9	8	14	13
종교의 자유	6	1	-	2	-	1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94	12	8	12	14	8
인터넷	2	1	1	-	-	-
기타	1,807	118	118	90	88	226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024	141	182	153	199	279
불심검문/임의동행	4	-	-	-	-	1
도·감청 등	6	-	-	-	-	-
압수수색(신체)	10	-	-	-	1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3	-	-	-	2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113	8	6	5	7	10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306	17	33	15	14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5	-	2	1	-	1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375	34	31	44	65	87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316	24	25	26	25	35
체포, 구속, 감금	27	2	-	1	4	3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67	4	12	14	13	10
알권리 침해/정보공개	16	1	3	3	-	2
생명권 침해	132	5	7	2	4	5
부당한 제도 및 처분	348	19	46	29	42	82
압수수색(주거) 등	14	-	-	-	7	4
종교의 자유	13	1	2	2	2	3
인터넷	3	-	-	1	-	-
영창관련 인권침해	47	9	6	2	4	11
기타	219	17	9	8	9	10

[표 3-1-11] 구금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7,865	1,688	1,631	1,715	1,651	2,247
건강/의료	6,626	445	382	456	436	671
외부교통 권리제한	2,501	104	75	96	111	117
조사/징벌/계구	4,046	238	281	274	225	283
폭행/가혹행위	2,526	161	166	155	122	146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6,481	576	507	464	500	671
시설/환경	3,096	92	81	130	109	199
기타	2,589	72	139	140	148	160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2,819	2,728	3,464	3,473	3,036	2,607
불법/강제 수용	12,256	1,454	2,051	2,031	1,661	1,187
폭행/가혹행위	2,694	373	362	301	288	242
외부교통권 제한	1,820	270	256	256	238	213
의료조치 미흡	1,209	118	183	182	197	171
강제노동	320	52	38	37	32	33
인격권 침해	1,181	116	190	161	168	238
시설/ 환경	759	93	81	74	110	102
퇴원요청	1,390	116	137	260	195	245
기타	1,190	136	166	171	147	176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40	23	18	81	59	82
욕설/반말	13	-	1	6	2	3
폭행/가혹행위	30	2	3	13	3	3
출입국 제한	38	1	2	12	6	4
사생활 비밀 침해	6	-	2	2	1	-
알권리 침해	3	-	-	1	2	-
적법절차 준수 위반	17	1	-	6	1	8
위법/부당한 처분	87	18	3	16	9	20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08	1	-	11	29	39
기타	38	-	7	14	6	5

[표 3-1-14] 각급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23	412	497	551	594	666
인격권 침해	1,111	170	230	213	31	6
체벌	218	32	19	29	26	36
징계부당	193	26	23	23	25	63
학교폭력	435	56	54	68	46	59
모욕적 언행	375	-	-	-	146	229
두발 등 용모제한	55	-	-	-	27	28
소지품·휴대폰·사생활	42	-	-	-	25	17
학습강요	19	-	-	-	18	1
기숙사	13	-	-	-	3	10
기타	1,162	128	171	218	247	217

####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검찰		경찰		구급시설		군대		기타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보호시설	
누 계	26,439	100.0	197	0.8	605	2.3	285	1.1	455	1.7	4,170	15.8	3,076	11.6	56	0.2
2017	3,029	100.0	30	1.0	37	1.2	32	1.1	272	9.0	328	10.8	214	7.1	5	0.2
2016	2,431	100.0	16	0.7	35	1.4	12	0.5	29	1.2	260	10.7	205	8.4	11	0.5
2015	2,188	100.0	6	0.3	42	1.9	14	0.6	18	0.8	261	11.9	219	10.0	4	0.2
2014	2,197	100.0	9	0.4	41	1.9	16	0.7	8	0.4	264	12.0	211	9.6	10	0.5
2013	2,496	100.0	9	0.4	44	1.7	15	0.6	12	0.5	357	14.3	198	8.0	4	0.2
2012	2,549	100.0	1	-	41	1.6	23	0.9	10	0.4	332	13.0	455	17.9	4	0.2
2011	1,803	100.0	7	0.4	38	2.1	15	0.8	19	1.1	223	12.4	283	15.7	4	0.2
2010	2,681	100.0	4	0.1	109	4.1	17	0.6	14	0.5	538	20.1	450	16.8	1	-
2009	1,685	100.0	12	0.7	56	3.3	16	0.9	11	0.7	269	16.0	184	10.9	6	0.4
2008	1,380	100.0	21	1.5	27	2.0	15	1.1	13	0.9	223	16.2	184	13.3	1	0.1
2007	1,159	100.0	14	1.2	23	2.0	2	0.2	25	2.2	227	19.6	140	12.1	2	0.2
2006	824	100.0	6	0.7	21	2.5	6	0.7	11	1.3	224	27.2	124	15.0	4	0.5
2005	1,081	100.0	11	1.0	50	4.6	47	4.3	10	0.9	398	36.8	126	11.7	1	0.1
2004	389	100.0	14	3.6	19	4.9	27	6.9	1	0.3	125	32.1	39	10.0	-	-
2003	358	100.0	26	7.3	5	1.4	26	7.3	-	-	81	22.6	23	6.4	-	-
2002	136	100.0	11	8.1	11	8.1	1	0.7	2	1.5	41	30.1	15	11.0	-	-
2001	53	100.0	1	1.9	5	9.4	1	1.9	-	-	20	37.7	3	5.7	-	-

구 분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누 계	3,477	13.2	1,701	6.4	5,938	22.5	1,791	6.8	511	1.9	2,051	7.8	115	0.4	2,011	7.6
2017	376	12.4	209	6.9	472	15.6	203	6.7	40	1.3	261	8.6	9	0.3	541	17.9
2016	737	30.3	84	3.5	443	18.2	167	6.9	36	1.5	167	6.9	14	0.6	215	8.8
2015	294	13.4	89	4.1	664	30.3	170	7.8	43	2.0	203	9.3	12	0.5	149	6.8
2014	247	11.2	80	3.6	491	22.3	291	13.2	58	2.6	237	10.8	19	0.9	215	9.8
2013	253	10.1	88	3.5	509	20.4	251	10.1	90	3.6	445	17.8	18	0.7	203	8.1
2012	265	10.4	192	7.5	688	27.0	159	6.2	50	2.0	141	5.5	24	0.9	164	6.4
2011	167	9.3	120	6.7	461	25.6	153	8.5	40	2.2	160	8.9	19	1.1	94	5.2
2010	200	7.5	340	12.7	554	20.7	119	4.4	59	2.2	181	6.8			95	3.5
2009	224	13.3	103	6.1	483	28.7	76	4.5	22	1.3	119	7.1			104	6.2
2008	191	13.8	89	6.4	323	23.4	72	5.2	21	1.5	77	5.6			123	8.9
2007	198	17.1	67	5.8	288	24.8	67	5.8	20	1.7	22	1.9			64	5.5
2006	120	14.6	59	7.2	176	21.4	24	2.9	6	0.7	13	1.6			30	3.6
2005	107	9.9	79	7.3	202	18.7	15	1.4	18	1.7	10	0.9			7	0.6
2004	46	11.8	40	10.3	58	14.9	8	2.1	5	1.3	4	1.0			3	0.8
2003	40	11.2	47	13.1	96	26.8	7	2.0	1	0.3	3	0.8			3	0.8
2002	13	9.6	8	5.9	23	16.9	6	4.4	1	0.7	2	1.5			2	1.5
2001	-	-	4	7.5	8	15.1	4	7.5	-	-	6	11.3			1	1.9

[표 3-1-16] 사유<sup>36)</sup>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신체조건		혼인 여부	
누 계	26,439	100.0	865	3.3	187	0.7	12,106	45.8	1,611	6.1	2,105	8.0	152	0.6	400	1.5	17	0.1	338	1.3	131	0.5
2017	3,029	100.0	126	4.2	25	0.8	1,113	36.7	107	3.5	199	6.6	17	0.6	25	0.8	2	0.1	34	1.1	19	0.6
2016	2,431	100.0	96	4.0	15	0.6	1,511	62.2	101	4.2	89	3.7	8	0.3	28	1.2	-	-	20	0.8	16	0.7
2015	2,188	100.0	65	3.0	6	0.3	1,147	52.4	98	4.5	117	5.3	8	0.4	23	1.1	-	-	23	1.1	10	0.5
2014	2,197	100.0	64	2.9	15	0.7	1,139	51.8	103	4.7	158	7.2	19	0.9	48	2.2	3	0.1	21	1.0	6	0.3
2013	2,496	100.0	64	2.6	11	0.4	1,312	52.6	142	5.7	146	5.9	13	0.5	35	1.4	-	0.0	31	1.2	5	0.2
2012	2,549	100.0	45	1.8	12	0.5	1,340	52.6	166	6.5	185	7.3	6	0.2	9	0.4	1	0.0	40	1.6	6	0.2
2011	1,803	100.0	35	1.9	10	0.6	886	49.1	146	8.1	127	7.0	10	0.6	27	1.5	1	0.1	19	1.1	5	0.3
2010	2,681	100.0	45	1.7	14	0.5	1,695	63.2	196	7.3	81	3.0	7	0.3	27	1.0	3	0.1	24	0.9	5	0.2
2009	1,685	100.0	83	4.9	14	0.8	725	43.0	138	8.2	91	5.4	5	0.3	16	0.9	3	0.2	23	1.4	7	0.4
2008	1,380	100.0	42	3.0	13	0.9	640	46.4	62	4.5	103	7.5	4	0.3	28	2.0	2	0.1	15	1.1	5	0.4
2007	1,159	100.0	50	4.3	14	1.2	256	22.1	108	9.3	117	10.1	9	0.8	38	3.3	1	0.1	20	1.7	3	0.3
2006	824	100.0	28	3.4	8	1.0	116	14.1	69	8.4	208	25.2	10	1.2	28	3.4	-	-	11	1.3	22	2.7
2005	1,081	100.0	53	4.9	11	1.0	121	11.2	87	8.0	297	27.5	23	2.1	19	1.8	-	-	45	4.2	9	0.8
2004	389	100.0	24	6.2	8	2.1	54	13.9	57	14.7	64	16.5	6	1.5	10	2.6	-	-	6	1.5	7	1.8
2003	358	100.0	33	9.2	5	1.4	18	5.0	24	6.7	75	20.9	2	0.6	19	5.3	1	0.3	4	1.1	4	1.1
2002	136	100.0	10	7.4	4	2.9	20	14.7	6	4.4	31	22.8	2	1.5	12	8.8	-	-	2	1.5	2	1.5
2001	53	100.0	2	3.8	2	3.8	13	24.5	1	1.9	17	32.1	3	5.7	8	15.1	-	-	-	-	-	-

구 분	임신/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 력		학벌/학력		성희롱		기타	
누 계	263	1.0	198	0.8	111	0.4	16	0.1	51	0.2	212	0.8	342	1.3	427	1.6	627	2.4	2,484	9.4	3,796	14.4
2017	38	1.3	29	1.0	4	0.1	-	-	7	0.2	13	0.4	259	8.6	33	1.1	42	1.4	294	9.7	643	21.2
2016	8	0.3	19	0.8	8	0.3	1	-	8	0.3	10	0.4	5	0.2	32	1.3	23	1.0	205	8.4	228	9.4
2015	21	1.0	12	0.5	10	0.5	4	0.2	2	0.1	10	0.5	11	0.5	17	0.8	23	1.1	203	9.3	378	17.3
2014	14	0.6	15	0.7	18	0.8	2	0.1	-	-	13	0.6	11	0.5	28	1.3	36	1.6	235	10.7	249	11.3
2013	18	0.7	23	0.9	18	0.7	1	-	4	0.2	19	0.8	8	0.3	39	1.6	124	5.0	240	9.6	243	9.7
2012	27	1.1	8	0.3	1	-	1	-	2	0.1	20	0.8	15	0.6	34	1.3	47	1.8	228	8.9	356	14.0
2011	19	1.1	17	0.9	4	0.2	-	-	1	0.1	17	0.9	3	0.2	30	1.7	52	2.9	216	12.0	178	9.9
2010	39	1.5	8	0.3	12	0.5	4	0.2	1	-	13	0.5	6	0.2	41	1.5	40	1.5	210	7.8	210	7.8
2009	17	1.0	14	0.8	22	1.3	-	-	3	0.2	10	0.6	2	0.1	39	2.3	77	4.6	166	9.9	230	13.6
2008	14	1.0	10	0.7	7	0.5	-	-	3	0.2	16	1.2	3	0.2	19	1.4	23	1.7	151	10.9	220	15.9
2007	15	1.3	13	1.1	4	0.3	1	0.1	2	0.2	18	1.6	3	0.3	31	2.7	28	2.4	165	14.2	263	22.7
2006	9	1.1	8	1.0	1	0.1	-	-	2	0.2	13	1.6	4	0.5	30	3.6	24	2.9	107	13.0	126	15.3
2005	5	0.5	15	1.4	1	0.1	1	0.1	5	0.5	23	2.1	5	0.5	21	1.9	48	4.4	60	5.6	232	21.5
2004	4	1.0	4	1.0	-	-	-	-	-	-	7	1.8	1	0.3	7	1.8	12	3.1	1	0.3	117	30.1
2003	15	4.2	2	0.6	-	-	-	-	7	2.0	3	0.8	2	0.6	16	4.5	28	7.8	2	0.6	98	27.4
2002	-	-	-	-	1	0.7	-	-	3	2.2	6	4.4	3	2.2	8	5.9	-	-	1	0.7	25	18.4
2001	-	-	1	1.9	-	-	1	1.9	1	1.9	1	1.9	1	1.9	2	3.8	-	-	-	-	-	-

36) 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사유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성희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17] 영역<sup>37)</sup>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금 용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누 계	26,439	7,691	1,290	1,625	416	123	285	1,040	289	6	235	235	732	1,415
2017	3,029	742	74	176	37	18	37	135	32	-	2	34	71	126
2016	2,431	489	65	93	26	15	13	91	26	-	6	14	44	96
2015	2,188	595	58	123	34	14	16	141	27	-	9	19	50	104
2014	2,197	575	65	123	47	14	27	72	41	1	14	15	70	86
2013	2,496	617	56	158	41	9	15	46	27	2	30	11	53	169
2012	2,549	773	125	138	27	11	21	112	35	1	58	23	44	178
2011	1,803	480	75	114	28	7	14	57	16	-	14	16	49	90
2010	2,681	578	118	112	33	5	16	66	8	1	32	18	43	126
2009	1,685	532	162	91	15	7	12	45	13	-	27	21	41	98
2008	1,380	463	99	60	30	8	15	67	17	-	4	12	50	101
2007	1,159	499	124	98	27	6	20	51	13	1	17	12	58	72
2006	824	387	101	97	21	2	14	52	8	-	13	18	26	35
2005	1,081	503	90	148	17	6	36	50	12	-	3	10	45	86
2004	389	175	51	22	18	-	9	12	4	-	3	5	17	34
2003	358	209	21	54	14	-	11	26	4	-	3	6	61	9
2002	136	55	6	14	1	1	7	11	3	-	-	-	8	4
2001	53	19	-	4	-	-	2	6	3	-	-	1	2	1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훈련 기관	
누 계	9,973	3,674	4,382	878	738	269	32	1,579	1,493	86	7,196
2017	902	387	271	104	109	27	4	125	118	7	1,260
2016	863	326	350	88	55	40	4	256	249	7	823
2015	951	299	489	104	41	16	2	92	89	3	550
2014	890	401	287	101	81	18	2	109	106	3	623
2013	969	377	449	40	83	20	-	106	98	8	804
2012	1,094	473	420	56	107	37	1	179	170	9	503
2011	768	440	180	64	57	23	4	82	76	6	473
2010	1,467	184	1,146	75	40	21	1	106	96	10	530
2009	659	292	201	84	61	18	3	122	116	6	372
2008	560	211	144	116	62	22	5	103	99	4	254
2007	290	132	104	18	22	14	-	103	97	6	267
2006	165	50	91	15	3	6	-	87	83	4	185
2005	270	87	151	9	13	5	5	56	51	5	252
2004	54	10	40	2	1	1	-	26	24	2	134
2003	33	2	29	-	1	-	1	17	14	3	99
2002	27	3	20	1	2	1	-	10	7	3	44
2001	11	-	10	1	-	-	-	0	-	-	23

37) 법 제2조(정의)제3호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표 3-1-18] 2017년 사유 및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급품	자금 용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합 계	3,029	742	74	176	37	18	37	135	32	-	2	34	71	126
성별	126	64	12	31	4	-	1	3	1	-	-	5	2	5
종교	25	15	4	4	-	1	-	-	-	-	-	-	1	5
장애	1,113	84	5	14	14	6	3	12	2	-	-	6	15	7
나이	107	75	22	32	4	-	3	1	-	-	1	3	7	2
사회적 신분	199	159	2	7	2	3	5	64	13	-	1	7	12	43
출신지역	17	8	-	6	-	-	-	1	1	-	-	-	-	-
출신국가	25	5	-	1	-	1	-	2	-	-	-	-	1	-
출신민족	2	-	-	-	-	-	-	-	-	-	-	-	-	-
용모/신체조건	34	27	6	14	-	-	-	-	-	-	-	1	5	1
혼인여부	19	13	4	5	-	-	-	-	-	-	-	-	4	-
임신/출산	38	34	-	5	5	1	2	1	-	-	-	1	10	9
가족상황	29	14	-	6	1	2	-	1	2	-	-	-	1	1
인종	4	0	-	-	-	-	-	-	-	-	-	-	-	-
피부색	0	0	-	-	-	-	-	-	-	-	-	-	-	-
사상/정치적의견	7	5	-	3	-	-	-	-	-	-	-	-	1	1
전과	13	8	-	3	-	-	-	-	3	-	-	-	2	-
성적지향	259	-	-	-	-	-	-	-	-	-	-	-	-	-
병력	33	21	4	7	4	-	-	-	-	-	-	2	-	4
학벌/학력	42	22	3	11	-	3	1	2	1	-	-	-	-	1
성희롱	294	3	-	-	-	-	-	-	-	-	-	-	-	3
기타	643	185	12	27	3	1	22	48	9	-	-	9	10	44

(단위 : 건)

구 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시설	직업훈련 기관	
합계	902	387	271	104	109	27	4	125	118	7	1,260
성별	30	5	16	3	5	1	-	10	9	1	22
종교	3	-	2	-	1	-	-	1	1	-	6
장애	686	331	161	97	75	20	2	89	85	4	254
나이	22	6	9	1	6	-	-	4	3	1	6
사회적신분	24	9	11	-	3	1	-	3	3	-	13
출신지역	3	2	-	-	1	-	-	-	-	-	6
출신국가	15	6	6	1	1	1	-	-	-	-	5
출신민족	-	-	-	-	-	-	-	-	-	-	2
용모/신체조건	5	2	1	-	2	-	-	1	1	-	1
혼인여부	4	2	2	-	-	-	-	-	-	-	2
임신/출산	4	1	1	-	2	-	-	-	-	-	-
가족상황	12	4	7	-	1	-	-	-	-	-	3
인종	3	1	1	-	1	-	-	-	-	-	1
피부색	-	-	-	-	-	-	-	-	-	-	-
사상/정치적의견	2	-	1	-	1	-	-	-	-	-	-
전과	3	-	3	-	-	-	-	-	-	-	2
성적지향	9	2	5	-	1	-	1	1	1	-	249
병력	5	-	3	-	1	-	1	2	2	-	5
학벌/학력	7	5	2	-	-	-	-	4	4	-	9
성희롱	-	-	-	-	-	-	-	2	1	1	289
기타	65	11	40	2	8	4	-	8	8	-	385

## 5. 성희롱<sup>38)</sup> 진정 접수 현황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검찰	경찰	구급시설	군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누계	2,484	17	31	15	21	76	106	10	304	97	732	419	72	392	21	171
2017	294	1	1	-	-	4	8	1	40	18	44	58	1	66	2	50
2016	205	-	1	-	3	6	10	-	29	5	35	43	4	45	-	24
2015	203	1	7	-	3	21	13	3	20	4	48	27	7	45	1	3
2014	235	1	2	1	1	7	12	1	36	5	67	45	6	37	1	13
2013	240	-	2	1	5	4	9	-	25	6	42	37	18	69	4	18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자 용 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소계	용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수단	주거 시설	토지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누계	2,484	428	30	11	6	2	-	1	2	-	1	14	28	333	23	11	1	1	8	2	-	21	14	7	2,012
2017	294	3	-	-	-	-	-	-	-	-	-	-	-	3	-	-	-	-	-	-	-	2	1	1	289
2016	205	7	-	-	-	-	-	-	-	-	-	-	1	6	-	-	-	-	-	-	-	2	-	2	196
2015	203	12	-	-	-	1	-	-	-	-	-	5	2	4	-	-	-	-	-	-	-	-	-	-	191
2014	235	13	-	1	2	-	-	-	-	-	-	1	5	4	3	2	-	-	1	-	-	-	-	-	219
2013	240	14	-	1	-	-	-	-	2	-	-	-	1	10	2	-	-	-	2	-	-	-	-	-	224

38) 법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여 성	남 성	미등록
누 계	피해자	2,484	1,117	170	1,197
	피진정인	2,484	116	1,268	1,100
2017	피해자	294	174	28	92
	피진정인	294	26	138	130
2016	피해자	205	131	21	53
	피진정인	205	23	143	39
2015	피해자	203	79	11	113
	피진정인	203	15	182	6
2014	피해자	235	144	22	69
	피진정인	235	19	202	14
2013	피해자	240	169	30	41
	피진정인	240	19	200	21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등록
누 계	2,484	52	423	366	244	92	24	1,283
2017	294	11	68	67	38	14	2	94
2016	205	4	40	45	33	14	3	66
2015	203	1	43	24	17	6	2	110
2014	235	4	55	53	31	17	5	70
2013	240	10	67	67	38	14	4	40

##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sup>39)</sup>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접수건수	11,453	1,312	1,139	1,147	1,511	1,113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누 계	11,453	3,714	2,667	838	1,235	1,394	85	476	1,044
2017	1,113	313	371	97	98	102	12	52	68
2016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2015	1,147	334	440	93	101	101	5	30	43
2014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2013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표 3-1-25] 영역별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11,453	713	1,115	6,759	405	167	1,265	1,029
2017	1,113	81	90	677	27	4	91	143
2016	1,511	56	536	643	46	16	88	126
2015	1,147	69	55	733	38	-	121	131
2014	1,139	94	66	677	42	19	123	118
2013	1,312	75	45	706	30	41	303	112

3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한다.

##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표 3-1-26] 기타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사인간침해		회사		기타단체		재산권		법령제도 개선		입법/재판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2,266	100.0	696	30.7	16	0.7	6	0.3	77	3.4	653	28.8	7	0.3	811	35.8
2017	33	100.0	10	30.3	1	3.0	-	-	-	-	13	39.4	-	-	9	27.3
2016	54	100.0	17	31.5	3	5.6	2	3.7	6	11.1	17	31.5	-	-	9	16.7
2015	8	100.0	4	50.0	2	25.0	-	-	-	-	-	-	-	-	2	25.0
2014	18	100.0	10	55.5	2	11.1	-	-	2	11.1	1	5.6	1	5.6	2	11.1
2013	103	100.0	92	89.3	1	1.0	-	-	-	-	1	1.0	1	1.0	8	7.7
2012	87	100.0	63	72.4	2	2.3	2	2.3	2	2.3	-	0.0	2	2.3	16	18.4
2011	129	100.0	10	7.8	5	3.9	2	1.6	2	1.6	6	4.7	3	2.3	101	78.3
2010	27	100.0	17	63.0	-	-	-	-	-	-	3	11.1	-	-	7	25.9
2009	18	100.0	11	61.1	-	-	-	-	-	-	2	11.1	-	-	5	27.8
2008	37	100.0	27	73.0	-	-	-	-	-	-	4	10.8	-	-	6	16.2
2007	48	100.0	41	85.4	-	-	-	-	-	-	1	2.1	-	-	6	12.5
2006	28	100.0	21	75.0	-	-	-	-	1	3.6	4	14.3	-	-	2	7.1
2005	337	100.0	61	18.1	-	-	-	-	6	1.8	86	25.5	-	-	184	54.6
2004	352	100.0	73	20.7	-	-	-	-	6	1.7	151	42.9	-	-	122	34.7
2003	416	100.0	57	13.7	-	-	-	-	12	2.9	188	45.2	-	-	159	38.2
2002	440	100.0	114	25.9	-	-	-	-	23	5.2	165	37.5	-	-	138	31.4
2001	131	100.0	68	51.9	-	-	-	-	17	13.0	11	8.4	-	-	35	26.7

#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표 3-2-1-1] 진정 처리결과<sup>40)</sup>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계	118,908	6,409	38	5	64	3,623	119	133	19	10	2,396	2	112,163	75,210	1,460	35,075	418	336
2017	10,999	473	4	-	19	343	5	14	-	-	88	-	10,505	7,396	104	3,005	-	21
2016	10,868	447	3	-	18	238	18	11	1	-	158	-	10,390	7,129	95	3,166	-	31
2015	10,894	495	4	-	1	165	4	8	-	-	313	-	10,267	6,766	87	3,414	-	132
2014	10,331	491	3	-	1	138	20	4	1	-	324	-	9,773	6,467	56	3,250	-	67
2013	10,427	576	-	-	2	214	2	3	2	-	353	-	9,812	6,291	29	3,492	-	39
2012	9,580	480	3	-	2	325	-	3	2	1	144	-	9,054	5,790	24	3,240	-	46 <sup>41)</sup>
2011	7,085	532	4	-	2	317	7	4	2	-	196	-	6,553	3,843	40	2,648	22	-
2010	8,392	538	3	-	1	301	6	3	1	1	222	-	7,854	5,157	153	2,457	87	-
2009	6,788	534	2	-	2	313	3	5	-	1	208	-	6,254	3,868	88	2,226	72	-
2008	6,466	427	-	-	2	301	12	32	1	2	75	2	6,039	3,977	113	1,884	65	-
2007	6,064	392	1	-	3	259	12	17	2	-	98	-	5,672	4,105	138	1,387	42	-
2006	4,206	355	-	-	10	279	17	2	1	-	46	-	3,851	2,622	81	1,122	26	-
2005	5,350	317	2	-	-	217	4	6	2	1	85	-	5,033	3,376	155	1,452	50	-
2004	5,804	181	2	-	1	110	4	2	4	-	58	-	5,623	4,028	154	1,387	54	-
2003	3,797	130	5	2	-	88	4	3	-	2	26	-	3,667	2,766	116	785	-	-
2002	1,856	40	1	3	-	15	1	16	-	2	2	-	1,816	1,629	27	160	-	-
2001	1	1	1	-	-	-	-	-	-	-	-	-	-	-	-	-	-	-

40)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제1항 및 제2항, 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법 제40조(합의의 권고),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2011.12.8. 폐지), 제26조(합의)(이하 같다)

4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22조의2 제4항(2011.12.8. 신설)에 의거 2012년 통계작성 시부터 조사증지를 종결건수로 보지 않는다(이하 같다).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sup>42)</sup>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계	35,075	100.0	14,750	42.1	14,345	40.9	5,980	17.0
2017	3,005	100.0	1,326	44.1	1,196	39.8	483	16.1
2016	3,166	100.0	1,551	49.0	1,119	35.4	496	15.7
2015	3,414	100.0	1,563	45.8	1,379	40.4	472	13.8
2014	3,250	100.0	1,357	41.8	1,398	43.0	495	15.2
2013	3,492	100.0	1,363	39.0	1,394	39.9	735	21.0
2012	3,240	100.0	1,223	37.7	1,247	38.5	770	23.8
2011	2,648	100.0	1,036	39.1	987	37.3	625	23.6
2010	2,457	100.0	994	40.5	1,042	42.4	421	17.1
2009	2,226	100.0	856	38.5	977	43.9	393	17.7
2008	1,884	100.0	739	39.2	834	44.3	311	16.5
2007	1,387	100.0	588	42.4	576	41.5	223	16.1
2006	1,122	100.0	399	35.6	581	51.8	142	12.7
2005	1,452	100.0	634	43.7	645	44.4	173	11.9
2004	1,387	100.0	651	46.9	593	42.8	143	10.3
2003	785	100.0	386	49.2	328	41.8	71	9.0
2002	160	100.0	84	52.5	49	30.6	27	16.9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법 제32조제1항 <sup>43)</sup>												법 제32조 제3항 <sup>44)</sup>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계	75,210	100.0	12,022	16.0	1,244	1.7	1,559	2.1	2,386	3.2	4,218	5.6	140	0.2	1,889	2.5	50,478	67.1	800	1.1	312	0.4	162	0.2
2017	7,396	100.0	1,190	16.1	49	0.7	179	2.4	190	2.6	269	3.6	13	0.2	208	2.8	5,198	70.3	63	0.9	3	0.0	34	0.5
2016	7,129	100.0	797	11.2	57	0.8	132	1.9	117	1.6	197	2.8	20	0.3	107	1.5	5,610	78.7	64	0.9	3	0.0	25	0.4
2015	6,766	100.0	753	11.1	39	0.6	155	2.3	133	2.0	289	4.3	26	0.4	116	1.7	5,176	76.5	56	0.8	4	0.1	19	0.3
2014	6,467	100.0	831	12.8	52	0.8	128	2.0	167	2.6	213	3.3	7	0.1	110	1.7	4,865	75.2	56	0.9	3	0.0	35	0.5
2013	6,291	100.0	1,113	17.7	78	1.2	163	2.6	125	2.0	264	4.2	6	0.1	222	3.5	4,235	67.3	79	1.3	2	0.0	4	0.1
2012	5,790	100.0	897	15.5	92	1.6	137	2.4	134	2.3	265	4.6	19	0.3	201	3.5	3,991	68.9	47	0.8	4	0.1	3	0.1
2011	3,843	100.0	548	14.3	83	2.2	82	2.1	108	2.8	169	4.4	6	0.2	102	2.7	2,684	69.8	58	1.5	3	0.1	-	0.0
2010	5,157	100.0	802	15.6	85	1.6	114	2.2	189	3.7	267	5.2	6	0.1	172	3.3	3,433	66.6	58	1.1	29	0.6	2	0.0
2009	3,868	100.0	475	12.3	65	1.7	79	2.0	117	3.0	231	6.0	7	0.2	96	2.5	2,736	70.7	54	1.4	2	0.1	6	0.2
2008	3,977	100.0	643	16.2	97	2.4	96	2.4	119	3.0	239	6.0	13	0.3	150	3.8	2,556	64.3	43	1.1	19	0.5	2	0.1
2007	4,105	100.0	536	13.1	118	2.9	79	1.9	148	3.6	287	7.0	7	0.2	184	4.5	2,658	64.8	58	1.4	13	0.3	17	0.4
2006	2,622	100.0	345	13.2	73	2.8	50	1.9	81	3.1	215	8.2	1	0.0	80	3.1	1,706	65.1	52	2.0	8	0.3	11	0.4
2005	3,376	100.0	551	16.3	117	3.5	66	2.0	165	4.9	352	10.4	3	0.1	106	3.1	1,915	56.7	79	2.3	19	0.6	3	0.1
2004	4,028	100.0	1,712	42.5	41	1.0	38	0.9	157	3.9	298	7.4	1	0.0	32	0.8	1,709	42.4	22	0.6	18	0.5	-	0.0
2003	2,766	100.0	324	11.7	150	5.4	44	1.6	255	9.2	337	12.2	4	0.1	1	0.0	1,553	56.2	10	0.4	87	3.2	1	0.0
2002	1,629	100.0	505	31.0	48	2.9	17	1.0	181	11.1	326	20.0	1	0.1	2	0.1	453	27.8	1	0.1	95	5.8	-	0.0

42)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단위 : 건, 일)

구 분	종결						조사중지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일수	중지건수	평균소요일수
누계	118,572	107.5	6,410	176.1	112,163	103.6	336	433.5
2017	10,978	96.8	473	211.4	1,050	91.6	21	243.3
2016	10,837	106.7	447	186.7	10,390	103.2	31	133.2
2015	10,762	106.3	495	128.1	10,267	105.3	132	860.5
2014	10,264	87.9	491	107.6	9,773	86.9	67	135.1
2013	10,388	95.9	576	122.9	9,812	94.3	39	147.8
2012	9,534	135.0	480	259.0	9,054	128.4	46	174.5
2011	7,085	117.4	532	189.8	6,553	111.5		
2010	8,392	85.7	538	131.1	7,854	82.6		
2009	6,788	97.1	534	128.1	6,254	94.5		
2008	6,466	104.1	427	207.1	6,039	96.8		
2007	6,064	89.9	392	212.8	5,672	81.4		
2006	4,206	122.5	355	200.8	3,851	115.3		
2005	5,350	110.0	317	202.9	5,033	104.1		
2004	5,804	124.0	181	269.2	5,623	119.3		
2003	3,797	180.1	130	256.5	3,667	177.4		
2002	1,856	162.5	40	106.3	1,816	163.7		
2001	1	31.0	1	31.0	-	-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4항(2011.12.8. 신설)에 의거 2012년도부터 조사중지 건은 종결건수 합계에서 제외하여 평균소요일수 계산

※ 2011년도 이전의 경우 조사중지 사건수를 미인용 종결건수에 포함하여 소요일수 계산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 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44)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91,643	4,204	35	5	15	2,232	107	108	19	10	1,671	2	87,253	58,117	1,310	27,490	336	186	
2017	8,576	281	4	-	4	204	4	6	-	-	59	-	8,274	5,932	96	2,246		21	
2016	8,424	330	2	-	9	172	17	7	1	-	122	-	8,063	5,424	82	2,557		31	
2015	8,795	418	4	-	-	130	4	3	-	-	277	-	8,325	5,416	79	2,830		52	
2014	8,093	329	3	-	-	76	18	2	1	-	229	-	7,724	5,180	48	2,496		40	
2013	7,450	360	-	-	-	113	1	2	2	-	242	-	7,072	4,542	18	2,512		18	
2012	6,931	264	2	-	-	155	-	1	2	1	103	-	6,643	4,391	22	2,230		24	
2011	5,148	260	3	-	1	130	3	4	2	-	117	-	4,888	2,935	35	1,908	10		
2010	6,258	331	3	-	-	198	3	3	1	1	122	-	5,927	3,907	130	1,831	59		
2009	5,108	365	2	-	1	235	3	5	-	1	118	-	4,743	2,974	78	1,637	54		
2008	5,288	308	-	-	-	213	12	30	1	2	48	2	4,980	3,177	99	1,644	60		
2007	4,757	239	1	-	-	147	12	16	2	-	61	-	4,518	3,152	116	1,215	35		
2006	3,250	207	-	-	-	164	17	2	1	-	23	-	3,043	2,019	70	933	21		
2005	4,132	244	2	-	-	156	4	6	2	1	73	-	3,888	2,378	147	1,318	45		
2004	4,931	145	2	-	-	79	4	2	4	-	54	-	4,786	3,306	148	1,280	52		
2003	3,137	94	5	2	-	55	4	3	-	2	23	-	3,043	2,210	116	717	-		
2002	1,364	28	1	3	-	5	1	16	-	2	-	-	1,336	1,174	26	136	-		
2001	1	1	1	-	-	-	-	-	-	-	-	-	-	-	-	-	-	-	

[표 3-2-2-2] 2017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중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8,576	281	4	4	204	4	6	-	59	8,274	5,932	96	2,246	21
검찰	153	5	-	-	5	-	-	-	-	146	107	1	38	2
경찰	1,239	35	-	-	22	-	-	-	13	1,191	714	34	443	13
국정원	8	-	-	-	-	-	-	-	-	8	8	-	-	-
지방자치단체	413	14	-	1	11	-	-	-	2	399	278	12	109	-
사법기관	72	-	-	-	-	-	-	-	-	72	67	-	5	-
입법기관	9	-	-	-	-	-	-	-	-	9	4	-	5	-
기타 국가기관	451	15	-	-	14	-	-	-	1	436	329	10	97	-
구금시설	2,202	9	-	-	9	-	-	-	-	2,193	1,338	16	839	-
다수인보호시설	2,652	101	4	2	61	4	5	-	25	2,545	2,061	3	481	6
군	237	22	-	-	9	-	1	-	12	215	186	5	24	-
각급학교	715	69	-	-	64	-	-	-	5	646	516	8	122	-
출입국관리기관	51	-	-	-	-	-	-	-	-	51	39	-	12	-
공적유관단체	255	10	-	1	8	-	-	-	1	245	180	5	60	-
기타	119	1	-	-	1	-	-	-	-	118	105	2	11	-

[표 3-2-2-3] 2017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중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8,576	281	4	4	204	4	6	-	59	8,274	5,932	96	2,246	21
인간의존엄성 (10조)	3,744	121	1	3	87	-	2	-	28	3,617	2,493	53	1,071	6
평등권 (11조)	232	3	-	-	1	-	-	-	2	227	173	5	49	2
신체의자유 (12조)	2,777	86	2	1	54	4	4	-	21	2,681	1,943	11	727	10
형벌불소급 (13조)	4	1	-	-	-	-	-	-	1	3	1	-	2	-
거주이전의자유 (14조)	31	4	1	-	2	-	-	-	1	27	23	-	4	-
직업선택의자유 (15조)	27	1	-	-	1	-	-	-	-	26	24	-	2	-
주거의자유 (16조)	20	3	-	-	3	-	-	-	-	17	9	-	8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17조)	320	30	-	-	27	-	-	-	3	290	179	3	108	-
통신의자유 (18조)	293	11	-	-	9	-	-	-	2	279	196	1	82	3
양심의자유 (19조)	25	4	-	-	3	-	-	-	1	21	10	-	11	-
종교의자유 (20조)	43	-	-	-	-	-	-	-	-	43	35	-	8	-
언론의자유 (21조)	47	7	-	-	7	-	-	-	-	40	27	-	13	-
학문예술의자유 (22조)	11	-	-	-	-	-	-	-	-	11	9	-	2	-
기타	1,002	10	-	-	10	-	-	-	-	992	810	23	159	-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건수	100.0	건수	100.0	건수	100.0	건수	100.0
누 계	27,490	100.0	13,357	48.6	11,525	41.9	2,608	9.5
2017	2,246	100.0	1,137	50.6	909	40.5	200	8.9
2016	2,557	100.0	1,433	56.0	884	34.6	240	9.4
2015	2,830	100.0	1,452	51.3	1,118	39.5	260	9.2
2014	2,496	100.0	1,186	47.5	1,114	44.6	196	7.9
2013	2,512	100.0	1,214	48.3	1,154	45.9	144	5.7
2012	2,230	100.0	1,068	47.9	1,006	45.1	156	7.0
2011	1,908	100.0	898	47.1	709	37.2	301	15.8
2010	1,831	100.0	874	47.7	826	45.1	131	7.2
2009	1,637	100.0	775	47.3	727	44.4	135	8.2
2008	1,644	100.0	697	42.4	741	45.1	206	12.5
2007	1,215	100.0	565	46.5	487	40.1	163	13.4
2006	933	100.0	373	40.0	436	46.7	124	13.3
2005	1,318	100.0	610	46.3	565	42.9	143	10.8
2004	1,280	100.0	637	49.8	521	40.7	122	9.5
2003	717	100.0	368	51.3	286	39.9	63	8.8
2002	136	100.0	70	51.5	42	30.9	24	17.6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58,117	100.0	7,721	13.3	1,043	1.8	1,269	2.2	1,989	3.4	3,375	5.8	105	0.2	1,435	2.5	40,245	69.2	536	0.9	262	0.5	137	0.2
2017	5,932	100.0	745	12.6	44	0.7	157	2.6	165	2.8	204	3.4	11	0.2	148	2.5	4,374	73.7	51	0.9	3	0.1	30	0.5
2016	5,424	100.0	551	10.2	39	0.7	115	2.1	102	1.9	152	2.8	17	0.3	101	1.9	4,265	78.6	58	1.1	2	0.0	22	0.4
2015	5,416	100.0	485	9.0	36	0.7	131	2.4	117	2.2	229	4.2	21	0.4	85	1.6	4,250	78.5	44	0.8	3	0.1	15	0.3
2014	5,180	100.0	616	11.9	36	0.7	107	2.1	136	2.6	154	3.0	5	0.1	86	1.7	3,970	76.6	41	0.8	1	-	28	0.5
2013	4,542	100.0	643	14.1	64	1.4	119	2.6	107	2.4	190	4.2	5	0.1	157	3.5	3,194	70.3	59	1.3	1	-	3	0.1
2012	4,391	100.0	685	15.6	85	2.0	116	2.6	104	2.4	198	4.5	14	0.3	173	4.0	2,974	67.7	36	0.8	4	0.1	2	-
2011	2,935	100.0	370	12.6	74	2.5	58	2.0	92	3.1	130	4.5	4	0.1	77	2.6	2,096	71.4	34	1.2	-	-	-	-
2010	3,907	100.0	450	11.5	80	2.1	98	2.5	156	4.0	220	5.6	5	0.1	138	3.5	2,691	68.9	41	1.1	27	0.7	1	-
2009	2,974	100.0	285	9.6	59	2.0	64	2.1	101	3.4	189	6.4	5	0.2	72	2.4	2,164	72.8	31	1.0	1	-	3	0.1
2008	3,177	100.0	463	14.6	87	2.7	85	2.7	92	2.9	216	6.8	10	0.3	124	3.9	2,046	64.4	34	1.1	18	0.5	2	0.1
2007	3,152	100.0	359	11.4	101	3.2	54	1.7	137	4.3	251	8.0	1	-	141	4.5	2,032	64.5	47	1.5	13	0.4	16	0.5
2006	2,019	100.0	237	11.8	64	3.2	32	1.6	73	3.6	178	8.8	-	-	49	2.4	1,347	66.7	24	1.2	4	0.2	11	0.5
2005	2,378	100.0	173	7.3	85	3.6	47	2.0	136	5.7	291	12.2	2	0.1	64	2.7	1,539	64.7	23	1.0	15	0.6	3	0.1
2004	3,306	100.0	1,375	41.6	21	0.6	30	0.9	126	3.8	240	7.3	-	-	18	0.5	1,477	44.7	9	0.3	10	0.3	-	-
2003	2,210	100.0	85	3.9	129	5.8	42	1.9	185	8.4	253	11.5	4	0.2	1	-	1,437	65.0	4	0.2	69	3.1	1	-
2002	1,174	100.0	199	17.0	39	3.3	14	1.2	160	13.6	280	23.9	1	0.1	1	0.1	389	33.1	-	-	91	7.7	-	-

1) 검찰

[표 3-2-2-6]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798	97	2	79	1	1	3	11	2,691	1,842	50	775	24	10
2017	153	5	-	5	-	-	-	-	146	107	1	38		2
2016	139	7	-	7	-	-	-	-	132	84	1	46		1
2015	174	4	-	3	-	-	-	1	166	101	2	63		4
2014	158	3	-	3	-	-	-	-	154	95	7	52		1
2013	170	4	-	3	-	-	-	1	164	107	1	56		2

[표 3-2-2-7]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각하)											법 제32조 제3항 (각하)	법 제39조제1항(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842	251	27	16	230	435	1	164	634	19	63	2	775	437	296	42	-
2017	107	18	-	2	15	5	-	27	39	-	1	-	38	21	16	1	-
2016	84	25	-	-	10	9	-	16	19	5	-	-	46	35	8	3	3
2015	101	20	2	-	18	11	-	9	37	2	1	1	2015	63	45	17	1
2014	95	25	-	-	10	10	-	7	41	1	-	1	2014	52	37	15	-
2013	107	23	5	-	9	7	-	14	49	-	-	-	2013	56	40	14	2

[표 3-2-2-8] 2017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53	5	-	-	5	-	-	-	-	-	146	107	1	38	2
도·감청 등	-	-	-	-	-	-	-	-	-	-	-	-	-	-	-
압수수색(신체)	-	-	-	-	-	-	-	-	-	-	-	-	-	-	-
집회, 시위	-	-	-	-	-	-	-	-	-	-	-	-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2	-	-	-	-	-	-	-	-	-	2	2	-	-	-
임의동행	2	-	-	-	-	-	-	-	-	-	2	1	-	1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7	1	-	-	1	-	-	-	-	-	6	4	-	2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42	1	-	-	1	-	-	-	-	-	40	22	-	18	1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1	-	-	-	-	-	-	-	-	-	1	1	-	-	-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9	-	-	-	-	-	-	-	-	-	9	6	-	3	-
체포, 구속, 감금	51	1	-	-	1	-	-	-	-	-	49	41	-	8	1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4	-	-	-	-	-	-	-	-	-	4	4	-	-	-
공소권 남용	4	2	-	-	2	-	-	-	-	-	2	1	-	1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3	-	-	-	-	-	-	-	-	-	3	2	-	1	-
알권리/정보공개	1	-	-	-	-	-	-	-	-	-	1	1	-	-	-
생명권 침해	-	-	-	-	-	-	-	-	-	-	-	-	-	-	-
압수수색(주거) 등	-	-	-	-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27	-	-	-	-	-	-	-	-	-	27	22	1	4	-

## 2) 경찰

[표 3-2-2-9]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7,885	1,183	12	2	625	8	63	4	5	464	16,578	9,531	269	6,650	128	124
2017	1,239	35	-	-	22	-	-	-	-	13	1,191	714	34	443		13
2016	1,452	49	-	2	23	-	-	-	-	24	1,386	752	31	603		17
2015	1,548	77	-	-	13	-	2	-	-	62	1,435	721	20	694		36
2014	1,318	45	-	-	7	-	-	-	-	38	1,244	614	16	614		29
2013	1,453	80	-	-	32	-	-	2	-	46	1,362	663	9	690		11

[표 3-2-2-10]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9,531	700	208	157	655	1,074	9	377	6,116	111	104	20	6,650	4,455	1,752	443
2017	714	80	8	4	62	39	-	45	462	4	1	9	443	235	170	38
2016	752	111	10	10	31	46	-	32	494	16	1	1	603	389	157	57
2015	721	79	10	22	28	69	-	15	485	11	1	1	694	498	141	55
2014	614	65	2	6	29	30	-	19	453	10	-	-	614	433	143	38
2013	663	65	21	5	40	47	1	68	398	18	-	-	690	459	189	42

[표 3-2-2-11] 2017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1,239	35	-	-	22	-	-	-	-	13	1,191	714	34	443	13
불심검문/임의동행	24	-	-	-	-	-	-	-	-	-	24	13	2	9	-
도·감청 등	5	-	-	-	-	-	-	-	-	-	5	5	-	-	-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17	1	-	-	1	-	-	-	-	-	15	11	-	4	1
집회, 시위	17	5	-	-	5	-	-	-	-	-	12	8	-	4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56	1	-	-	1	-	-	-	-	-	54	28	-	26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7	-	-	-	-	-	-	-	-	-	7	4	-	3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236	5	-	-	3	-	-	-	-	2	226	114	1	111	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06	6	-	-	1	-	-	-	-	5	198	112	8	78	2
건강·의료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52	2	-	-	1	-	-	-	-	1	49	27	-	22	1
체포, 구속, 감금	131	6	-	-	4	-	-	-	-	2	124	64	2	58	1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275	3	-	-	1	-	-	-	-	2	271	188	7	76	1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55	5	-	-	4	-	-	-	-	1	50	30	-	20	-
알권리/정보공개	6	-	-	-	-	-	-	-	-	-	6	3	-	3	-
생명권 침해	6	1	-	-	1	-	-	-	-	-	5	5	-	-	-
압수수색(주거) 등	11	-	-	-	-	-	-	-	-	-	10	5	-	5	1
종교의 자유	1	-	-	-	-	-	-	-	-	-	1	-	-	1	-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9	-	-	-	-	-	-	-	-	-	9	6	-	3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125	-	-	-	-	-	-	-	-	-	125	91	14	20	-

### 3) 군

[표 3-2-2-12]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승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930	144	5	1	81	1	4	4	1	47	1,778	1,400	15	359	4	8
2017	237	22	-	-	9	-	1	-	-	12	215	186	5	24	/	-
2016	212	25	1	-	14	-	1	-	-	9	186	138	-	48	/	1
2015	165	9	-	-	5	-	-	-	-	4	154	112	-	42	/	2
2014	138	12	-	-	5	-	-	-	-	7	123	89	2	32	/	3
2013	165	9	-	-	6	-	-	-	-	3	155	95	-	60	/	1

[표 3-2-2-13]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400	114	12	32	201	103	7	40	877	6	5	3	359	155	106	98
2017	186	18	-	3	15	6	1	18	124	1	-	-	24	7	4	13
2016	138	19	-	5	5	3	-	1	105	-	-	-	48	21	12	15
2015	112	7	1	6	5	6	-	1	86	-	-	-	42	21	6	15
2014	89	9	2	2	16	1	-	3	55	1	-	-	32	13	9	10
2013	95	16	-	3	9	1	1	5	57	2	-	1	60	31	24	5

[표 3-2-2-14] 2017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37	22	-	-	9	-	1	-	-	12	215	186	5	24	-
불심검문/ 임의동행	1	-	-	-	-	-	-	-	-	-	1	1	-	-	-
도·감청 등	-	-	-	-	-	-	-	-	-	-	-	-	-	-	-
압수수색(신체)	-	-	-	-	-	-	-	-	-	-	-	-	-	-	-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 가족 미통지	-	-	-	-	-	-	-	-	-	-	-	-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	-	-	-	-	-	-	-	-	-	-	-	-	-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9	-	-	-	-	-	-	-	-	-	9	8	-	1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78	13	-	-	1	-	-	-	-	12	65	56	3	6	-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7	1	-	-	1	-	-	-	-	-	26	23	1	2	-
체포, 구속, 감금	4	-	-	-	-	-	-	-	-	-	4	4	-	-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	6	-	-	-	-	-	-	-	-	-	6	5	-	1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11	4	-	-	4	-	-	-	-	-	7	5	-	2	-
알권리 침해/정보공개	2	-	-	-	-	-	-	-	-	-	2	2	-	-	-
생명권 침해	6	-	-	-	-	-	-	-	-	-	6	3	-	3	-
부당한 제도 및 처분	72	3	-	-	3	-	-	-	-	-	69	65	1	3	-
압수수색(주거) 등	4	-	-	-	-	-	-	-	-	-	4	4	-	-	-
종교의 자유	2	-	-	-	-	-	-	-	-	-	2	-	-	2	-
영창관련 인권침해	6	-	-	-	-	-	-	-	-	-	6	5	-	1	-
인터넷	-	-	-	-	-	-	-	-	-	-	-	-	-	-	-
기타	9	1	-	-	-	-	1	-	-	-	8	5	-	3	-

#### 4) 구금시설

[표 3-2-2-15]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7,350	388	4	1	270	1	16	8	88	26,960	16,314	735	9,825	86	2
2017	2,202	9	-	-	9	-	-	-	-	2,193	1,338	16	839	/	-
2016	1,725	14	-	-	14	-	-	-	-	1,710	979	8	723	/	1
2015	1,596	2	-	-	2	-	-	-	-	1,593	896	12	685	/	1
2014	1,555	8	2	-	4	-	-	-	2	1,547	927	17	603	/	-
2013	1,662	7	-	-	3	-	-	-	4	1,655	916	5	734	/	-

[표 3-2-2-16]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6,314	1,371	299	524	263	785	9	190	12,628	184	11	50	9,825	4,584	4,583	658
2017	1,338	146	9	87	20	63	-	10	977	16	-	10	839	443	357	39
2016	979	56	2	33	11	31	-	6	821	11	1	7	723	411	274	38
2015	896	71	12	36	12	42	1	10	699	10	-	3	685	331	318	36
2014	927	164	9	40	21	41	-	10	625	7	-	10	603	278	303	22
2013	916	154	11	42	17	59	-	4	611	17	1	-	734	362	355	17

[표 3-2-2-17] 2017년 구급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202	9	-	-	9	-	-	-	-	2,193	1,338	16	839	-
건강/의료	633	3	-	-	3	-	-	-	-	630	390	6	234	-
외부교통 권리제한	123	-	-	-	-	-	-	-	-	123	62	1	60	-
조사/징벌/계구	284	1	-	-	1	-	-	-	-	283	135	-	148	-
폭행/가혹행위	153	2	-	-	2	-	-	-	-	151	91	4	56	-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656	2	-	-	2	-	-	-	-	654	421	1	232	-
시설/환경	178	1	-	-	1	-	-	-	-	177	119	1	57	-
기타	175	-	-	-	-	-	-	-	-	175	120	3	52	-

## 5) 기타국가기관

[표 3-2-2-18]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조 사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7,090	235	-	3	171	5	1	54	1	6,855	5,294	55	1,490	16	-
2017	451	15	-	-	14	-	-	1	-	436	329	10	97	/	-
2016	322	7	-	-	5	1	-	1	-	315	212	12	91	/	-
2015	328	5	-	-	1	-	-	4	-	323	189	4	130	/	-
2014	358	6	-	-	4	-	-	2	-	352	244	-	108	/	-
2013	322	5	-	-	5	-	-	-	-	317	236	1	80	/	-

[표 3-2-2-19]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5,294	2,541	120	54	205	237	4	242	1,773	67	39	12	1,490	446	667	377
2017	329	127	2	1	13	10	2	13	153	6	-	2	97	28	59	10
2016	212	81	2	5	8	3	1	7	101	2	-	2	91	43	38	10
2015	189	62	2	3	7	8	-	19	83	3	-	2	130	63	56	11
2014	244	89	2	1	11	7	-	10	120	4	-	-	108	44	44	20
2013	236	111	5	1	10	12	-	15	80	1	-	1	80	27	48	5

[표 3-2-2-20] 2017년 기타국가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451	15	-	-	14	-	-	-	1	436	329	10	97	-
위법/부당한 처분	102	-	-	-	-	-	-	-	-	102	78	3	21	-
폭행/가혹행위	13	3	-	-	3	-	-	-	-	10	6	-	4	-
인격권 침해	140	6	-	-	6	-	-	-	-	134	97	1	36	-
사생활 비밀 침해	42	5	-	-	4	-	-	-	1	37	18	1	18	-
알권리 침해	8	-	-	-	-	-	-	-	-	8	6	1	1	-
기타	146	1	-	-	1	-	-	-	-	145	124	4	17	-

## 6) 지방자치단체

[표 3-2-2-21]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기초조 사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4,311	216	1	3	127	-	2	82	1	4,093	2,714	42	1,320	17	2
2017	413	14	-	1	11	-	-	2	-	399	278	12	109	/	-
2016	337	13	-	1	8	-	-	4	-	323	183	12	128	/	1
2015	486	20	1	-	5	-	-	14	-	465	236	1	228	/	1
2014	422	10	-	-	6	-	-	4	-	412	257	1	154	/	-
2013	297	4	-	-	3	-	-	1	-	293	196	-	97	/	-

[표 3-2-2-22]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714	833	53	34	101	203	4	106	1,317	40	6	17	1,320	509	547	264
2017	278	93	2	2	8	9	-	3	146	11	-	4	109	46	47	16
2016	183	58	-	3	6	6	-	8	92	8	-	2	128	61	36	31
2015	236	65	3	3	13	15	1	4	124	5	-	3	228	91	75	62
2014	257	70	2	2	16	10	-	4	147	1	-	5	154	68	55	31
2013	196	82	6	-	4	15	-	9	74	6	-	-	97	36	51	10

[표 3-2-2-2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413	14	-	1	11	-	-	-	2	399	278	12	109	-
위법/부당한 처분	86	5	-	1	4	-	-	-	-	81	61	3	17	-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23	-	-	-	-	-	-	-	-	23	18	1	4	-
폭행/가혹행위	8	2	-	-	2	-	-	-	-	6	4	-	2	-
인격권 침해	150	3	-	-	2	-	-	-	1	147	100	7	40	-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61	2	-	-	2	-	-	-	-	59	29	1	29	-
알권리 침해	9	-	-	-	-	-	-	-	-	9	4	-	5	-
행정/제도 개선	18	-	-	-	-	-	-	-	-	18	17	-	1	-
기타	58	2	-	-	1	-	-	-	1	56	45	-	11	-

## 7) 공직유관단체

[표 3-2-2-24]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155	36	-	2	17	-	-	-	17	1,118	775	14	329	-	1
2017	255	10	-	1	8	-	-	-	1	245	180	5	60	/	-
2016	221	9	-	1	4	-	-	-	4	212	138	8	66	/	-
2015	233	8	-	-	3	-	-	-	5	225	119	1	105	/	-
2014	231	8	-	-	2	-	-	-	6	223	162	-	61	/	-
2013	127	1	-	-	-	-	-	-	1	125	109	-	16	/	1

[표 3-2-2-25]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775	258	11	6	18	37	3	26	409	3	4	-	329	142	136	51
2017	180	59	2	3	7	14	2	5	86	-	2	-	60	27	24	9
2016	138	50	2	2	2	9	-	2	67	2	2	-	66	25	32	9
2015	119	36	-	-	3	2	1	1	76	-	-	-	105	46	36	23
2014	162	58	2	1	3	7	-	5	86	-	-	-	61	30	22	9
2013	109	25	1	-	1	2	-	5	74	1	-	-	16	6	10	-

[표 3-2-2-26] 2017년 공직유관단체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55	10	-	1	8	-	-	-	1	245	180	5	60	-
위법/부당한 처분	48	-	-	-	-	-	-	-	-	48	35	2	11	-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6	-	-	-	-	-	-	-	-	6	5	-	1	-
폭행/가혹행위	11	1	-	-	-	-	-	-	1	10	8	-	2	-
인격권 침해	104	3	-	1	2	-	-	-	-	101	76	1	24	-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23	4	-	-	4	-	-	-	-	19	9	-	10	-
알권리 침해	7	-	-	-	-	-	-	-	-	7	4	-	3	-
행정/제도 개선	11	1	-	-	1	-	-	-	-	10	8	1	1	-
기타	45	1	-	-	1	-	-	-	-	44	35	1	8	-

## 8) 다수인보호시설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2,442	1,625	11	4	684	92	16	3	815	20,788	15,250	76	5,416	46	29
2017	2,652	101	4	2	61	4	5	-	25	2,545	2,061	3	481		6
2016	3,239	168	1	2	67	17	5	1	75	3,063	2,401	5	657		8
2015	3,547	272	3	-	86	4	1	-	178	3,273	2,553	17	703		2
2014	3,249	212	1	-	36	17	2	1	155	3,032	2,318	4	710		5
2013	2,650	224	-	-	53	1	1	-	169	2,423	1,781	2	640		3

[표 3-2-2-28]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250	350	112	369	184	251	50	176	13,654	85	1	18	5,416	2,127	2,849	440	
2017	2,061	46	11	40	10	24	3	9	1,910	7	1	-	481	263	172	46	
2016	2,401	23	17	44	16	26	12	17	2,229	12	-	5	657	366	264	27	
2015	2,553	36	4	53	21	42	14	17	2,352	12	-	2	703	294	387	22	
2014	2,318	29	3	49	19	32	4	18	2,138	16	-	10	710	240	439	31	
2013	1,781	48	6	63	10	28	3	18	1,592	12	-	1	640	204	396	40	

[표 3-2-2-29] 2017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652	101	4	2	61	4	5	-	25	2,545	2,061	3	481	6
불법/강제수용	1,249	40	1	1	25	2	1	-	10	1,207	962	1	244	2
폭행/가혹행위	255	16	2	-	6	2	2	-	4	238	185	1	52	1
외부교통권 제한	206	10	-	-	7	-	-	-	3	193	164	-	29	3
의료조치 미흡	176	10	-	1	4	-	-	-	5	166	138	-	28	-
강제노동	37	7	-	-	6	-	-	-	1	30	25	-	5	-
인격권 침해	213	5	-	-	3	-	2	-	-	208	164	1	43	-
시설/환경	103	2	-	-	2	-	-	-	-	101	82	-	19	-
퇴원요청	228	5	-	-	4	-	-	-	1	223	189	-	34	-
기타	185	6	1	-	4	-	-	-	1	179	152	-	27	-

### 9) 출입국관리기관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90	6	-	-	2	1	-	-	3	284	203	-	81	-	-
2017	51	-	-	-	-	-	-	-	-	51	39	-	12	/	-
2016	85	1	-	-	1	-	-	-	-	84	51	-	33	/	-
2015	45	-	-	-	-	-	-	-	-	45	36	-	9	/	-
2014	12	1	-	-	-	1	-	-	-	11	8	-	3	/	-
2013	25	2	-	-	1	-	-	-	1	23	15	-	8	/	-

[표 3-2-2-31]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03	17	2	7	1	13	-	9	149	5	-	-	81	37	32	12
2017	39	4	1	4	-	2	-	1	24	3	-	-	12	7	5	-
2016	51	2	-	2	1	5	-	2	38	1	-	-	33	12	11	10
2015	36	-	-	-	-	4	-	1	31	-	-	-	9	6	3	-
2014	8	-	-	-	-	-	-	-	8	-	-	-	3	-	3	-
2013	15	4	-	1	-	1	-	1	7	1	-	-	8	4	4	-

[표 3-2-2-32] 2017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51	-	-	-	-	-	-	-	-	51	39	-	12	-
욕설/반말	2	-	-	-	-	-	-	-	-	2	-	-	2	-
폭행/가혹행위	1	-	-	-	-	-	-	-	-	1	1	-	-	-
출입국 제한	2	-	-	-	-	-	-	-	-	2	2	-	-	-
사생활 비밀 침해	-	-	-	-	-	-	-	-	-	-	-	-	-	-
알권리 침해	-	-	-	-	-	-	-	-	-	-	-	-	-	-
적법절차 준수 위반	3	-	-	-	-	-	-	-	-	3	1	-	2	-
위법/부당한 처분	15	-	-	-	-	-	-	-	-	15	13	-	2	-
부작위/거부등 소극적 처분	24	-	-	-	-	-	-	-	-	24	20	-	4	-
기타	4	-	-	-	-	-	-	-	-	4	2	-	2	-

## 10) 각급학교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429	202	-	4	130	-	1	-	67	3,220	2,413	32	775	-	7
2017	715	69	-	-	64	-	-	-	5	646	516	8	122	/	-
2016	542	35	-	3	27	-	-	-	5	505	360	3	142	/	2
2015	531	21	-	-	12	-	-	-	9	505	347	19	139	/	5
2014	492	22	-	-	7	-	-	-	15	470	332	1	137	/	-
2013	422	22	-	-	5	1	-	-	16	400	308	-	92	/	-

[표 3-2-2-34]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413	309	21	36	45	117	13	66	1,787	7	1	11	775	273	332	170
2017	516	54	3	8	12	23	3	13	395	2	-	3	122	52	49	21
2016	360	52	2	9	8	10	4	8	263	1	-	3	142	56	49	37
2015	347	57	-	8	8	27	3	7	232	1	1	3	139	44	64	31
2014	332	36	2	6	6	14	1	8	257	-	-	2	137	33	72	32
2013	308	50	2	3	5	15	-	17	216	-	-	-	92	28	41	23

[표 3-2-2-35] 2017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715	69	-	-	64	-	-	-	5	646	516	8	122	-
인격권 침해	9	5	-	-	5	-	-	-	-	4	3	-	1	-
체벌	40	6	-	-	6	-	-	-	-	34	26	-	8	-
징계부당	69	6	-	-	6	-	-	-	-	63	54	-	9	-
학교폭력	62	6	-	-	6	-	-	-	-	56	30	2	24	-
모욕적 언행	217	17	-	-	14	-	-	-	3	200	155	4	41	-
두발 등 용모제한	23	1	-	-	-	-	-	-	1	22	20	-	2	-
소지품·휴대폰· 사생활	17	6	-	-	6	-	-	-	-	11	10	-	1	-
학습 강요	12	11	-	-	11	-	-	-	-	1	1	-	-	-
기숙사	8	1	-	-	1	-	-	-	-	7	6	-	1	-
기타	258	10	-	-	9	-	-	-	1	248	211	2	35	-

###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5,001	2,178	3	49	1,369	12	25	720	22,744	15,031	135	7,499	79	79
2017	2,371	192	-	15	139	1	8	29	2,179	1,414	6	759		-
2016	2,410	117	1	9	66	1	4	36	2,293	1,672	12	609		-
2015	2,016	77	-	1	35	-	5	36	1,930	1,339	7	584		9
2014	2,223	162	-	1	62	2	2	95	2,034	1,273	7	754		27
2013	2,858	216	-	2	101	1	1	111	2,621	1,631	11	979		21
2012	2,559	216	1	2	170	-	2	41	2,321	1,312	2	1,007		22
2011	1,898	272	1	1	187	4	-	79	1,626	872	5	737	12	
2010	2,108	207	-	1	103	3	-	100	1,901	1,224	23	626	28	
2009	1,660	169	-	1	78	-	-	90	1,491	875	9	589	18	
2008	1,143	119	-	2	88	-	2	27	1,024	765	14	240	5	
2007	1,253	152	-	3	111	-	1	37	1,101	901	22	171	7	
2006	899	148	-	10	115	-	-	23	751	552	11	183	5	
2005	837	62	-	-	55	-	-	7	775	650	2	121	2	
2004	368	26	-	1	21	-	-	4	342	263	3	74	2	
2003	296	33	-	-	30	-	-	3	263	215	-	48	-	
2002	102	10	-	-	8	-	-	2	92	73	1	18	-	

[표 3-2-3-2] 2017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2,371	192	-	15	139	1	8	29	2,179	1,414	6	759	-
성별	126	7	-	-	6	-	-	1	119	41	-	78	-
종교	16	2	-	-	2	-	-	-	14	6	-	8	-
장애	1,084	91	-	-	67	1	2	21	993	628	4	361	-
나이	111	5	-	-	4	-	-	1	106	43	-	63	-
사회직신분	167	4	-	1	1	-	-	2	163	110	-	53	-
출신지역	18	1	-	1	-	-	-	-	17	11	1	5	-
출신국가	24	-	-	-	-	-	-	-	24	14	-	10	-
출신민족	1	-	-	-	-	-	-	-	1	-	-	1	-
용모/신체조건	30	5	-	-	5	-	-	-	25	13	1	11	-
혼인여부	31	18	-	-	18	-	-	-	13	4	-	9	-
임신/출산	23	-	-	-	-	-	-	-	23	17	-	6	-
가족상황	24	2	-	-	2	-	-	-	22	10	-	12	-
인종	9	-	-	-	-	-	-	-	9	4	-	5	-
피부색	1	-	-	-	-	-	-	-	1	-	-	1	-
사상/정치적의견	8	3	-	-	3	-	-	-	5	4	-	1	-
전과	14	-	-	-	-	-	-	-	14	7	-	7	-
성적지향	12	-	-	-	-	-	-	-	12	5	-	7	-
병력	24	4	-	-	4	-	-	-	20	16	-	4	-
학벌/학력	34	2	-	-	2	-	-	-	32	15	-	17	-
성희롱	236	34	-	10	14	-	6	4	202	164	-	38	-
기타	378	14	-	3	11	-	-	-	364	302	-	62	-

[표 3-2-3-3] 2017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2,371</b>	<b>192</b>	<b>-</b>	<b>15</b>	<b>139</b>	<b>1</b>	<b>8</b>	<b>29</b>	<b>2,179</b>	<b>1,414</b>	<b>6</b>	<b>759</b>	<b>-</b>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675	41	5	0	0	0	32	4	634	401	2	231	-
	모집	85	7	-	-	7	-	-	-	78	26	-	52	-
	채용	142	14	-	-	14	-	-	-	128	53	1	74	-
	배치	37	3	-	-	1	-	-	2	34	23	-	11	-
	교육	17	-	-	-	-	-	-	-	17	10	-	7	-
	승진	27	2	-	1	1	-	-	-	25	17	-	8	-
	임금지급	130	4	-	1	2	-	-	1	126	93	1	32	-
	임금외 금품지급	29	-	-	-	-	-	-	-	29	19	-	10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5	1	-	-	1	-	-	-	4	3	-	1	-
	퇴직	31	0	-	-	-	-	-	-	31	28	-	3	-
	해고	64	3	-	1	1	-	-	1	61	45	-	16	-
기타	108	7	-	2	5	-	-	-	101	84	-	17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소계	899	49	1	1	0	0	36	11	850	499	1	350	-
	용역의 공급이용	365	31	-	-	22	-	-	9	334	199	-	135	-
	재화의 공급이용	303	8	-	-	6	-	-	2	295	158	1	136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01	4	-	-	3	-	1	-	97	66	-	31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96	2	-	1	1	-	-	-	94	56	-	38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31	2	-	-	2	-	-	-	29	19	-	10	-
	토지의 공급이용	3	2	-	-	2	-	-	-	1	1	-	-	-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소계	88	17	1	0	0	0	16	0	71	35	0	36	-
	교육시설의 이용	82	16	-	-	16	-	-	-	66	31	-	35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6	1	-	1	-	-	-	-	5	4	-	1	-
기타	709	85	-	8	55	1	7	14	624	479	3	142	-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3호	
	누 계	7,499	100.0	1,369	18.2	2,772	37.0	3,358
2017	759	100.0	189	24.9	287	37.8	283	27.3
2016	609	100.0	118	19.4	235	38.6	256	42.0
2015	584	100.0	111	19.0	261	44.7	212	36.3
2014	754	100.0	171	22.7	284	37.7	299	39.6
2013	979	100.0	148	15.1	240	24.5	591	60.4
2012	1,007	100.0	155	15.4	239	23.7	613	60.9
2011	737	100.0	136	18.5	277	37.6	324	44.0
2010	626	100.0	120	19.2	216	34.5	290	46.3
2009	589	100.0	81	13.8	250	42.4	258	43.8
2008	240	100.0	42	17.5	93	38.8	105	43.8
2007	171	100.0	23	13.5	88	51.5	60	35.1
2006	183	100.0	25	13.7	140	76.5	18	9.8
2005	121	100.0	21	17.4	75	62.0	25	20.7
2004	74	100.0	5	6.8	51	68.9	18	24.3
2003	48	100.0	14	29.2	30	62.5	4	8.3
2002	18	100.0	10	55.6	6	33.3	2	11.1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누 계	15,031	100.0	2,856	19.0	107	0.7	285	1.9	315	2.1	715	4.8	35	0.2	428	2.8	10,012	66.6	225	1.5	28	0.2	25	0.2
2017	1,414	100.0	404	28.6	4	0.3	22	1.6	25	1.8	63	4.5	2	0.1	60	4.2	818	57.8	12	0.8	-	-	4	0.3
2016	1,672	100.0	228	13.6	17	1.0	17	1.0	14	0.8	45	2.6	3	0.2	6	0.4	1,332	79.8	6	0.4	1	0.1	3	0.2
2015	1,339	100.0	262	19.5	3	0.2	24	1.8	16	1.2	60	4.5	5	0.4	31	2.3	921	68.8	12	0.9	1	0.1	4	0.3
2014	1,273	100.0	206	16.2	15	1.2	20	1.6	31	2.4	59	4.6	2	0.1	24	1.9	892	70.1	15	1.2	2	0.1	7	0.6
2013	1,631	100.0	361	22.1	14	1.0	44	2.7	17	1.0	72	4.4	1	0.1	65	4.0	1,035	63.4	20	1.1	1	0.1	1	0.1
2012	1,312	100.0	145	11.1	4	0.3	21	1.6	29	2.2	67	5.1	5	0.4	18	1.4	1,011	77.1	11	0.8	-	-	1	0.1
2011	872	100.0	147	16.9	7	0.8	24	2.8	16	1.8	39	4.5	2	0.2	24	2.8	586	67.2	24	2.8	3	0.3	-	-
2010	1,224	100.0	332	27.1	2	0.2	16	1.3	33	2.7	47	3.8	1	0.1	34	2.8	739	60.4	17	1.4	2	0.2	1	0.1
2009	875	100.0	174	19.9	4	0.5	15	1.7	15	1.7	42	4.8	2	0.2	24	2.7	572	65.4	23	2.6	1	0.1	3	0.3
2008	765	100.0	150	19.6	7	0.9	11	1.4	27	3.5	23	3.0	3	0.4	25	3.3	509	66.5	9	1.2	1	0.1	-	-
2007	901	100.0	132	14.7	14	1.6	25	2.8	11	1.2	35	3.9	6	0.7	43	4.8	623	69.1	11	1.2	-	-	1	0.1
2006	552	100.0	77	13.9	6	1.1	18	3.3	6	1.1	35	6.3	1	0.2	27	4.9	356	64.5	22	4.0	4	0.7	-	-
2005	650	100.0	130	20.0	7	1.1	18	2.8	15	2.3	46	7.1	1	0.2	38	5.8	350	53.8	43	6.6	2	0.3	-	-
2004	263	100.0	44	16.7	1	0.4	7	2.7	8	3.0	23	8.7	1	0.4	9	3.4	167	63.5	-	-	3	1.1	-	-
2003	215	100.0	39	18.1	2	0.9	1	0.5	46	21.4	52	24.2	-	-	-	-	69	32.1	-	-	6	2.8	-	-
2002	73	100.0	25	34.2	-	-	2	2.7	6	8.2	7	9.6	-	-	-	-	32	43.8	-	-	1	1.4	-	-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종결						조사중지	
	합 계		인용		미인용			
	종결건수	평균소요 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 일수	종결건수	평균소요 일수	중지건수	평균소요 일수
누계	24,922	131.6	2,178	212.9	22,744	123.9	79	142.2
2017	2,371	131.3	192	254	2,179	120.5	-	-
2016	2,410	131.9	117	240	2,293	126.4	-	-
2015	2,007	123.8	77	166.5	1,930	122.1	9	100.1
2014	2,196	104.4	162	130.5	2,034	102.3	27	129.7
2013	2,837	122.4	216	175.8	2,621	118	21	163.3
2012	2,537	207.0	216	372.4	2,321	191.6	22	154.7
2011	1,898	147.5	272	230.6	1,626	133.6		
2010	2,108	105.4	207	140.8	1,901	101.5		
2009	1,660	127.7	169	150.6	1,491	125.1		
2008	1,143	99.6	119	190.7	1,024	89		
2007	1,253	102.5	152	219.2	1,101	86.4		
2006	899	156.2	148	210.2	751	145.5		
2005	837	114.3	62	216	775	106.2		
2004	368	139.6	26	247.7	342	131.4		
2003	296	139.2	33	248.8	263	125.4		
2002	102	163.0	10	189.2	92	160.1		
2001	-	-	-	-	-	-		

1) 성별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832	66	-	-	61	-	-	5	766	468	2	285	11	-
2017	126	7	-	-	6	-	-	1	119	41	-	78	/	-
2016	87	4	-	-	3	-	-	1	83	38	-	45	/	-
2015	52	2	-	-	2	-	-	-	50	32	-	18	/	-
2014	73	3	-	-	3	-	-	-	70	45	-	25	/	-
2013	56	2	-	-	2	-	-	-	54	35	-	19	/	-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468	94	3	8	27	17	2	13	301	2	1	-	285	40	162	83
2017	41	15	-	-	-	1	-	4	21	-	-	-	78	12	38	28
2016	38	19	-	-	-	-	1	1	16	1	-	-	45	5	23	17
2015	32	11	-	1	2	-	-	1	17	-	-	-	18	1	10	7
2014	45	8	1	-	1	1	1	1	32	-	-	-	25	6	14	5
2013	35	3	1	-	-	-	-	1	29	1	-	-	19	2	12	5

[표 3-2-3-9] 2017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126</b>	<b>7</b>	<b>-</b>	<b>-</b>	<b>6</b>	<b>-</b>	<b>-</b>	<b>1</b>	<b>119</b>	<b>41</b>	<b>-</b>	<b>78</b>	<b>-</b>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65	5	-	-	5	-	-	-	60	17	-	43	-
	모집	11	3	-	-	3	-	-	-	8	4	-	4	-
	채용	32	1	-	-	1	-	-	-	31	3	-	28	-
	배치	5	-	-	-	-	-	-	-	5	3	-	2	-
	교육	-	-	-	-	-	-	-	-	-	-	-	-	-
	승진	1	-	-	-	-	-	-	-	1	-	-	1	-
	임금지급	4	1	-	-	1	-	-	-	3	1	-	2	-
	임금외 금품지급	1	-	-	-	-	-	-	-	1	1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4	-	-	-	-	-	-	-	4	4	-	-	-
	기타	7	-	-	-	-	-	-	-	7	1	-	6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31	-	-	-	-	-	-	-	31	9	-	22	-
	용역의 공급 이용	5	-	-	-	-	-	-	-	5	2	-	3	-
	재화의 공급 이용	15	-	-	-	-	-	-	-	15	4	-	11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3	-	-	-	-	-	-	-	3	-	-	3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7	-	-	-	-	-	-	-	7	2	-	5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11	1	-	-	1	-	-	-	10	4	-	6	-
	교육시설의 이용	11	1	-	-	1	-	-	-	10	4	-	6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19	1	-	-	-	-	-	-	18	11	-	7	-	

## 2) 임신 또는 출산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45	25	-	-	14	-	-	11	220	169	-	49	2	-
2017	23	-	-	-	-	-	-	-	23	17	-	6		-
2016	11	1	-	-	1	-	-	-	10	8	-	2		-
2015	19	-	-	-	-	-	-	-	19	16	-	3		-
2014	12	-	-	-	-	-	-	-	12	9	-	3		-
2013	21	2	-	-	1	-	-	1	19	16	-	3		-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69	12	-	6	15	10	-	2	124	-	-	-	49	13	27	9
2017	17	5	-	-	1	1	-	-	10	-	-	-	6	2	3	1
2016	8	2	-	-	1	-	-	-	5	-	-	-	2	2	-	-
2015	16	1	-	-	-	-	-	-	15	-	-	-	3	2	1	-
2014	9	-	-	1	-	1	-	-	7	-	-	-	3	2	-	1
2013	16	-	-	-	-	-	-	-	16	-	-	-	3	-	3	-

[표 3-2-3-12] 2017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계</b>	<b>23</b>	-	-	-	-	-	-	-	<b>23</b>	<b>17</b>	-	<b>6</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0	-	-	-	-	-	-	20	16	-	4	-
	모집	1	-	-	-	-	-	-	1	-	-	1	-
	채용	4	-	-	-	-	-	-	4	2	-	2	-
	배치	3	-	-	-	-	-	-	3	3	-	-	-
	교육	1	-	-	-	-	-	-	1	1	-	-	-
	승진	1	-	-	-	-	-	-	1	1	-	-	-
	임금지급	1	-	-	-	-	-	-	1	1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해고	4	-	-	-	-	-	-	4	3	-	1	-
기타	5	-	-	-	-	-	-	5	5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	-	-	-	-	-	-	2	-	-	2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1	-	-	-	-	-	-	1	-	-	1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1	-	-	1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1	-	-	-	-	-	-	1	1	-	-	-	

### 3) 혼인 여부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22	22	-	-	22	-	-	-	99	73	-	26	-	1
2017	31	18	-	-	18	-	-	-	13	4	-	9	-	-
2016	3	-	-	-	-	-	-	-	3	2	-	1	-	-
2015	3	-	-	-	-	-	-	-	3	3	-	-	-	-
2014	7	-	-	-	-	-	-	-	7	5	-	2	-	-
2013	3	-	-	-	-	-	-	-	3	3	-	-	-	-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73	13	1	2	2	2	-	-	53	-	-	-	26	10	4	12
2017	4	3	-	-	-	-	-	-	1	-	-	-	9	5	-	4
2016	2	-	-	-	-	-	-	-	2	-	-	-	1	-	1	-
2015	3	2	-	-	-	-	-	-	1	-	-	-	-	-	-	-
2014	5	1	1	-	-	-	-	-	3	-	-	-	2	2	-	-
2013	3	-	-	1	-	-	-	-	2	-	-	-	-	-	-	-

[표 3-2-3-15] 2017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31</b>	<b>18</b>	-	-	<b>18</b>	-	-	-	<b>13</b>	<b>4</b>	-	<b>9</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8	-	-	-	-	-	-	8	1	-	7	-
	모집	2	-	-	-	-	-	-	2	-	-	2	-
	채용	5	-	-	-	-	-	-	5	1	-	4	-
	배치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해고	1	-	-	-	-	-	-	1	-	-	1	-
기타	-	-	-	-	-	-	-	-	-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1	18	-	-	18	-	-	3	2	-	1	-
	용역의 공급 이용	20	18	-	-	18	-	-	2	1	-	1	-
	재화의 공급 이용	1	-	-	-	-	-	-	1	1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2	-	-	-	-	-	-	2	1	-	1	-	

#### 4) 나이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570	168	-	1	141	-	-	26	1,398	906	2	487	3	4
2017	111	5	-	-	4	-	-	1	106	43	-	63		-
2016	79	8	-	-	8	-	-	-	71	31	-	40		-
2015	88	1	-	-	1	-	-	-	86	60	1	25		1
2014	119	7	-	-	4	-	-	3	112	61	1	50		-
2013	157	8	-	-	6	-	-	2	147	90	-	57		2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906	90	7	9	15	41	3	22	710	7	1	1	487	146	152	189
2017	43	13	-	-	2	4	-	1	23	-	-	-	63	19	22	22
2016	31	2	-	-	1	1	-	-	27	-	-	-	40	13	21	6
2015	60	10	-	1	-	6	-	-	39	2	1	1	25	6	13	6
2014	61	9	-	1	-	2	-	1	47	1	-	-	50	15	17	18
2013	90	3	-	-	-	3	-	1	80	3	-	-	57	18	23	16

[표 3-2-3-18] 2017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111</b>	<b>5</b>	-	-	<b>4</b>	-	-	<b>1</b>	<b>106</b>	<b>43</b>	-	<b>63</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78	4	-	-	3	-	-	1	74	27	-	47	-
	모집	24	-	-	-	-	-	-	-	24	4	-	20	-
	채용	23	2	-	-	2	-	-	-	21	7	-	14	-
	배치	7	1	-	-	-	-	-	1	6	3	-	3	-
	교육	-	-	-	-	-	-	-	-	-	-	-	-	-
	승진	2	-	-	-	-	-	-	-	2	-	-	2	-
	임금지급	1	-	-	-	-	-	-	-	1	-	-	1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3	1	-	-	1	-	-	-	2	1	-	1	-
	퇴직	5	-	-	-	-	-	-	-	5	4	-	1	-
	해고	7	-	-	-	-	-	-	-	7	3	-	4	-
기타	6	-	-	-	-	-	-	-	6	5	-	1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6	1	-	-	1	-	-	-	25	12	-	13	-
	용역의 공급 이용	3	-	-	-	-	-	-	-	3	1	-	2	-
	재화의 공급 이용	15	1	-	-	1	-	-	-	14	6	-	8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2	-	-	-	-	-	-	-	2	1	-	1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6	-	-	-	-	-	-	-	6	4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2	-	-	-	-	-	-	-	2	1	-	1	-
	교육시설의 이용	2	-	-	-	-	-	-	-	2	1	-	1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5	-	-	-	-	-	-	-	5	3	-	2	-	

5) 인종 등<sup>45)</sup>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승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531	32	-	1	22	-	-	9	497	330	7	155	5	2
2017	35	-	-	-	-	-	-	-	35	18	-	17		-
2016	38	8	-	-	8	-	-	-	30	17	-	13		-
2015	26	3	-	1	-	-	-	2	23	14	-	9		-
2014	76	1	-	-	-	-	-	1	74	48	-	26		1
2013	45	1	-	-	-	-	-	1	44	39	-	5		-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330	100	4	3	10	20	1	28	162	1	-	1	155	32	62	61
2017	18	7	-	-	-	2	-	1	8	-	-	-	17	8	5	4
2016	17	7	-	-	-	1	-	1	8	-	-	-	13	3	4	6
2015	14	2	-	-	-	1	1	-	10	-	-	-	9	-	6	3
2014	48	15	1	1	5	3	-	-	23	-	-	-	26	2	11	13
2013	39	22	-	-	1	1	-	1	14	-	-	-	5	1	3	1

45) 인종 등 이라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말한다.

[표 3-2-3-21] 2017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35</b>	-	-	-	-	-	-	-	<b>35</b>	<b>18</b>	-	<b>17</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5	-	-	-	-	-	-	5	3	-	2	-
	모집	1	-	-	-	-	-	-	1	-	-	1	-
	채용	1	-	-	-	-	-	-	1	-	-	1	-
	배치	-	-	-	-	-	-	-	-	-	-	-	-
	교육	2	-	-	-	-	-	-	2	2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해고	1	-	-	-	-	-	-	1	1	-	-	-
기타	-	-	-	-	-	-	-	-	-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0	-	-	-	-	-	-	20	8	-	12	-
	용역의 공급 이용	7	-	-	-	-	-	-	7	4	-	3	-
	재화의 공급 이용	7	-	-	-	-	-	-	7	2	-	5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1	-	-	-	-	-	-	1	1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2	-	-	-	-	-	-	2	-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3	-	-	-	-	-	-	3	1	-	2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1	1	-	-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1	1	-	-	-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9	-	-	-	-	-	-	9	6	-	3	-	

6) 용모·신체조건

[표 3-2-3-22]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중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22	38	-	-	34	-	-	4	279	203	2	71	3	5
2017	30	5	-	-	5	-	-	-	25	13	1	11	/	-
2016	10	2	-	-	2	-	-	-	8	7	-	1	/	-
2015	23	1	-	-	-	-	-	1	21	16	-	5	/	1
2014	29	-	-	-	-	-	-	-	25	19	-	6	/	4
2013	30	-	-	-	-	-	-	-	30	22	-	8	/	-

[표 3-2-3-23] 용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03	22	1	3	1	1	-	12	159	4	-	-	71	24	27	20
2017	13	3	-	-	-	-	-	-	9	1	-	-	11	3	3	5
2016	7	2	-	-	-	-	-	-	5	-	-	-	1	-	1	-
2015	16	5	-	-	-	-	-	-	11	-	-	-	5	-	5	-
2014	19	2	-	-	-	-	-	4	13	-	-	-	6	5	1	-
2013	22	3	1	-	1	-	-	1	15	1	-	-	8	4	2	2

[표 3-2-3-24] 2017년 옹모·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중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30</b>	<b>5</b>	-	-	<b>5</b>	-	-	-	<b>25</b>	<b>13</b>	<b>1</b>	<b>11</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2	5	-	-	5	-	-	-	17	9	-	8	-
	모집	10	3	-	-	3	-	-	-	7	2	-	5	-
	채용	6	2	-	-	2	-	-	-	4	2	-	2	-
	배치	-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
	자금음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1	-	-	-	-	-	-	-	1	1	-	-	-
	해고	5	-	-	-	-	-	-	-	5	4	-	1	-
기타	-	-	-	-	-	-	-	-	-	-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5	-	-	-	-	-	-	-	5	2	-	3	-
	용역의 공급 이용	2	-	-	-	-	-	-	-	2	1	-	1	-
	재화의 공급 이용	2	-	-	-	-	-	-	-	2	-	-	2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3	-	-	-	-	-	-	-	3	2	1	-	-	

7) 학력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604	38	-	-	33	-	-	5	563	329	5	226	3	3
2017	34	2	-	-	2	-	-	-	32	15	-	17		-
2016	17	2	-	-	2	-	-	-	15	10	-	5		-
2015	19	1	-	-	1	-	-	-	18	12	-	6		-
2014	36	1	-	-	1	-	-	-	35	22	-	13		-
2013	130	4	-	-	4	-	-	-	124	110	1	13		2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329	50	2	2	5	-	-	36	222	9	2	1	226	27	60	139
2017	15	6	-	1	-	-	-	1	7	-	-	-	17	2	7	8
2016	10	3	-	-	1	-	-	-	6	-	-	-	5	3	1	1
2015	12	1	-	-	-	-	-	6	5	-	-	-	6	2	2	2
2014	22	5	-	-	-	-	-	4	12	1	-	-	13	2	6	5
2013	110	5	-	-	2	-	-	19	83	1	-	-	13	3	9	1

[표 3-2-3-27] 2017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34</b>	<b>2</b>	-	-	<b>2</b>	-	-	-	<b>32</b>	<b>15</b>	-	<b>17</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20	1	-	-	1	-	-	-	19	6	-	13	-
	모집	4	-	-	-	-	-	-	-	4	1	-	3	-
	채용	8	1	-	-	1	-	-	-	7	1	-	6	-
	배치	-	-	-	-	-	-	-	-	-	-	-	-	-
	교육	4	-	-	-	-	-	-	-	4	2	-	2	-
	승진	-	-	-	-	-	-	-	-	-	-	-	-	-
	임금지급	3	-	-	-	-	-	-	-	3	2	-	1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
	자금음자	-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
	퇴직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기타	1	-	-	-	-	-	-	-	1	-	-	1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5	1	-	-	1	-	-	-	4	3	-	1	-
	용역의 공급 이용	3	1	-	-	1	-	-	-	2	2	-	-	-
	재화의 공급 이용	1	-	-	-	-	-	-	-	1	1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	-	1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3	-	-	-	-	-	-	-	3	1	-	2	-
	교육시설의 이용	3	-	-	-	-	-	-	-	3	1	-	2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
기타	6	-	-	-	-	-	-	-	6	5	-	1	-	

8) 병력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99	37	-	-	25	-	-	12	355	267	-	87	1	7
2017	24	4	-	-	4	-	-	-	20	16	-	4		-
2016	23	1	-	-	1	-	-	-	22	14	-	8		-
2015	13	2	-	-	2	-	-	-	10	9	-	1		1
2014	33	1	-	-	-	-	-	1	31	25	-	6		1
2013	43	3	-	-	1	-	-	2	35	28	-	7		5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67	27	-	5	9	7	-	5	213	1	-	-	87	25	44	18
2017	16	1	-	-	1	2	-	2	9	1	-	-	4	2	2	-
2016	14	6	-	1	1	-	-	-	6	-	-	-	8	2	4	2
2015	9	1	-	-	-	-	-	-	8	-	-	-	1	-	1	-
2014	25	4	-	-	-	1	-	-	20	-	-	-	6	2	2	2
2013	28	2	-	-	-	-	-	2	24	-	-	-	7	3	3	1

[표 3-2-3-30] 2017년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24</b>	<b>4</b>	-	-	<b>4</b>	-	-	-	<b>20</b>	<b>16</b>	-	<b>4</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6	3	-	-	3	-	-	-	13	13	-	-
	모집	2	-	-	-	-	-	-	-	2	2	-	-
	채용	5	3	-	-	3	-	-	-	2	2	-	-
	배치	2	-	-	-	-	-	-	-	2	2	-	-
	교육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자금음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3	-	-	-	-	-	-	-	3	3	-	-
	해고	2	-	-	-	-	-	-	-	2	2	-	-
기타	2	-	-	-	-	-	-	-	2	2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4	-	-	-	-	-	-	-	4	1	-	3
	용역의 공급 이용	1	-	-	-	-	-	-	-	1	-	-	1
	재화의 공급 이용	2	-	-	-	-	-	-	-	2	-	-	2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1	-	-	-	-	-	-	-	1	1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1	-	-	-	-	-	-	-	1	-	-	1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	1	-	-	1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3	1	-	-	1	-	-	-	2	2	-	-	

### 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08	11	-	-	10	-	-	1	195	147	1	47	-	2
2017	14	-	-	-	-	-	-	-	14	7	-	7	/	-
2016	7	-	-	-	-	-	-	-	7	3	-	4	/	-
2015	11	-	-	-	-	-	-	-	11	8	-	3	/	-
2014	13	-	-	-	-	-	-	-	12	10	-	2	/	1
2013	22	-	-	-	-	-	-	-	22	18	1	3	/	-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47	31	-	2	2	8	-	2	102	-	-	-	47	18	22	7
2017	7	3	-	-	-	1	-	-	3	-	-	-	7	3	4	-
2016	3	-	-	-	-	1	-	-	2	-	-	-	4	1	3	-
2015	8	3	-	-	-	1	-	-	4	-	-	-	3	3	-	-
2014	10	2	-	-	-	-	-	-	8	-	-	-	2	-	1	1
2013	18	3	-	-	-	-	-	-	15	-	-	-	3	-	2	1

[표 3-2-3-33] 2017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14</b>	-	-	-	-	-	-	-	<b>14</b>	<b>7</b>	-	<b>7</b>	-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1	-	-	-	-	-	-	11	5	-	6	-
	모집	1	-	-	-	-	-	-	1	1	-	-	-
	채용	3	-	-	-	-	-	-	3	3	-	-	-
	배치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승진	1	-	-	-	-	-	-	1	-	-	1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3	-	-	-	-	-	-	3	-	-	3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1	-	-	-	-	-	-	1	1	-	-	-
	해고	2	-	-	-	-	-	-	2	-	-	2	-
기타	-	-	-	-	-	-	-	-	-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	-	-	-	-	-	-	-	-	-	-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	-	-	-	-	-	-	-	-	-	-	-
	교육시설의 이용	-	-	-	-	-	-	-	-	-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3	-	-	-	-	-	-	3	2	-	1	-	

## 10) 사회적 신분

[표 3-2-3-34] 사회적 신분<sup>46)</sup>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개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021	150	-	3	133	-	-	14	1,864	1,312	14	533	5	7
2017	167	4	-	1	1	-	-	2	163	110	-	53		-
2016	73	4	-	-	3	-	-	1	69	46	1	22		-
2015	103	3	-	-	3	-	-	-	99	77	-	22		1
2014	172	3	-	-	2	-	-	1	168	118	-	50		1
2013	179	21	-	-	19	-	-	2	154	114	-	40		4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개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312	299	13	19	23	71	5	83	775	16	6	2	533	107	347	79
2017	110	37	1	-	2	6	1	23	40	-	-	-	53	9	27	17
2016	46	9	-	-	2	3	-	-	32	-	-	-	22	1	15	6
2015	77	11	-	4	3	5	-	6	47	1	-	-	22	3	16	3
2014	118	28	5	2	2	3	-	6	70	-	1	1	50	10	37	3
2013	114	25	1	1	1	7	1	10	67	1	-	-	40	14	20	6

46) 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질의회신집, 2005.)라고 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은 출생에 의하여 고정된 생래의 신분에 한정하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도 포함된다.

[표 3-2-3-36] 2017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167</b>	<b>4</b>	<b>-</b>	<b>1</b>	<b>1</b>	<b>-</b>	<b>-</b>	<b>2</b>	<b>163</b>	<b>110</b>	<b>-</b>	<b>53</b>	<b>-</b>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29	2	-	1	1	-	-	-	127	92	-	35	-
	모집	3	-	-	-	-	-	-	-	3	1	-	2	-
	채용	7	-	-	-	-	-	-	-	7	5	-	2	-
	배치	3	-	-	-	-	-	-	-	3	2	-	1	-
	교육	2	-	-	-	-	-	-	-	2	-	-	2	-
	승진	4	-	-	-	-	-	-	-	4	3	-	1	-
	임금지급	55	1	-	-	1	-	-	-	54	39	-	15	-
	임금외 금품지급	9	-	-	-	-	-	-	-	9	6	-	3	-
	자금응자	-	-	-	-	-	-	-	-	-	-	-	-	-
	정년	1	-	-	-	-	-	-	-	1	1	-	-	-
	퇴직	7	-	-	-	-	-	-	-	7	6	-	1	-
	해고	11	1	-	1	-	-	-	-	10	8	-	2	-
기타	27	-	-	-	-	-	-	-	27	21	-	6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25	2	-	-	-	-	-	2	23	10	-	13	-
	용역의 공급 이용	11	2	-	-	-	-	-	2	9	6	-	3	-
	재화의 공급 이용	11	-	-	-	-	-	-	11	4	-	7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3	-	-	-	-	-	-	3	-	-	3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3	-	-	-	-	-	-	3	2	-	1	-	
	교육시설의 이용	3	-	-	-	-	-	-	3	2	-	1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	-	-	-	-	-	-	-	-	-	-	-	
기타	10	-	-	-	-	-	-	10	6	-	4	-		

## 11) 기타사유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3,429	169	-	4	154	-	-	11	3,250	2,456	30	756	8	10
2017	378	14	-	3	11	-	-	-	364	302	-	62	/	-
2016	212	4	-	1	3	-	-	-	208	150	2	56	/	-
2015	340	6	-	-	5	-	-	1	333	273	-	60	/	1
2014	252	12	-	-	9	-	-	3	234	167	-	67	/	6
2013	323	30	-	-	29	-	-	1	292	210	6	76	/	1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456	884	28	22	70	186	8	111	1,071	64	8	4	756	131	515	110
2017	302	195	2	1	8	10	-	21	61	2	-	2	62	13	39	10
2016	150	61	3	1	-	8	2	-	74	-	1	-	56	14	28	14
2015	273	147	-	4	-	12	3	6	100	1	-	-	60	5	48	7
2014	167	53	3	2	2	13	-	6	83	3	1	1	67	19	44	4
2013	210	69	4	1	7	21	-	22	83	3	-	-	76	19	42	15

[표 3-2-3-39] 2017년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378</b>	<b>14</b>	<b>-</b>	<b>3</b>	<b>11</b>	<b>-</b>	<b>-</b>	<b>-</b>	<b>364</b>	<b>302</b>	<b>-</b>	<b>62</b>	<b>-</b>	
고용에서의 차별	소계	185	8	-	2	6	-	-	-	177	140	-	37	-
	모집	13	1	-	-	1	-	-	-	12	4	-	8	-
	채용	22	3	-	-	3	-	-	-	19	14	-	5	-
	배치	6	1	-	-	1	-	-	-	5	1	-	4	-
	교육	2	-	-	-	-	-	-	-	2	2	-	-	-
	승진	15	2	-	1	1	-	-	-	13	10	-	3	-
	임금지급	52	-	-	-	-	-	-	-	52	41	-	11	-
	임금외 금품지급	12	-	-	-	-	-	-	-	12	8	-	4	-
	자금용자	-	-	-	-	-	-	-	-	-	-	-	-	-
	정년	1	-	-	-	-	-	-	-	1	1	-	-	-
	퇴직	9	-	-	-	-	-	-	-	9	9	-	-	-
	해고	10	-	-	-	-	-	-	-	10	10	-	-	-
기타	43	1	-	1	-	-	-	-	42	40	-	2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계	61	1	-	1	-	-	-	-	60	47	-	13	-
	용역의 공급 이용	12	-	-	-	-	-	-	-	12	8	-	4	-
	재화의 공급 이용	35	-	-	-	-	-	-	-	35	29	-	6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2	-	-	-	-	-	-	-	2	1	-	1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8	1	-	1	-	-	-	-	7	5	-	2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4	-	-	-	-	-	-	-	4	4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계	11	-	-	-	-	-	-	-	11	11	-	-	-
	교육시설의 이용	10	-	-	-	-	-	-	-	10	10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1	-	-	-	-	-	-	-	1	1	-	-	-
기타	121	5	-	-	5	-	-	-	116	104	-	12	-	

####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333	463	1	28	188	1	19	226	1,838	1,518	16	281	23	32
2017	236	34	-	10	14	-	6	4	202	164	-	38		-
2016	173	29	1	4	15	1	4	4	144	121	2	21		-
2015	192	19	-	-	5	-	2	12	169	136	-	33		4
2014	236	48	-	-	21	-	2	25	179	141	1	37		9
2013	245	34	-	2	9	-	-	23	204	164	-	40		7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518	114	9	56	42	182	6	5	1,092	6	1	5	281	134	105	42
2017	164	36	-	9	4	23	-	1	90	1	-	-	38	20	11	7
2016	121	10	1	3	3	15	-	-	85	2	-	2	21	8	8	5
2015	136	11	2	5	4	21	-	-	92	-	-	1	33	18	11	4
2014	141	13	1	4	8	17	-	-	97	-	-	1	37	14	16	7
2013	164	7	2	4	3	17	-	1	129	1	-	-	40	22	12	6

[표 3-2-3-42] 2017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개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개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236</b>	<b>34</b>	<b>-</b>	<b>10</b>	<b>14</b>	<b>-</b>	<b>6</b>	<b>4</b>	<b>202</b>	<b>164</b>	<b>-</b>	<b>38</b>	<b>-</b>
고용에서의 차별	소개	3	1	-	1	-	-	-	2	2	-	-	-
	모집	-	-	-	-	-	-	-	-	-	-	-	-
	채용	-	-	-	-	-	-	-	-	-	-	-	-
	배치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승진	-	-	-	-	-	-	-	-	-	-	-	-
	임금지급	-	-	-	-	-	-	-	-	-	-	-	-
	임금외 금품지급	-	-	-	-	-	-	-	-	-	-	-	-
	자금용자	-	-	-	-	-	-	-	-	-	-	-	-
	정년	-	-	-	-	-	-	-	-	-	-	-	-
	퇴직	1	-	-	-	-	-	-	1	1	-	-	-
	해고	-	-	-	-	-	-	-	-	-	-	-	-
기타	2	1	-	1	-	-	-	1	1	-	-	-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에서의 차별	소개	-	-	-	-	-	-	-	-	-	-	-	-
	용역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재화의 공급 이용	-	-	-	-	-	-	-	-	-	-	-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	-	-	-	-	-	-	-	-	-	-	-
	토지의 공급이용	-	-	-	-	-	-	-	-	-	-	-	-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소개	2	1	-	1	-	-	-	1	1	-	-	-
	교육시설의 이용	1	-	-	-	-	-	-	1	1	-	-	-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	1	1	-	1	-	-	-	-	-	-	-	-
기타	231	32	-	8	14	-	6	4	199	161	-	38	-

## 5. 장애차별<sup>47)</sup> 진정 처리결과

[표 3-2-3-43]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11,163	833	2	5	433	11	6	376	10,326	6,039	49	4,226	12	4
2017	1,084	91	-	-	67	1	2	21	993	628	4	361		-
2016	1,640	51	-	3	19	-	-	29	1,589	1,199	7	383		-
2015	1,085	36	-	-	14	-	3	19	1,049	663	6	380		-
2014	1,096	79	-	1	15	2	-	61	1,014	560	5	449		3
2013	1,563	108	-	-	27	1	1	79	1,455	755	1	699		-

[표 3-2-3-44]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6,039	970	31	121	79	144	10	62	4,514	92	6	10	4,226	610	1,114	2,502
2017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361	81	113	167
2016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383	66	119	198
2015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380	62	139	179
2014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449	86	123	240
2013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833	57	61	541	38	13	84	39
2017	91	5	10	34	24	-	12	6
2016	51	3	2	39	-	-	6	1
2015	36	7	1	18	-	-	8	2
2014	79	8	10	33	1	8	12	7
2013	108	4	6	78	2	-	8	10

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 4. 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한다.

[표 3-2-3-46] 2017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b>합 계</b>	<b>1,084</b>	<b>91</b>	-	-	<b>67</b>	<b>1</b>	<b>2</b>	<b>21</b>	<b>993</b>	<b>628</b>	<b>4</b>	<b>361</b>	-	
고용	모집·채용	24	1	-	-	1	-	-	23	12	-	11	-	
	임금·복지후생	12	-	-	-	-	-	-	12	10	-	2	-	
	배치	10	1	-	-	-	-	-	9	8	-	1	-	
	승진	1	-	-	-	-	-	-	1	1	-	-	-	
	직무관련	4	-	-	-	-	-	-	4	4	-	-	-	
	퇴직·해고	15	2	-	-	1	-	-	13	9	-	4	-	
	교육	4	-	-	-	-	-	-	4	3	-	1	-	
	기타	7	1	-	-	1	-	-	6	5	-	1	-	
교육	전·입학거부	10	-	-	-	-	-	-	10	9	-	1	-	
	시설물접근·이용	2	-	-	-	-	-	-	2	1	-	1	-	
	수업·시험 편의제공	25	-	-	-	-	-	-	25	18	-	7	-	
	수업등교내활동배제	12	5	-	-	4	-	1	7	5	-	2	-	
	특수학급설치	2	-	-	-	-	-	-	2	1	-	1	-	
	괴롭힘	5	-	-	-	-	-	-	5	4	-	1	-	
	기타	37	5	-	-	5	-	-	32	13	-	19	-	
재화· 용역	재화·용역	186	5	-	-	2	-	-	3	181	97	1	83	-
	보험·금융	50	4	-	-	1	-	-	3	46	29	-	17	-
	시설물접근	116	5	-	-	4	-	-	1	111	80	-	31	-
	이동교통수단	75	16	-	-	15	-	-	1	59	30	-	29	-
	정보접근·의사소통	180	1	-	-	-	-	-	1	179	110	-	69	-
	문화·예술·체육	4	2	-	-	1	-	-	1	2	2	-	-	-
	기타	24	1	-	-	1	-	-	-	23	14	-	9	-
사법행정	51	24	-	-	24	-	-	-	27	14	-	13	-	
참정권	4	-	-	-	-	-	-	-	4	2	-	2	-	
괴롭힘 인	따돌림	3	-	-	-	-	-	-	-	3	3	-	-	-
	유기·방치	3	-	-	-	-	-	-	-	3	1	-	2	-
	성폭행	1	-	-	-	-	-	-	-	1	1	-	-	-
	폭행·학대	22	5	-	-	-	1	1	3	17	16	-	1	-
	금전착취	9	-	-	-	-	-	-	-	9	7	1	1	-
	모욕·비하	42	7	-	-	2	-	-	5	35	31	-	4	-
	기타	6	-	-	-	-	-	-	-	6	3	-	3	-
기타	138	6	-	-	5	-	-	1	132	85	2	45	-	

##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2,264	27	-	-	22	-	-	-	5	2,166	2,062	15	86	3	71
2017	52	-	-	-	-	-	-	-	-	52	50	2	-	-	-
2016	34	-	-	-	-	-	-	-	-	34	33	1	-	-	-
2015	83	-	-	-	-	-	-	-	-	12	11	1	-	-	71
2014	15	-	-	-	-	-	-	-	-	15	14	1	-	-	-
2013	119	-	-	-	-	-	-	-	-	119	118	-	1	-	-
2012	90	-	-	-	-	-	-	-	-	90	87	-	3	-	-
2011	39	-	-	-	-	-	-	-	-	39	36	-	3	-	-
2010	26	-	-	-	-	-	-	-	-	26	26	-	-	-	-
2009	20	-	-	-	-	-	-	-	-	20	19	1	-	-	-
2008	35	-	-	-	-	-	-	-	-	35	35	-	-	-	-
2007	54	1	-	-	1	-	-	-	-	53	52	-	1	-	-
2006	57	-	-	-	-	-	-	-	-	57	51	-	6	-	-
2005	381	11	-	-	6	-	-	-	5	370	348	6	13	3	-
2004	505	10	-	-	10	-	-	-	-	495	459	3	33	-	-
2003	364	3	-	-	3	-	-	-	-	361	341	-	20	-	-
2002	390	2	-	-	2	-	-	-	-	388	382	-	6	-	-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 건)

구 분	각하												기각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3항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2,062	1,445	94	5	82	128	-	26	221	39	22	-	86	24	48	14
2017	50	41	1	-	-	2	-	-	6	-	-	-	-	-	-	-
2016	33	18	1	-	1	-	-	-	13	-	-	-	-	-	-	-
2015	11	6	-	-	-	-	-	-	5	-	-	-	-	-	-	-
2014	14	9	1	1	-	-	-	-	3	-	-	-	-	-	-	-
2013	118	109	-	-	1	2	-	-	6	-	-	-	1	1	-	-
2012	87	67	3	-	1	-	-	10	6	-	-	-	3	-	2	1
2011	36	31	2	-	-	-	-	1	2	-	-	-	3	2	1	-
2010	26	20	3	-	-	-	-	-	3	-	-	-	-	-	-	-
2009	19	16	2	-	1	-	-	-	-	-	-	-	-	-	-	-
2008	35	30	3	-	-	-	-	1	1	-	-	-	-	-	-	-
2007	52	45	3	-	-	1	-	-	3	-	-	-	1	-	1	-
2006	51	31	3	-	2	2	-	4	3	6	-	-	6	1	5	-
2005	348	248	25	1	14	15	-	4	26	13	2	-	13	3	5	5
2004	459	293	19	1	23	35	-	5	65	13	5	-	33	9	21	3
2003	341	200	19	1	24	32	-	-	47	6	12	-	20	4	12	4
2002	382	281	9	1	15	39	-	1	32	1	3	-	6	4	1	1

## 제4절 조사·구제

### 1. 권리구제율

[표 3-3-1] 조사중 해결<sup>48)</sup> 및 구제율<sup>49)</sup>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처리 건수 (A)	권리 구제					권리구제율(%) B/A
		합계 (B)	인용	조사중 해결			
				소계	각하	기각	
누 계	118,908	17,967	6,409	11,558	8,433	3,125	15.1
2017	10,999	1,601	473	1,128	830	298	14.6
2016	10,868	1,462	447	1,015	724	291	13.5
2015	10,894	1,286	495	791	520	271	11.8
2014	10,331	1,212	491	721	449	272	11.7
2013	10,427	1,380	576	804	398	406	13.2
2012	9,580	1,205	480	725	397	328	12.6
2011	7,085	1,231	532	699	407	292	17.4
2010	8,392	1,523	538	985	679	306	18.1
2009	6,788	1,620	534	1,086	822	264	23.9
2008	6,466	1,556	427	1,129	974	155	24.1
2007	6,064	1,730	392	1,338	1,213	125	28.5
2006	4,206	1,214	355	859	786	73	28.9
2005	5,350	595	317	278	234	44	11.1
2004	5,804	181	181	-	-	-	3.1
2003	3,797	130	130	-	-	-	3.4
2002	1,856	40	40	-	-	-	2.2
2001	1	1	1	-	-	-	100.0

48)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진정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다.

49) '구제율'은 2011.11.28.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논의 시 결정한 사항이다.

## 2. 권고수용현황<sup>50)</sup>

[표 3-3-2] 연도별 누적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2017	3,771	3,593	2,717	540	336	178	90.6
2016	3,414	3,225	2,417	485	323	189	90.0
2015	3,165	3,063	2,261	483	319	102	89.6
2014	2,987	2,914	2,136	465	313	73	89.3
2013	2,845	2,750	1,996	448	306	95	88.9

※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은 2002년부터 각 연도별 12월 31일 누계기준(위원회 전반기 통계를 정립한 2012년도부터 실시)

[표 3-3-3]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b>합 계</b>	<b>3,771</b>	<b>3,593</b>	<b>2,717</b>	<b>540</b>	<b>336</b>	<b>178</b>	<b>90.6</b>
2017	357	201	150	46	5	156	97.5
2016	249	227	207	10	10	22	95.6
2015	173	173	165	8	0	0	100.0
2014	142	142	117	15	10	0	93.0
2013	217	217	160	49	8	0	96.3
2012	329	329	177	130	22	0	93.3
2011	321	321	270	29	22	0	93.1
2010	305	305	242	26	37	0	87.9
2009	319	319	198	13	108	0	66.1
2008	335	335	227	76	32	0	90.4
2007	276	276	209	40	27	0	90.2
2006	281	281	183	65	33	0	88.3
2005	224	224	205	12	7	0	96.9
2004	112	112	97	5	10	0	91.1
2003	95	95	89	1	5	0	94.7
2002	36	36	21	15	0	0	100.0

50)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진정사건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한다.

[표 3-3-4] 2017년 피권고기관별<sup>51)</sup>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382	197	179	6	12	185	93.9
검찰	7	3	3	-	-	4	100.0
경찰	24	16	15	1	-	8	100.0
군	12	9	9	-	-	3	100.0
사법기관	-	-	-	-	-	-	-
입법기관	-	-	-	-	-	-	-
기타국가기관	43	23	21	2	-	20	100.0
공직유관단체	22	9	9	-	-	13	100.0
지방자치단체	101	47	45	1	1	54	97.9
각급학교	35	17	15	1	1	18	94.1
구급시설	6	4	4	-	-	2	100.0
출입국관리기관	1	-	-	-	-	1	-
다수인보호시설	65	38	37	1	-	27	100.0
공공기관	-	-	-	-	-	-	-
교육기관	14	8	7	-	1	6	87.5
개인회사	-	-	-	-	-	0	-
사법인	20	12	6	-	6	8	50.0
단체	3	1	-	-	1	2	0.0
사인	21	4	4	-	-	17	100.0
기타	8	6	4	-	2	2	66.7

51) 진정사건 1건별 권고 수용 현황이 아닌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이다. 진정사건 권고 1건에 피권고기관이 1개 이상인 경우를 감안하여 피권고기관별 수용 현황을 파악한 통계이다.

## 1)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2,355	2,247	1,846	254	147	108	93.5
2017	210	112	103	7	2	98	98.2
2016	179	169	165	3	1	10	99.4
2015	133	133	127	6	-	-	100.0
2014	78	78	70	7	1	-	98.7
2013	115	115	103	7	5	-	95.7

[표 3-3-6]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275	151	142	5	4	124	97.4
검찰	7	3	3	-	-	4	100.0
경찰	24	16	15	1	-	8	100.0
군	10	9	9	-	-	1	100.0
사법기관	-	-	-	-	-	-	-
기타국가기관	-	-	-	-	-	-	-
공직유관단체	26	13	12	1	-	13	100.0
지방자치단체	10	5	5	-	-	5	100.0
각급학교	86	42	40	1	1	44	97.6
구급시설	35	17	15	1	1	18	94.1
출입국관리기관	6	4	4	-	-	2	100.0
다수인보호시설	1	-	-	-	-	1	-
기타	65	38	37	1	-	27	100.0

## 2)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누 계	1,394	1,324	853	284	187	70	85.9
2017	147	89	47	39	3	58	96.6
2016	70	58	42	7	9	12	84.5
2015	40	40	38	2	-	-	100.0
2014	64	64	47	8	9	-	85.9
2013	102	102	57	42	3	-	97.1

[표 3-3-8] 2017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107	46	37	1	8	61	82.6
군대	2	-	-	-	-	2	-
기타국가기관	17	10	9	1	-	7	100.0
공직유관단체	12	4	4	-	-	8	100.0
지방자치단체	15	5	5	-	-	10	100.0
교육기관	14	8	7	-	1	6	87.5
개인회사	-	-	-	-	-	-	-
사법인	20	12	6	-	6	8	50.0
단체	3	1	-	-	1	2	0.0
사인	21	4	4	-	-	17	100.0
기타	3	2	2	-	-	1	100.0

### 3)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22	22	18	2	2	-	90.9
2017	-	-	-	-	-	-	-
2016	-	-	-	-	-	-	-
2015	-	-	-	-	-	-	-
2014	-	-	-	-	-	-	-
2013	-	-	-	-	-	-	-

### 3. 긴급구제<sup>52)</sup>

[표 3-3-10] 긴급구제 결정 및 결정 내용

(단위 : 건)

구 분	상정건수	처리결과		계	긴급구제 결정 내용						
		긴급구제 결정 <sup>53)</sup>	부 결		법 제48조제1항 <sup>54)</sup>						법 제48조 제2항 <sup>55)</sup>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누 계	48	16	32	16	7	-	1	4	2	1	1
2017	1	1	-	1	-	-	1	-	-	-	-
2016	-	-	-	-	-	-	-	-	-	-	-
2015	2	-	2	-	-	-	-	-	-	-	-
2014	2	-	2	-	-	-	-	-	-	-	-
2013	3	1	2	1	-	-	-	1	-	-	-
2012	2	1	1	1	-	-	-	-	-	1	-
2011	2	-	2	-	-	-	-	-	-	-	-
2010	6	1	5	1	1	-	-	-	-	-	-
2009	6	3	3	3	1	-	-	1	1	-	-
2008	7	3	4	3	-	-	-	1	1	-	1
2007	7	-	7	-	-	-	-	-	-	-	-
2006	3	1	2	1	-	-	-	1	-	-	-
2005	1	1	-	1	1	-	-	-	-	-	-
2004	1	-	1	-	-	-	-	-	-	-	-
2003	2	2	-	2	2	-	-	-	-	-	-
2002	3	2	1	2	2	-	-	-	-	-	-

※ 2013. 4. 4. 긴급구제 처리 절차와 기준 상임위 보고, 2013. 6. 1.부터 긴급구제사건 분리

- 52) 법 제48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53)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의 긴급구제 건수(10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정 처리결과를 진정 본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한 4건[2006년 1건(44조 권고), 2008년 1건(각하), 2009년 2건(44조 권고)]과 긴급구제 처리 절차와 기준(2013. 6. 1. 시행)에 따라 긴급구제 사건번호를 진정과 별도로 부여받은 2건이다.
- 54)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5)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표 3-3-11]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단위 : 건, %)

구 분	파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 <sup>56)</sup>
			90일 이내(C)	90일 초과		
합 계	1,853	72	1,313	434	35	73.7
2017	382	72	207	74	29	66.8
2016	371	0	260	105	6	70.1
2015	287	0	221	66	0	77.0
2014	241	0	179	62	0	74.3
2013	280	0	216	64	0	77.1

※ 법 제44조 제2항<sup>57)</sup> 2012. 3. 21.개정

56) 90일 이내 회신율 =  $\left( \frac{90\text{일내 회신건수}}{\text{파권고기관수} - \text{검토중}(90\text{일내})\text{건수}} \right) * 100$

57)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 직권조사<sup>58)</sup>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252	245	177	5	137	28	6	1	68	7	61
2017	10	7	7	1	5	1	-	-	-	-	-
2016	11	12	12	-	5	6	1	-	-	-	-
2015	9	15	14	1	13	-	-	-	1	-	1
2014	14	5	5	-	3	2	-	-	-	-	-
2013	11	13	13	-	8	5	-	-	-	-	-
2012	14	15	11	1	7	3	-	-	4	-	4
2011	16	18	13	1	9	2	1	-	5	-	5
2010	10	3	3	-	2	1	-	-	-	-	-
2009	3	5	5	-	3	2	-	-	-	-	-
2008	17	18	14	-	12	-	2	-	4	-	4
2007	5	6	5	-	5	-	-	-	1	-	1
2006	9	83	35	-	31	3	1	-	48	7	41
2005	84	41	37	-	33	3	-	1	4	-	4
2004	37	3	2	1	-	-	1	-	1	-	1
2003	-	-	-	-	-	-	-	-	-	-	-
2002	2	1	1	-	1	-	-	-	-	-	-

58) 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sup>59)</sup>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142	137	78	56	3	5	97.8
2017	5	1	1	-	-	4	100.0
2016	6	6	6	-	-	-	100.0
2015	13	13	5	8	-	-	100.0
2014	3	3	2	1	-	-	100.0
2013	7	6	4	2	-	1	100.0
2012	7	7	5	2	-	-	100.0
2011	10	10	9	1	-	-	100.0
2010	2	2	2	-	-	-	100.0
2009	3	3	2	1	-	-	100.0
2008	14	14	10	3	1	-	92.9
2007	5	5	-	4	1	-	80.0
2006	32	32	29	2	1	-	96.9
2005	33	33	1	32	-	-	100.0
2004	1	1	1	-	-	-	100.0
2003	-	-	-	-	-	-	-
2002	1	1	1	-	-	-	100.0

[표 3-4-3] 2017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11	1	1	-	-	10	100.0
검찰	1	-	-	-	-	1	-
경찰	1	-	-	-	-	1	-
기타국가기관	2	1	1	-	-	1	100.0
지방자치단체	1	-	-	-	-	1	-
각급학교	1	-	-	-	-	1	-
다수인보호시설	3	-	-	-	-	3	-
기타	2	-	-	-	-	2	-

59) 권고수용현황 작성대상은 권고(법 제25조 내지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표명(13-직권-0001600)의 경우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회신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의 권고와 징계권고, 긴급구제 조치 건수의 합(143건)과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의 권고건수(142건)와 1건의 차이가 있음.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에도 같은 사유 적용

## 1) 인권침해 직권조사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중종결
누 계	130	124	118	3	92	19	4	-	6	-	6
2017	9	7	7	1	5	1	-	-	-	-	-
2016	10	9	9	-	2	6	1	-	-	-	-
2015	6	12	12	1	11	-	-	-	-	-	-
2014	10	2	2	-	1	1	-	-	-	-	-
2013	5	7	7	-	5	2	-	-	-	-	-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96	92	40	52	-	4	100.0
2017	5	1	1	-	-	4	100.0
2016	3	3	3	-	-	-	100.0
2015	11	11	4	7	-	-	100.0
2014	1	1	1	-	-	-	100.0
2013	5	5	3	2	-	-	100.0

[표 3-4-6] 2017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11	1	1	-	-	10	100.0
검찰	1	-	-	-	-	1	-
경찰	1	-	-	-	-	1	-
기타국가기관	2	1	1	-	-	1	100.0
지방자치단체	1	-	-	-	-	1	-
각급학교	1	-	-	-	-	1	-
다수인보호시설	3	-	-	-	-	3	-
기타	2	-	-	-	-	2	-

## 2) 차별행위 직권조사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 종종결
누 계	122	121	59	2	45	9	2	1	62	7	55
2017	1	-	-	-	-	-	-	-	-	-	-
2016	1	3	3	-	3	-	-	-	-	-	-
2015	3	3	2	-	2	-	-	-	1	-	1
2014	4	3	3	-	2	1	-	-	-	-	-
2013	6	6	6	-	3	3	-	-	-	-	-

※ 2013년 권고 3건 중 1건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견표명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46	45	38	4	3	1	93.3
2017	-	-	-	-	-	-	-
2016	3	3	3	-	-	-	100.0
2015	2	2	1	1	-	-	100.0
2014	2	2	1	1	-	-	100.0
2013	2	1	1	-	-	1	100.0

[표 3-4-9] 2017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 계	-	-	-	-	-	-	-

## 2. 방문조사<sup>60)</sup>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정 건수	종결 건수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통보	직권조사의결	수사의뢰
누 계	75	74	36	7	30	-	1
2017	9	9	4	2	3	-	-
2016	8	12	8	2	2	-	-
2015	8	4	1	1	2	-	-
2014	5	6	4	-	2	-	-
2013	5	4	2	-	2	-	-
2012	5	6	4	-	2	-	-
2011	7	5	4	-	-	-	1
2010	4	6	3	-	3	-	-
2009	8	9	4	2	3	-	-
2008	6	3	1	-	2	-	-
2007	5	5	1	-	4	-	-
2006	3	3	-	-	3	-	-
2005	2	2	-	-	2	-	-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개(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누 계	36	31	21	10	-	5	100.0
2017	4	1	1	-	-	3	100.0
2016	8	6	4	2	-	2	100.0
2015	1	1	1	-	-	-	100.0
2014	4	4	3	1	-	-	100.0
2013	2	2	2	-	-	-	100.0
2012	4	4	2	2	-	-	100.0
2011	4	4	3	1	-	-	100.0
2010	3	3	1	2	-	-	100.0
2009	4	4	3	1	-	-	100.0
2008	1	1	-	1	-	-	100.0
2007	1	1	1	-	-	-	100.0

60) 법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표 3-4-12] 2017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단위 : 건, %)

구 분	피권고 기관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 (C)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합 계	4	1	1	-	-	3	100.0
경찰청	1	-	-	-	-	1	-
국방부	1	1	1	-	-	-	100.0
법무부	1	-	-	-	-	1	-
보건복지부	1	-	-	-	-	1	-

[표 3-4-13] 구금·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건, 개소)

구 분	결정 건수	방문조사 대상 시설수					
		합계	교도소 등	경찰서 유치장 등	군 영창 등	외국인 보호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누 계	75	386	71	56	32	46	181
2017	9	80	8	6	6	6	54
2016	8	37	4	7	9	2	15
2015	8	24	6	-	1	3	14
2014	5	27	1	10	-	3	13
2013	5	35	-	-	8	5	22
2012	5	18	4	6	-	3	5
2011	7	14	4	-	2	3	5
2010	4	38	13	18	-	4	3
2009	8	23	3	3	1	4	12
2008	6	23	6	2	2	4	9
2007	5	27	10	2	3	9	3
2006	3	27	10	2	-	-	15
2005	2	13	2	-	-	-	11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sup>61)</sup>별 방문조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 보건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 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누 계	184	35	3	73	24	39	2	8	-
2017	54	7	-	18	14	15	-	-	-
2016	15	3	-	3	4	5	-	-	-
2015	14	-	-	11	-	3	-	-	-
2014	13	5	-	8	-	-	-	-	-
2013	22	11	-	11	-	-	-	-	-
2012	5	-	-	5	-	-	-	-	-
2011	5	-	1	1	-	3	-	-	-
2010	3	-	-	-	-	3	-	-	-
2009	15	-	-	4	-	3	-	8	-
2008	9	2	-	7	-	-	-	-	-
2007	3	-	-	-	3	-	-	-	-
2006	15	5	-	5	-	5	-	-	-
2005	11	2	2	-	3	2	2	-	-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구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2017. 5. 30. 개정)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 복지시설

##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을 제고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고,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정보공유, 업무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인권교육

### 1. 인권교육 현황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누 계	횟수	22,628	3,054	2,189	12,355	2,920	2,110
	인원	1,591,700	145,009	53,421	918,287	343,273	131,710
2017	횟수	4,447	494	533	1,968	915	537
	인원	249,428	28,916	10,974	101,482	79,799	28,257
2016	횟수	4,247	734	380	1,760	828	545
	인원	242,147	33,953	5,930	96,302	71,434	34,528
2015	횟수	2,797	438	239	1,479	353	288
	인원	161,153	18,468	9,194	83,025	34,356	16,110
2014	횟수	2,503	334	206	1,506	288	169
	인원	180,558	14,325	4,926	110,080	34,744	16,483
2013	횟수	2,011	245	159	1,280	150	177
	인원	180,323	11,382	4,588	112,956	39,654	11,743
2012	횟수	1,456	214	119	858	109	156
	인원	140,867	10,456	2,204	90,727	21,550	15,930
2011	횟수	1,316	166	153	777	71	149
	인원	121,402	7,064	3,019	89,333	14,681	7,305
2010	횟수	1,137	177	88	739	65	68
	인원	90,917	6,518	1,726	71,297	10,538	838
2009	횟수	751	131	109	432	60	19
	인원	55,226	7,056	3,043	31,044	13,573	510
2008	횟수	828	45	66	684	31	2
	인원	63,264	2,643	1,972	46,249	12,394	6
2007	횟수	516	30	46	403	37	-
	인원	52,501	2,171	1,673	39,222	9,435	-
2006	횟수	226	20	34	160	12	-
	인원	15,356	1,197	991	12,195	973	-
2005	횟수	155	11	21	122	1	-
	인원	16,864	372	1,072	15,278	142	-
2004	횟수	89	6	23	60	-	-
	인원	7,161	180	1,224	5,757	-	-
2003	횟수	117	5	13	99	-	-
	인원	10,591	186	885	9,520	-	-
2002	횟수	32	4	-	28	-	-
	인원	3,942	122	-	3,820	-	-

## 2. 인권교육과정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인권강사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의무교육과정 <sup>62)</sup>		워크숍 등 <sup>63)</sup>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3,054	145,009	456	11,678	1962	103,649	446	21,728	189	7,907
2017	494	28,916	92	2,675	270	20,543	132	5,698	-	-
2016	734	33,953	142	3,632	417	21,400	175	8,921	-	-
2015	438	18,468	114	2,766	148	8,281	140	7,156	36	265
2014	334	14,325	28	601	287	13,393	-	-	19	331
2013	245	11,382	30	699	199	10,264	-	-	16	419

## 3. 인권특강

[표 4-1-3] 인권특강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12,355	918,287	3,417	306,546	5,949	455,666	2,989	156,075
2017	1,968	101,482	327	37,136	1,191	39,681	450	24,665
2016	1,760	96,302	254	28,793	888	42,401	618	25,108
2015	1,479	83,025	196	17,780	806	44,097	477	21,148
2014	1,506	110,080	279	27,958	801	52,196	426	29,926
2013	1,280	112,956	226	24,283	711	69,989	343	18,684

[표 4-1-4]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 횟수,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강 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12,355	918,287	5,736	487,706	2,474	154,561	1,447	81,219	1,973	150,723	713	42,716	12	1,362
2017	1,968	101,482	636	29,358	481	23,578	220	12,720	304	17,094	315	17,370	12	1,362
2016	1,760	96,302	629	30,784	369	20,826	146	7,022	337	18,995	279	18,675		
2015	1,479	83,025	627	38,475	331	19,832	180	7,353	229	11,085	112	6,280		
2014	1,506	110,080	499	34,830	373	26,637	238	12,712	389	35,510	7	391		
2013	1,280	112,956	530	52,602	262	17,254	165	9,968	323	33,132				

62) 정신보건시설(2009년), 노숙인시설(2012년)의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분류하여 별도 관리

63) 2017년부터 '워크숍 등'을 별도 분류하지 않고, '인권강사과정' 또는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에 포함

#### 4. 방문프로그램

[표 4-1-5]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 계	2,189	53,421	265	8,273	1,455	35,783	469	9,320
2017	533	10,974	63	1,551	273	4,624	197	4,799
2016	380	5,930	19	383	284	4,473	77	1,074
2015	239	9,194	16	420	175	7,916	48	858
2014	206	4,926	1	5	169	4,178	36	743
2013	159	4,588	5	82	126	4,060	28	446

[표 4-1-6]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합 계		본부		인권사무소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강 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2,189	53,421	628	17,474	215	3,635	531	13,396	637	15,289	178	3,627	-	-
2017	533	10,974	49	893	62	1,354	124	3,421	159	2,476	139	2,830	-	-
2016	380	5,930	80	1,529	36	500	73	1,132	161	2,352	30	417	/	/
2015	239	9,194	30	657	25	335	50	1,150	125	6,672	9	380	/	/
2014	206	4,926	25	759	29	401	54	1,881	98	1,885	-	-	/	/
2013	159	4,588	26	821	32	486	36	1,624	65	1,657	-	-	/	/

## 5. 사이버인권교육

[표 4-1-7] 대상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소계	공직자	교사	시민	기타
누계	343,273	137,663	103,062	66,142	36,406
2017	79,799	33,738	2,348	43,713	-
2016	71,434	46,226	13,066	8,297	3,845
2015	34,356	9,022	12,194	4,058	9082
2014	34,744	7,578	24,863	2,175	128
2013	39,654	9,944	24,372	5,338	-

[표 4-1-8]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b>합계</b>	<b>343,273</b>	<b>39,654</b>	<b>34,744</b>	<b>34,356</b>	<b>71,434</b>	<b>79,799</b>
경찰과 인권	1,908	-	-	42	1,560	306
군대와 인권	5,217	-	1,293	856	2,310	758
노인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5,246	-	-	35	353	4,858
사회복지와 인권	4,112	-	-	-	1,184	2,928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40,469	10,984	13,293	4,821	2,343	701
성차별예방	53,176	9,876	7,615	11,223	4,219	2,550
성희롱예방	26,580	-	-	2,559	8,102	15,919
세계인권선언	1,601	-	-	46	210	1,345
세계인권선언(어린이용)	108	-	-	-	44	6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5,545	-	-	64	4,503	978
이주민과 인권	1,759	-	-	82	1,237	440
인권의 이해	38,196	3,499	2,152	5,596	5,717	12,220
인권의 이해(심화)	4,643	612	321	343	870	-
장애인차별예방	14,474	-	-	-	-	14,47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17,578	2,320	1,094	1,380	4,043	6,099
장애인차별예방	51,426	8,407	6,222	4,383	15,168	1,855
정신장애인과 인권	7,992	-	-	186	1,671	6,135
차별예방	8,298	-	1,748	1,610	3,273	1,667
학교폭력예방	11,539	-	-	321	9,560	1,658
행정과 인권	18,844	2,350	1,006	809	5,055	4,844
별별이야기	12	-	-	-	12	-
기타	24,550 <sup>64)</sup>	1,606 <sup>65)</sup>	-	-	-	-

64) 사이버인권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통계를 관리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합은 기타에 포함

65) 2013년 기타는 신규 과목 테스트임.

### 제3절 국내외 협력

#### 1. 인권현장방문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단위 : 회, 기관수)

구 분	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방문횟수	150	5	9	7	12	8	12	10	9	19	11	13	12	10	7	6
기관수	174	5	9	7	14	8	12	10	9	21	16	20	18	12	7	6

#### 2. 보조금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단체수, 백만원)

구 분	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	지원단체수	311	23	26	20	33	30	32	33	15	16	15	14	15	15	14	10
	지원금액	2,550	200	150	150	275	275	275	275	130	130	115	115	115	115	115	115
국외 (APF)	지원단체수	13	-	-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원금액	1,3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표 4-2-3]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8	2	1	9	6	5	6	4	6	3	3	2	3	3	5
정책일반	4	-	-	-	2	1	-	-	-	-	-	-	-	-	1
북한인권	15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정보인권	3	-	-	-	-	-	1	-	1	1	-	-	-	-	-
기업인권	4	-	-	-	1	-	1	-	1	-	-	-	1	-	-
국제인권	10	1	-	3	1	-	-	-	1	-	1	-	1	1	1
인권교육	3	-	-	-	1	1	-	-	1	-	-	-	-	-	-
자유권	4	-	-	1	-	-	1	1	-	-	-	-	-	-	1
이주인권	4	-	-	1	-	1	-	1	-	1	-	-	-	-	-
차별시정	1	-	-	1	-	-	-	-	-	-	-	-	-	-	-
여성인권	2	-	-	-	-	1	-	-	-	-	-	1	-	-	-
장애인인권	8	-	-	2	-	-	1	1	1	-	1	-	-	1	1

[표 4-2-4]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43	14	21	17	32	40	33	33	37	29	28	27	26	29	29	22	26
회의·교육	258	10	13	12	16	24	14	18	17	17	19	19	16	16	21	12	14
교류협력	79	4	5	4	8	10	5	3	12	6	2	3	2	4	2	5	4
조사	16	-	1	-	-	-	3	2	1	-	2	1	2	2	1	1	-
연구 및 훈련	90	-	2	1	8	6	11	10	7	6	5	4	6	7	5	4	8

[표 4-2-5]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단위 : 회)

구 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방 문	288	15	19	19	26	25	18	17	29	13	24	24	11	6	17	16	9

## 제5장 일반행정

###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1인의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차별, 성, 장애 및 인권침해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 조정위원회는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두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1관 2국·14과(담당관)·1팀, 5소속기관(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인권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 심의·의결기구

#### 1) 전원위원회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9	47(1)	22(1)	1(-)	24(-)	55.3
2016	16	50(3)	22(-)		28(3)	58.0
2015	20	66(13)	37(1)		29(12)	59.0
2014	21	69(10)	34(-)		35(10)	47.8
2013	23	59(15)	24(2)		35(13)	49.2

※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된다.

#### 2) 상임위원회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

구 분	개최 횟수	상정안건				공개비율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41	117(8)	48(-)	20(-)	49(8)	61.5
2016	37	101(14)	27(-)	19(3)	55(11)	73.8
2015	41	100(13)	32(1)	19(2)	49(10)	40.0
2014	45	96(25)	41(1)	17(1)	38(23)	59.3
2013	47	113(7)	41(1)	14(-)	58(6)	60.2

※ ( )의 숫자는 재상정 안건수이고 공개비율에서 제외된다.

### 3) 소위원회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sup>66)</sup>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2	681	100	-	581
2016	11	925	140	-	785
2015	12	1,017	139	-	878
2014	13	905	127	-	778
2013	12	1,077	150	-	927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3	1,429	193	-	1,236
2016	11	1,302	124	-	1,178
2015	12	1,535	132	-	1,403
2014	12	1,275	137	-	1,138
2013	13	1,153	107	-	1,046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sup>67)</sup>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1	561	107	-	454
2016	11	348	60	-	288
2015	9	343	98	-	245
2014	12	540	144	-	396
2013	13	559	184	-	375

66)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입법부, 사법부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급·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아동 피해자 제외),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7)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기관 등과 사인(私人)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는 제외)를 심의·의결한다.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sup>68)</sup>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2	1,504	576	-	928
2016	13	1,730	589	-	1,141
2015	13	1,749	538	-	1,211
2014	12	1,587	395	-	1,192
2013	13	1,656	445	-	1,211

[표 5-1-7] 아동권리위원회<sup>69)</sup>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12	238	66	-	172
2016	7	131	38	-	93

※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 2016. 5. 16.

[표 5-1-8]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 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2017	3	4	4	-	-
2016	5	7	5	2	-
2015	3	11	9	2	-
2014	6	11	8	3	-
2013	7	19	18	1	-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 2011. 1. 27.

68)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기관 등과 사인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와 장애인·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9) 아동권리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사건, 단 장애, 성희롱사건 제외)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4) 조정위원회<sup>70)</sup>

[표 5-1-9]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합 계	전체회의	차별 조정위원회	성차별 조정위원회	장애차별 조정위원회	인권침해 조정위원회
누 계	116	6	47	30	15	18
2017	23	-	9	8	1	5
2016	22	1	5	4	4	8
2015	2	1	1	-	-	-
2014	2	1	-	-	1	-
2013	5	1	2	2	-	-

[표 5-1-10]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129	64	25	(6)	(6)	40
2017	43	19	4	(1)	-	20
2016	30	18	4	(2)	(1)	8
2015	2	1	-	-	-	1
2014	1	1	-	-	-	-
2013	5	2	2	-	(1)	1

※ 조정갈음결정의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이하 같음)

[표 5-1-11]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44	18	16	(5)	(5)	10
2017	16	9	2	(1)	-	5
2016	6	3	2	(2)	(1)	1
2015	1	1	-	-	-	-
2014	-	-	-	-	-	-
2013	2	-	2	-	(1)	-

70)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표 5-1-12]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37	24	3	-	-	10
2017	15	7	1	-	-	7
2016	5	3	1	-	-	1
2015	1	-	-	-	-	1
2014	-	-	-	-	-	-
2013	3	2	-	-	-	1

[표 5-1-13]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23	10	3	-	(1)	10
2017	4	1	-	-	-	3
2016	8	4	1	-	-	3
2015	-	-	-	-	-	-
2014	1	1	-	-	-	-
2013	-	-	-	-	-	-

[표 5-1-14]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처리 (①+②+③)	종결				
		조정성립①	조정불성립②	조정갈음결정		각하③
				조정성립	이의신청	
누 계	25	12	3	(1)	-	10
2017	8	2	1	-	-	5
2016	11	8	-	-	-	3
2015	-	-	-	-	-	-
2014	-	-	-	-	-	-
2013	-	-	-	-	-	-

## 2. 자문기구<sup>71)</sup>

### 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표 5-1-15]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28	1	2	2	2	-
안건수	46	1	2	2	2	-
출석 기관수	175	8	31	3	15	-

### 2) 정책자문위원회

[표 5-1-16]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24	1	2	2	2	1
안건 수	72	3	8	8	6	2

71)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법 제15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20조). 또한 상임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12조).

### 3) 전문위원회

[표 5-1-17]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45	2	2	2	1	2
안건 수	105	3	4	2	1	2

<참고 1.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개최횟수	45	10	10	7	4	-	2	3	2	2	2	1	2
	안건 수	105	24	37	18	5	-	5	4	3	4	2	1	2
사회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37	8	9	4	2	-	2	3	2	2	2	1	2
	안건 수	93	21	35	13	3	-	5	4	3	4	2	1	2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8	2	1	3	2	-	사회권 전문위원 통합	/	/	/	/	/	/
	안건 수	12	3	2	5	2	-		/	/	/	/	/	/

※ 아동인권전문위원회(2006. ~ 2010., 2017. ~ 현재)

[표 5-1-18]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33	2	2	2	2	2
안건 수	57	5	5	4	4	5

※ 누계는 인권교육 분야 전문위원회의 합이다.

<참고 2. 인권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개최횟수	33	-	7	5	3	1	2	3	2	2	2	2	2
	안건 수	57	-	11	7	3	2	3	5	3	5	5	4	4
인권교육	개최횟수	18	-	-	-	-	1	2	3	2	2	2	2	2
	안건 수	36	-	-	-	-	2	3	5	3	5	5	4	4
학교인권	개최횟수	8	-	5	2	1	-	/	/	/	/	/	/	/
	안건 수	10	-	7	2	1	-	/	/	/	/	/	/	/
공공·시민	개최횟수	5	-	2	3	-	-	/	/	/	/	/	/	/
	안건 수	9	-	4	5	-	-	/	/	/	/	/	/	/
공공인권	개최횟수	1	-	-	-	1	-	/	/	/	/	/	/	/
	안건 수	1	-	-	-	1	-	/	/	/	/	/	/	/
시민인권	개최횟수	1	-	-	-	1	-	/	/	/	/	/	/	/
	안건 수	1	-	-	-	1	-	/	/	/	/	/	/	/

※ 인권교육전문위원회(제1기 임기기간 2005. 11. 1. ~ 2007.10. 31, 조직개편으로 2005년도 개최 없이 2005. 12. 31. 임기종료, 2009. 5. 1. ~ 현재)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6. 3. ~ 2008. 6.)

※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 공공인권교육전문위원회, 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2008. 8. ~ 2009. 4. 30.)

[표 5-1-19]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35	5	4	4	3	2
안건 수	95	16	12	8	6	4

[표 5-1-20]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6	1	2	1	1	1
안건 수	21	3	5	3	5	5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표 5-1-21]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9	1	2	2	2	2
안건 수	29	2	4	7	5	11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참고 3. 자유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개최횟수	51	5	7	9	4	2	5	2	4	4	3	3	3
	안건 수	126	7	11	16	13	6	12	6	10	9	10	10	16
자유권제1	개최횟수	6	-	-	-	-	-	-	-	1	2	1	1	1
	안건 수	21	-	-	-	-	-	-	-	3	5	3	5	5
자유권제2	개최횟수	9	-	-	-	-	-	-	-	1	2	2	2	2
	안건 수	29	-	-	-	-	-	-	-	2	4	7	5	11
자유권	개최횟수	11	-	-	-	-	2	5	2	2				
	안건 수	29	-	-	-	-	6	12	6	5				
검·경수사	개최횟수	3	1	-	1	1								
	안건 수	5	1	-	2	2								
군	개최횟수	4	1	1	2									
	안건 수	4	1	1	2									
교정	개최횟수	5	1	2	1	1								
	안건 수	9	2	2	1	4								
외국인	개최횟수	13	2	4	5	2								
	안건 수	29	3	8	11	7								

※ 검·경수사전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2006. 3. 23. ~ 2011. 2. 17.)

※ 자유권전문위원회(2009. 5. 1. ~ 2013. 8. 29.)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검·경수사분야, 군분야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2013. 8. 30. ~ 현재) : 교정분야, 외국인분야

[표 5-1-22]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2					2
안건 수	7					7

※ 아동인권전문위원회(2017. 5. 29. ~ 현재)

[표 5-1-23]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8	2	1	-	1	1
안건 수	18	15	6	-	4	3

<참고 4.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개최횟수	31	3	5	6	3	2	4	3	2	1	-	1	1
	안건 수	126	4	21	21	9	5	21	17	15	6	-	4	3
차 별	개최횟수	8	2	2	3	-								1
	안건 수	18	3	5	7	-								3
성차별	개최횟수	9	1	3	3	2	-	-						
	안건 수	38	1	16	14	7	-	-						
고용차별	개최횟수	3				1	2	-						
	안건 수	7				2	5	-						
차별시정	개최횟수	11						4	3	2	1	-	1	
	안건 수	63						21	17	15	6	-	4	

※ 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성차별전문위원회(2005. 8. 2. ~ 2011. 2. 17.)

※ 고용차별전문위원회(2009. 5. 1. ~ 2011. 2. 17.)

※ 차별시정전문위원회(2011. 2. 18. ~ 현재)

[표 5-1-24]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횟수	26	1	3	3	1	2
안건 수	65	2	7	9	2	6

<참고 5.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개최횟수	40	-	7	5	6	3	4	5	1	3	3	1	2
	안건 수	100	-	21	11	11	7	11	13	2	7	9	2	6
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26	/	/	/	4	3	4	5	1	3	3	1	2
	안건 수	65	/	/	/	8	7	11	13	2	7	9	2	6
장애차별	개최횟수	10	-	3	5	2	/	/	/	/	/	/	/	/
	안건 수	23	-	9	11	3	/	/	/	/	/	/	/	/
다수인 보호시설	개최횟수	-	-	-	-	-	/	/	/	/	/	/	/	/
	안건 수	-	-	-	-	-	/	/	/	/	/	/	/	/
정신장애인 인권	개최횟수	4	-	4	-	-	/	/	/	/	/	/	/	/
	안건 수	12	-	12	-	-	/	/	/	/	/	/	/	/

※ 장애차별전문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2005. 8. 2. ~ 2009. 4. 30.)

※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6. 12. 8. ~ 2009. 4. 30.)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2009. 5. 1. ~ 현재)

[표 5-1-25]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누 계	2009	2010	2011	2012
개최횟수	4	1	2	1	-
안건 수	15	3	9	3	-

※ 2012. 9월 활동 종료

### 제3절 일반현황

#### 1. 사무처 조직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년월일	구분	기구	정원	증감내역	
				기구	정원
2002. 2. 4.		5국 18과, 1소속기관	180	-	-
2005. 3. 2.		"	181	-	증 1명
2005. 5. 31.		"	193	-	증 12명
2005. 6. 23.		5국 19과, 3소속기관	201	증 1과	증 8명
2005. 12. 30.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증 3팀	-
2007. 6. 21.		5본부 22팀, 4소속기관	208	증 1소속기관	증 7명
2009. 4. 6.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	감 2본부 11팀, 1소속기관	감 44명
2011. 10. 10.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185	증 1과	증 21명
2012. 11. 12.		"	187	-	증 2명
2013. 3. 23.		"	186	-	감 1명
2013. 9. 17.		"	190	-	증 4명
2013. 12. 11.		"	188	-	감 2명
2014. 8. 27.		1관 2국 12과 3팀, 4소속기관	191	증 1소속기관 증 3팀	증 3명
2015. 1. 6.		"	189	-	감 2명
2015. 5. 26.		"	191	-	증 2명
2015. 12. 30.		"	190	-	감 1명
2016. 12. 27.		1관 2국 12과 3팀, 4소속기관	189	-	감 1명
2017. 12.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	194	증 2과(감 2팀), 증 1소속기관	증 5명

[표 5-2-2] 2017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정원	194	4	4	3	16	12	52	42	31	8	20	1	1

※ 운영정원 1명(운전직) 제외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B+C)	인건비 (A)	기본경비 (B)	주요사업비 (C)	비고 (전년대비)
2017	29,289	14,147	8,102	7,040	3.9% 증
2016	28,176	13,667	7,608	6,901	4.6% 증
2015	26,926	12,816	7,593	6,517	9.6% 증
2014	24,560	11,742	7,185	5,633	1.9% 증
2013	24,091	11,368	7,047	5,676	4.5% 증

[표 5-2-4] 2017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예 산
<b>합 계</b>	7,040
<b>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b>	887
① 인권의식 향상	422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295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170
<b>인권교육 활성화</b>	1,544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544
<b>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b>	1,828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65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1,168
⑦ 장애인 인권증진	495
<b>인권제도 선진화</b>	813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42
⑨ 북한인권개선	171
<b>국내외 인권협력 강화</b>	1,008
⑪ 국제교류협력	884
⑫ 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b>인권위 정보화(정보화)</b>	960
⑬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60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구분	자료유형	장서량	
인쇄자료	단행본	계	33,293종 45,470권
		동양서	26,201종 36,783권
		서양서	7,092종 8,687권
	연속간행물	계	89종
		국내	77종(구독 42, 기증 35)
		국외	12종
전자자료	전자도서 (eBook)	계	5페이지 1,932종 2,125권
		국내	422종 613권
		국외	1,510종 1,512권
	전자저널 (E-Journal)	계	7,531종
		국내	6,965종
		국외	566종
	웹DB	계	8종
		국내	6종
		국외	2종
	기타 전자자료	계	해외석박사학위논문(pqdd) 원문 492종
	특수자료	계	249종 321권(비도서 포함), 연간물 20종
		단행본	227종 272권
비도서자료		22종 49점	
연속간행물		20종	
비도서자료	계	5,474종 8,224점	
	국내	4,845종 7,548점	
	국외	629종 676점	

※ 장서량은 2017. 12. 31.까지의 인권도서관 본관 장서보유 누계이다.

[표 5-2-6] 인권도서관 지역분관 장서 현황

구 분	합 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합계	<b>4,735권</b>	991권	1,002권	1,229권	1,006권	507권
단행본	<b>3,973권</b>	828권	845권	1048권	848권	404권
비도서자료	<b>762점</b>	163점	157점	181점	158점	103점

[표 5-2-7] 인권도서관 이용현황

구 분	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원대출	<b>17,882명</b> <b>47,259권</b>	1,364명 3,732권	1,188명 3,492권	1,124명 3,129권	1,188명 2,950권	1,157명 2,785권
외부대출 서비스	개인	275명 637권	221명 550권	278명 795권	260명 767권	387명 1,101권
	단체	94건 318권	45건 225권	16건 52권	26건 186권	41건 251권
도서관이용자	<b>89,009명</b>	4,150명	4,159명	3,526명	12,454명	45,694명

※ 누계는 2002년 인권자료실 개관일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 2. 정보공개<sup>72)</sup>

[표 5-2-8]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소개	취하	민원종결	타기관이송
누 계	2,572	2,207	1,268	702	237	337	164	69	104
2017	519	403	251	114	38	116	41	36	39
2016	466	359	195	134	30	79	44	27	8
2015	571	507	273	150	84	64	27	2	35
2014	518	464	258	151	55	54	40	1	13
2013	498	474	291	153	30	24	12	3	9

[표 5-2-9] 사유별 비공개(부분공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비공개/ 부분공개 처리건수	비공개 사유 <sup>73)</sup>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부존재
누 계	959	3	1	7	34	146	461	1	-	306
2017	173	1	-	-	10	38	103	-	-	21
2016	163	2	-	4	11	28	114	-	-	4
2015	234	-	-	1	6	48	84	-	-	95
2014	206	-	-	-	4	17	80	-	-	105
2013	183	-	1	2	3	15	80	1	-	81

7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6.10.4.)에 따라 2007.1.1. 이후 현황 작성

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표 5-2-10]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이 의 신 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승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 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 류 중	소송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기각 및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누 계	47	17	22	-	8	25	-	13	9	3	2	-	-	-	2
2017	11	3	5	-	3	2	-	-	2	-	1	-	-	-	1
2016	9	2	7	-	-	8	-	3	3	2	-	-	-	-	-
2015	8	4	3	-	1	12	-	10	1	1	-	-	-	-	-
2014	11	3	5	-	3	2	-	-	2	-	1	-	-	-	1
2013	8	5	2	-	1	1	-	-	1	-	-	-	-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청문회<sup>74)</sup>

[표 5-2-11] 청문회 개최 현황

개최일시	청문회 주제	진술인(관계기관)
2001.12. 7.	테러방지법(안)의 정책과 대안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외
2003. 2.20.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외 6인
2003. 4.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3. 4. 9.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2003.12. 9.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
2003.12.11.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립보건원 외
2003.12.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에 대한 청문회	
2004. 4.28.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2005. 1.18.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
2005. 3.16.	비정규근로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	노동부 외
2005. 7.14.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제안 청문회	법무부 외 9인
2005.10.19.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병무청, 국방부 외
2006. 7.11.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외
2007. 8.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청문회	노동부 외 7인
2007.10.30.	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경찰청 외

74) 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4. 업무협약

[표 5-2-12] 업무협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 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체결건수</b>	<b>60</b>	-	1	9	5	3	6	5	2	6	2	10	7	4
국가기관	1	-	-	-	-	-	-	-	-	-	1	-	-	-
지방자치단체	9	-	-	-	2	1	2	-	-	-	-	1	2	1
교육기관 (교육청, 대학교 등)	23	-	1	8	3	1	-	-	1	3	-	3	2	1
외국 국가인권기구	14	-	-	1	-	1	2	2	-	1	-	5	1	1
공·사단체	12	-	-	-	-	-	2	2	1	2	1	1	2	1
기업	1	-	-	-	-	-	-	1	-	-	-	-	-	-

##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표 5-2-13]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연 도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합 계	훈장	포장	위원장 표창	협조상	위원장 표창
누 계	252명 (68단체 포함)	11명	11명	225명 (68단체 포함)	5명	35개 언론사 (112명)
2017	14명 (4단체 포함)	1명	1명	12명 (4단체 포함)	-	7개 언론사 (7명)
2016	14명 (4단체 포함)	1명	1명	12명 (4단체 포함)	-	7개 언론사 (18명)
2015	15명 (3단체 포함)	1명	1명	13명 (3단체 포함)	-	6개 언론사 (18명)
2014	17명 (5단체 포함)	1명	1명	15명 (5단체 포함)	-	5개 언론사 (17명)
2013	17명 (3단체 포함)	1명	1명	15명 (3단체 포함)	-	6개 언론사 (35명)

## 6. 과태료<sup>75)</sup> 및 보상금<sup>76)</sup>

[표 5-2-14]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6	-	1	-	-	-

※ 2002년 ~ 2010년 부과건수 : 5건, [표 5-2-15] 과태료 부과 내역 참조

[표 5-2-15]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도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처분 금액	징수결과	비고
2002	주한미군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0,000,000원 - 2호 5백만원 - 3호 5백만원	불납결손처리	시효완성(2007년)
2002	○○교도소 보안과장	법 제63조제1항제2호	1,000,000원	5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50만원으로 감액
2007	○○정신병원	법 제63조제1항제3호	3,000,000원	전액 징수	-
2009	○○병원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5,000,000원 - 1호 2백만원 - 3호 3백만원	300만원 징수	과태료 재판결과, 3백만원으로 감액
2010	전 ○○구치소장	법 제63조제1항제3호	5,000,000원	-	과태료 재판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2010. 7.)
2014	전 ○○법원 부장판사	법 제 63조 제1항 제2호	2,000,000원	-	과태료 이익제기 재판결과 불처벌 결정(2016. 12.)

[표 5-2-16]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건)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지급건 합계	침해 (집행액)	차별 (집행액)
누계	20,900	28,170	4,270	148	84 (10,470)	64 (6,900)
2017	1,200	1,200	-	18	15 (1,020)	3 (180)
2016	1,200	12,000	-	14	8 (600)	6 (600)
2015	1,200	600	-	13	5 (550)	8 (650)
2014	-	-	-	-	-	-
2013	800	950	-	6	2 (300)	4 (650)

75) 법 제6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방문조사,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76)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인쇄일 | 2018년 7월

| 발행일 | 2018년 7월

| 발행인 | 이 성 호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04551

전화 / (02) 2125-9793

팩스 / (02) 2125-0913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 삼일기획 (044) 866-3011

ISSN 2635-4705

비매품

